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김아름·도남희·이혜민·양성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저 자 김아름, 도남희, 이혜민, 양성은

영 구 지 연구책임자 **김 아 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도 남 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혜 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양성은**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연구협력진 강 미 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연구협력진 고 완 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19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02) 2672-153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67-1 [93330]



•• • 머리말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프라이버시 보호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부모나 보호자들이 자녀의 사진과 정보를 공유하는 "셰어런팅"이 주목되고 있는데, 독일의 이동통신사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이 진행한 '엘라의 메시지(Nachricht von Ella)' 캠페인은 자녀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며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소셜미디어 사진 공유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 캠페인은 아동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영향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의 주인공인 소녀 엘라는 자녀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모들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우스꽝스러운 밈으로 소비되고, 심지어는 성희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에 프랑스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자녀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디지털 시대의 아동들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를 비교하고,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면담 분석 등을 통해 아동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제안이 향후 디지털 시대의 아동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 •• 목차

요	각 —	— 1
Ι.	.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3. 연구의 범위 및 용어 정의	25
Π.	. 연구의 배경	29
	1.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31
	2.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법제도 문제	37
	3.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	38
Ш.	.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도 분석	55
	1. 우리나라 법제도 현황	57
	2. 해외 법제도 현황	64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82
IV.	.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	85
	1. 아동의 온라인 환경 이용 실태	87
	2. 부모의 셰어런팅 경험	99
	3. 자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인식 및 경험	···· 111
	4. 소결	···· 116
V.	.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인식 및 요구	119
	1.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인식 현황	···· 121
	2.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요구	
	3. 자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	
	4. 소결	

Ⅵ. 결론 및 제언	143
1. 주요 연구 결과 분석	145
2. 쟁점별 고찰	146
참고문헌	159
Abstract	—— 165
부록	—— 16 7
부록 1. 부모 대상 설문조사표	167
부록 2. 아동 대상 설문조사표	177
부록 3. 아동 대상 면담지	187
부록 4. 부모 대상 면담지	190

•• • 표 목차

〈표 Ⅰ-2-1〉부모 대상 설문조사 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15
〈표 I-2-2〉 부모 대상 설문조사 내용 ·····	16
〈표 Ⅰ-2-3〉 아동 대상 설문조사 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17
〈표 I-2-4〉 아동 대상 설문조사 내용 ······	17
〈표 I-2-5〉 FGI 내용 특성: 부모 ······	18
〈표 I-2-6〉 FGI 참여자 특성1: 부모 ······	19
〈표 I-2-7〉 FGI 참여자 특성2: 부모 ······	20
〈표 I-2-8〉 FGI 내용 특성: 아동 ······	21
〈표 I-2-9〉 FGI 참여자 특성1: 아동	22
〈표 I-2-10〉 FGI 참여자 특성2: 아동 ······	22
〈표 I-2-11〉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	23
〈표 I-2-12〉 간담회 개최 등 연구협력 논의 개요 ······	24
〈표 Ⅰ-2-1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24
〈표 Ⅰ-3-1〉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법상 아동 범위 및 관련 내용	25
〈표 Ⅲ-1-1〉 개인정보 보호법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개정 사항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개정	58
〈표 Ⅲ-1-2〉위치정보법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주요 내용	61
〈표 Ⅲ-2-1〉 연령범위에 따른 투명성 준수 방법	73
〈표 Ⅳ-1-1〉 인터넷 이용 시 주요 활용 기기	87
〈표 IV-1-2〉스마트폰/태블릿 PC 본인 소유 여부 ···································	88
〈표 IV-1-3〉 부모님 통제 없이 스마트폰/태블릿 PC 사용 가능 여부	88
〈표 Ⅳ-1-4〉자녀의 개인 스마트폰 구입 시기	89
〈표 IV-1-5〉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앱을 통해 가족(부모님)과 공유하는지 여부 \cdot	89
〈표 Ⅳ-1-6〉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앱 설치 시기	90
〈표 Ⅳ-1-7〉인터넷 이용 시 자주 이용하는 것: 1+2순위	91
〈표 Ⅳ-1-8〉인터넷 이용 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앱: 1+2+3순위	~ .
〈표 IV-1-9〉 SNS에 게시물 작성/게시 경험 유무 ······	91
〈표 IV-1-10〉 SNS 이용하는 주된 이유 2가지(중복응답) ····································	· 92 · 92
⟨표 IV-1-10⟩ SNS 이용하는 주된 이유 2가지(중복응답) ····································	· 92 · 92

〈표 Ⅳ-1-13〉가족의 사진/영상 올릴 때 가족 동의 구하는 이유9.
〈표 Ⅳ-1-14〉가족의 사진/영상 올릴 때 가족 동의 구하지 않는 이유9
〈표 Ⅳ-1-15〉 친구의 사진/영상 올릴 때 친구 동의 구하는지 여부9.
〈표 Ⅳ-1-16〉 친구의 사진/영상 올릴 때 친구 동의 구하는 이유9
〈표 Ⅳ-1-17〉 친구의 사진/영상 올릴 때 친구 동의 구하지 않는 이유9
〈표 IV-1-18〉 SNS에 작성하거나 올린 게시물 공개 범위 여부 ······9
〈표 IV-1-19〉SNS 사용 시 이용하는 계정 소유 주체 ·······9
〈표 IV-1-20〉 SNS 계정 만든 방법 ······9
〈표 IV-2-1〉 부모님이 현재 나에 관한 정보 SNS 업로드하는지 여부 ············9
〈표 IV-2-2〉부모님이 과거 나에 관한 정보 SNS 업로드했는지 여부 ·········9
〈표 IV-2-3〉부모님 SNS 계정에 내 사진/영상이 올라간 것 알았을 때 내 기분·10
〈표 $IV-2-4$ 〉 부모님 SNS 계정에 내 사진/영상이 올라간 것 알았을 때 기뻤던 이유 \cdot 10
〈표 $IV-2-5$ 〉 부모님 SNS 계정에 내 사진/영상이 올라간 것 알았을 때 싫었던 이유 \cdot 10
〈표 IV-2-6〉 SNS에 자녀에 관한 정보 업로드 경험 ·······10
〈표 IV-2-7〉 SNS에 자녀에 관한 정보 업로드 했다가 현재는 중단한 이유 · 10년
〈표 IV-2-8〉 SNS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 처음 올린 시기 ·······104
〈표 IV-2-9〉 (게시물 업로드 중단한 경우) SNS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 업로드 중단
시기 ····································
〈표 IV-2-10〉 부모님이 과거/현재 본인 사진/영상을 SNS 올릴 때 동의 받았는거
여부10
〈표 Ⅳ-2-11〉 자녀에 관한 게시물 업로드 시 자녀 동의 받는지 여부10
〈표 IV-2-12〉부모님이 SNS에 올린 본인 사진/영상 삭제 요청 여부 ·······10
〈표 IV-2-13〉 SNS에 업로드한 자녀 관련 게시물 공개 범위 ·······10
〈표 $IV-2-14$ 〉 자녀가 부모 SNS에 자녀 본인 게시물 업로드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cdot 10
〈표 IV-2-15〉 SNS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 업로드 주기 ·······10년
〈표 IV-2-16〉 자녀에 관한 게시물로 인해 수익 얻은 경험 유무 ······10년
〈표 IV-2-17〉 수익 목적으로 자녀 관련 게시물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는지 여부 \cdot 11년
〈표 Ⅳ-3-1〉 온라인 환경에서 자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 유무11
〈표 V-1-1〉 '개인정보'용어 인식 정도 ······12
〈표 ∨-1-2〉 '개인정보'용어 들어본 곳(중복응답)12
〈표 ∨-1-3〉 '셰어런팅'용어 인식 정도12.
〈표 ∨-1-4〉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인지 여부124
〈표 ∨-1-5〉최근 1년간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교육 여복

		124
⟨丑	V-1-6>	나의 사진/영상 올릴 때 공유될 수 있으며 삭제 어려움에
⟨₩	\/-1-7\	대한 인식 여부 ···································
\	V 1 //	방법 인지 여부125
⟨丑	V-2-1>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교육의
/ 17	\	필요성 정도
〈丑	V-2-2>	부모님이 본인 사진/영상을 SNS에 올리기 전에 본인 동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27
⟨丑	V-2-3>	부모님이 본인 사진/영상을 SNS에 올리기 전에 본인 동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경우 그 이유127
⟨丑	V-2-4>	본인이 원할 경우 부모님이 올린 본인 사진/영상 언제든지
/ TT	٧, ٥ ٢)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 128
〈丑	V-2-5>	본인이 원할 경우 부모님이 올린 본인 사진/영상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128
⟨丑	V-2-6>	SNS에 자녀 사진/영상 게시 전 자녀 동의 받아야 한다고
`	,	생각하는지 여부129
⟨丑	V-2-7>	SNS에 자녀 사진/영상 게시 전 자녀 동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129
⟨丑	V-3-1>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1) 자녀에 관한
⟨₩	\/-3-2\	정보를 게시하기 전에는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31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2)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의
\	V 0 2/	정보를 게시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 131
⟨丑	V-3-3>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3) 부모가 올린 자녀
		관련 게시물을 통해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 132
⟨丑	V-3-4>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4) 부모가 올린 자녀
/п	//-3-5/	관련 게시물로 인해 자녀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 132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5) (자녀의 동의 유무와
/11	V 3 3/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정보를 SNS에 올리는 것은 자녀의 프라이버시
		권을 침해하는 것이다133
纽	V-3-6>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6)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 \cdots 133
任	V-3-7>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7)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부모의 활동은 규제되어야 한다134
〈표 ∨-3-8〉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8)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의 접근권/삭제권/수정권 등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35
〈표 ∨-3-9〉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9) 정보의 접근권/삭제권
/수정권 등 구제절차가 마련된다면 해당 제도를 아동이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3-10〉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10) 온라인상 아동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아동이 이해가능한 수준의 언어로 쓰여야 한다 136
〈표 ∨-3-11〉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11)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36
〈표 \lor −3−12〉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12)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 관련 기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137
〈표 ∨-3-13〉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13)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디지털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138
〈표 ∨-3-14〉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14)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디지털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138
〈표 \lor -3 $-15〉$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15〉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부모(보호자) 대상 디지털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138
〈표 Ⅵ-2-1〉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54
〈표 Ⅵ-2-2〉아동기본법안(강훈식의원안/양금희의원안) 구성체계 비교 ········ 156
〈표 Ⅵ-2-3〉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구성체계 ····· 158

•• •• 그림 목차

[그림	I -2-1]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방법 및 결과25
[그림	II -3-1]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주요 내용41
[그림	II - 3-2]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신청자 ··················42
[그림	II -3-3]	세이브더칠드런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47
[그림	lV−1−1]	스마트폰/태블릿 소유 여부 및 부모님 통제 없이 사용 가능 여부·88
[그림	IV-1-2]	인터넷 이용 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앱: 1+2+3순위91
[그림	IV-1-3]	SNS 이용하는 주된 이유 2가지(중복응답)93
[그림	IV-1-4]	SNS에 작성하거나 올린 게시물 내용(중복응답)94
[그림	IV-1-5]	가족의 사진/영상 올릴 때 가족 동의 구하는 이유 및
		구하지 않는 이유95
[그림	IV-1-6]	가족이나 친구의 사진/영상 올릴 때 가족이나 친구 동의
		구하는지 여부 및 이유96
[그림	IV-1-7]	친구의 사진/영상 올릴 때 친구 동의 구하는 이유 및
		구하지 않는 이유97
[그림	IV-2-1]	부모님 SNS 계정에 내 사진/영상이 올라간 것 알았을 때
		기뻤거나 싫었던 이유 101
[그림	IV-2-2]	SNS에 자녀에 관한 정보 업로드 했다가 현재는 중단한 이유 103
[그림	IV-2-3]	SNS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 처음 올린 시기 및 업로드 중단 시기·105
[그림	IV-2-4]	자녀 관련 게시물 작성 시 해당 내용(중복응답)(n=541) 107
[그림	IV-2-5]	게시물 업로드 시 수익 얻은 방법(중복응답) 및 게시물 1개당
		수익 수준110
-	-	(자녀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 있는 경우) 침해 종류(중복응답)($n=90$) \cdot 113
[그림	IV-3-2]	(자녀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 있는 경우) 침해 주체(중복응답) $(n=90) \cdot 113$
	-	(자녀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 있는 경우) 침해 경로(중복응답) $(n=90) \cdot 114$
[그림	IV-3-4]	(자녀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 있는 경우) 침해 대처방안(중복응답)(n=90)
		114
-	-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1(n=1,238) ···· 134
[그림	V-3-2]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2(n=1,238) ···· 139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아동은 온라인 환경에 친화적이고 적응력도 높으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위험요소에 대한 인지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의 효용성도 낮으므로 성인과 다른 특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함.
 - 이에 해외에서는 법제도를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 유영자에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 최근 세계적으로 아동의 온라인상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을 올리거나 자녀와의 일상생활 등 자녀의 정보를 공유하는 셰어 런팅(Sharenting)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강화되고 있으나, 어린 자녀 혹은 아동의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임.
- □ 정부는 2022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2. 7. 11).
 - 특히,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확립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하여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 □ 이에 최근에 활발히 논의가 진행 중인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 활용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해외 입법 동향 분석과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연구의 내용
 - 국내외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 동향 및 쟁점 파악
 - 현행 법체계에서의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및 법제 분석
 - 해외 입법례 등 해외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필요한 법 개정안 및 정책 방안 마련
- □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전문가 자문회의
 - 아동권리단체와의 연구협력
 - 학술세미나 개최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다. 연구의 범위 및 용어 정의

- □ 아동
 -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아동의 범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함.
- □ 프라이버시궈
 - 본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범위를 "아동의 신원, 활동, 위치, 통신, 감정, 건강, 인적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 보고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논함.

2. 연구의 배경

- 캘리포니아 주법

가.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아동의 프라이버시 유형과 의미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 강화 부모(보호자) 및 기업 등의 역할 강화
	온라인상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법제도 문제 아동이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부족 부모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법적 후견 필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권리단체의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동향
3.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도 분석
	우리나라 법제도 현황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 EU

- EU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일반데이터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이라 함)'에서 COPPA와 유사한 아동을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를 신설

□ 영국

- 영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인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는 DPA 제123조에 근거하여 연령적합설계규약(Age Appropriate Design Code, AADC)을 제정하여 그 범위를 18세 미만 아동 전체로 규정

□ 프랑스

- 프랑스는 최근 아동의 초상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 제안된 법안은 자녀의 이미지를 과도하게 게시하여 소셜 미디어 팔로워를 확보하거나 돈을 벌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함. 사생활을 중시하는 프랑스에선 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사진을 올렸을 때,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도록 허용

다.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 아동의 연령범위 확대
- □ 잊힐 권리의 제도화
- □ 연령별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 □ 셰어런팅 규제 제도 도입

4.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

- □ 온라인 환경 이용 실태
 - 아동들이 어떠한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들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살펴봄.
 - 응답자의 76.6%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본인 소유인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89.7%가 본인 소유라고 답하였음.
 - 또한 이러한 스마트기기를 부모님 통제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아동은 전체 응답자의 65.4%로 높게 나타남.

- 아동이 SNS에 가족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25.8%에 불과하였으나, SNS에 친구의 사진 및 영상을 올릴 때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46.8%로 나타나 가족의 경우와 비교하면 친구의 사진/영상을 올릴 때 동의를 구하는 비율이 20% 정도 더 높게 나타남.
- 자신의 계정으로 SNS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계정을 만든 방법을 조사하였을 때 계정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답한 비율이 16.4%였는데, 응답자의 경우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계정을 만들 때 부모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부모 몰래 만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셰어런팅

- 부모에 의한 셰어런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4%만이 부모님에 의해 자신의 정보가 SNS에 업로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12.6%였음.
- 아동 자신의 사진 및 영상이 부모의 SNS에 올라간 것을 알았을 때의 기분을 조사한 결과,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은 경우가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FGI 결과 아동 참여자는 부모가 자신의 정보를 온라인상에 노출하는 것도 용인함. "부모님이니까 개인정보를 심하게 노출할 것 같지 않아서(아동 7)"라든가 "나의 예쁜 사진만 올려서(아동 14)"와 같은 응답이 이를 반영함.
- 부모가 SNS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을 처음 올린 시기를 살펴보았을 때, 신생아부터 돌 이전에 해당하는 시기가 49.2%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자녀 정보 공개 범위 및 내용

-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관련 게시물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을 때, 자녀의 얼굴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83.0%로 가장 높았음.
- FGI 결과 부모는 자신이 아동을 상업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수익성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관대한 경향이 있었음.

□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

- FGI에 참여한 부모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에 대해 아동의 정보를 노출하는 주체가 타인인지 부모인지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보였는데, 부모는 타인이 아동의 동의 없이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는 반면, 그 주체가 부모인 경우 아동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침해가 아니라고 여겼음.

5.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인식 및 요구

- □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인식 현황
 - FGI에 참여한 아동들은 아직 온라인상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명료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었음.
 - 아동은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엄청 이상한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아동 9)"와 같이 반응함.
- □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요구
 -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교육이 아동에게 얼마나 필요 한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이 거의 90% 가까이 나타남.
 - 부모님이 자녀의 사진 또는 영상을 부모님 SNS에 업로드하기 전에 아동 본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37.2%,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62.8%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아동들은 부모도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부족하였음.
- □ 자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
 - 부모 대상으로 자녀의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자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기 전에는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제 시문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72.3%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부모의 법적 책임까지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지원 요구에 대한 응답 내용임.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의 접근권/삭제권/수정권 등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한다'는 제시문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57.8%로 나타남.
 -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하는 타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하게 요구함.

6. 결론 및 제언

가. 주요 연구 결과 분석

- □ 부모의 역할과 책임 규명
 - 부모가 온라인상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 발생.
 - 부모는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거나 자의적으로 사용하기도 함.
 - 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필요.
-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교육 필요
 - 아동과 부모 모두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
 -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제공과 함께 가정 내에서도 아동의 프라이버시 존중 문화 조성 필요.
- □ 아동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 부모에 의한 과도하거나 민감한 아동 정보의 온라인 노출 문제 발생
 - 부모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 요하며, 이는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부모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 아동 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
 - 타인에 의한 아동 정보의 무분별한 이용 및 침해 문제가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의 기업이 아동 정보를 남용할 위험이 있음.
 - 아동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강화 및 시행 필요.

나. 쟁점별 고찰

- □ 부모와 아동 대상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인식 개선과 역량강화
 -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 개념화 및 인식 개선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 □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실천
 - 셰어런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관련 제도 마련
 -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환경 조성
- □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 제·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검토
 - 아동기본법 제정안 검토
 - 독자적 법률 제정안 검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명예, 평판 등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그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에 대한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 더 나아가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 중 하나로 보고, 이를 위해 국가가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21).

아동은 온라인 환경에 친화적이고 적응력도 높으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위험요소에 대한 인지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의 효용성도 낮으므로 성인과 다른 특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를 악용하여 유괴나 보이스피싱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미국, EU 등에서는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등을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서비스 운영자에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아동의 온라인상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을 올리거나 자녀와의 일상생활 등 자녀의 정보를 공유하는 셰어런팅 (Sharenting)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모가 SNS에 공유한 사진이나 글에는 아이들의 일상적인 모습 뿐 아니라 배변훈련 모습이나 발달사항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도 들어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부모가 자녀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이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유니세프 노르웨이위원회는 "스탑 셰어런팅(Stop Sharenting)" 캠페인을 통해 부모가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기 전에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시하기 전 자녀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생각해야 하며, 자녀의 사진이 온라인에 배포될 시 사

진 수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 밖에도 캐나다에서는 어린 자녀가 자신의 유아 시절 사진을 SNS에 올린 부모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으며, 프랑스,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1) 베트남도 2018년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등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 없이 SNS에 게재한 경우 부모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법안을 추진한 바 있는데, 해당 법령 초안은 7세 미만 아동의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7세 이상 아동의개인정보를 올리려면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고 5000만 동(약 2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2) 이처럼 해외의 경우 셰어린팅이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강화되고 있으나, 어린 자녀 혹은 아동의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인터넷 강국으로서 셰어런팅을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고, 블로그를 비롯해페이스북 등에 아이의 생년월일, 병원진료기록, 아이가 사용하는 육아용품, 아이의일상생활 사진까지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튜브, 틱톡과 같은 매체가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매체를 이용한 셰어런팅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고, 좋은 취지로 올렸다하더라도 아동이 원치 않는 유명세에 스트레스를 겪거나, 외모나 행동을 지적하는 악플에 시달릴 수도 있으므로 자녀 사진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을 아동학대로 분류해야 한다는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언론중재위원회, 2021. 4. 13).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대리인 제도 외에는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부재한 상황이며, 특히 1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권리행사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정부는 2022년 7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¹⁾ 경향신문(2019. 2. 6일자 기사). 내 아이 사진 올리는데 뭐 어때? 초상권, 해외선 다르다, https://n.news.na ver.com/mnews/article/032/0002920961?sid=102(2023. 7. 10. 인출).

²⁾ 뉴스포스트(2021. 8. 18일자 기사). [셰어런팅 주의보] SNS에 24시간 '자녀 일상' 중계하는 나라,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4159(2023. 7. 10. 인출).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2. 7. 11). 특히,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확립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하여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2. 7. 11).

이처럼 최근에 활발히 논의가 진행 중인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 활용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해외 입법 동향 분석과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온라인상 아동의 개인정보,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관련 용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 쟁점을 파악한다.

둘째, 현행 법체계에서의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및 법제를 분석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온라인상 아동의 정보보호에관한 법제를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의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을 분석한다.

셋째, 해외 입법례 등 해외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등을 도출한다.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도하고 있는 EU, 미국, 영국 등에서의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제와 주요 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 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필요한 법 개정안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다.

나.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첫째, 온라인 검색 및 국내외 문헌 등을 통해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해외법제 및 정책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고, 아동의 온라인상 개인정보보 보호에 관한 이슈와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2) 설문조사

아동의 개인정보 이용실태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인식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부모 및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부모 대상 조사

설문조사는 14세 미만(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 연령 및 지역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표 I-2-1 참조), 조사는 조사기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법을 적용하였다.

실제 조사에 참여한 14세 미만 부모 수는 1,238명이었으며, 부모 조사 참여자의수는 다음 〈표 I-2-1〉과 같다. 전체적으로 아동 아버지로서 설문조사에 참여한비율이 과반 이상이었고, 응답자 연령은 40대 이상이 59.4%로 가장 많았고, 30대-20대 순이었다. 가구 내 초등 저학년(1~3학년) 아동이 있는 비율이 3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아(34.5%), 초등 고학년(4~6학년)(31.6%)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부모의 맞벌이 여부를 살펴보면 맞벌이 비율이 68.4%, 외벌이 비율은 27.4%였으며, 가구소득은 500~700만원인 구간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700만원 이상인 집단(30.5%), 300~500만원 구간이 29.8%로 나타났다.

〈표 ፲-2-1〉 부모 대상 설문조사 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년위. %(명) 계(수)
T 년 전체	100.0 (1,238)		/II(T)
거주 지역	100.0 (1,200)	여자	45.4 (562)
서울특별시	18.1 (224)		54.6 (676)
부산광역시		응답자 연령	01.0 (070)
대구광역시	6.1 (76)	1	3.9 (48)
인천광역시	5.7 (70)		36.8 (455)
광주광역시		40대 이상	59.4 (735)
대전광역시		조사 응답자 가구원 수	00.4 (700)
울산광역시	3.2 (40)		43.0 (532)
세종자치시		4명	45.1 (558)
경기도	25.0 (310)		12.0 (148)
강원도		응답자 최종학력	12.0 (1 10)
충청북도		고졸 이하	8.9 (110)
충청남도		2~3년제 대학 졸업	12.6 (156)
전라북도		4년제 대학 졸업	64.5 (798)
전라남도		대학원 이상	14.1 (174)
경상북도		응답자 취업 상태	11.1 (17 1)
경상남도	4.0 (49)		78.4 (970)
제주도	1.1 (13)		6.1 (76)
거주 지역 규모	, ,	학업 중	0.4 (5)
대도시	51.4 (636)		4.5 (56)
중소도시	39.5 (489)		10.6 (131)
읍면		응답자 배우자 취업 상태**	
결혼상태		취업	76.0 (924)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98.2 (1,216)	휴직 중	6.2 (75)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등)	1.6 (20)	학업 중	0.6 (7)
미혼	0.2 (2)	구직 중	2.5 (30)
연령별 자녀 유무*		미취업	14.8 (180)
영아	24.0 (297)	맞벌이 여부	
유아	34.5 (427)	맞벌이	68.4 (847)
초등 저학년(1~3학년)	36.3 (450)	외벌이	27.4 (339)
초등 고학년(4~6학년)	31.6 (391)	둘 다 무직	2.4 (30)
중등 1학년	11.6 (143)		1.8 (22)
중등 2학년	4.8 (60)		
중등 3학년	5.0 (62)		5.6 (69)
고등 자녀		300~500만원	29.8 (369)
성인 자녀	2.3 (28)		33.6 (416)
		700만원 이상	30.5 (377)
		모름/무응답	0.6 (7)

주1: 중복 응답으로 합계가 100을 초과함.

주2: 결혼 상태에 따라 응답자 수가 상이함.

주3: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모 대상 조사 내용은 부모 일반적 특성 외에 부모의 SNS 이용 실태, 셰어런팅, 자녀의 사생활에 대한 인식과 보호 필요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Ⅰ-2-2〉 부모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일반적 특성	- 성별 및 연령 - 거주지역 및 지역 규모 - 결혼상태, 자녀 수 및 연령 - 교육수준 및 취업상태(본인 및 배우자) - 가구 소득, 가구원 수 등
부모의 SNS 이용 실태	-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 -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 및 앱 - 부모의 SNS 이용 여부, 이용 목적 및 이유, 미이용 시 미이용 이유 - SNS에 게시물 작성 및 업로드 여부, 업로드 시 게시물 종류 - 타인 관련(사진 포함) 게시물 업로드 시 허락 여부
셰어런팅	 자녀의 사진과 영상 공유 경험 여부(셰어런팅 경험), 게시물 업로드 중단 시 그 이유 자녀의 정보 게시 매체, 게시 주기 및 횟수, 게시 내용 자녀의 정보 게시 목적 및 이유, 최초의 시작 시기 및 (중단 시) 중단 시기 자녀의 정보 게시물 공개 범위 자녀의 부모 게시물 업로드 인지 여부, 자녀의 게시물 삭제 요청 경험 여부 자녀 관련 게시물로 인하여 수익 얻은 경험 여부, 수익 목적 자녀 관련 게시물 업로 드 빈도, 수익 창출 방법, 수익 수준
자녀의 사생활에 대한 인식과 보호 필요성	- 자녀의 스마트폰/태블릿 PC 소지 여부, 사용 시 부모 동의 필요 여부, 자녀 스마트폰 /태블릿 PC 구입 시기 - 위치 정보 추적 앱을 통한 자녀 위치 파악 여부, 설치 시 설치 시기(시작~종료) - 자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 침해 사례, 침해 주체, 침해 게시물, 침해 시 대처 경험 -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나) 아동 대상 조사

아동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실태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인식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아동 대상 설문조사는 개인 정보 보호법상 아동의 범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설문지 내용의 이해가 가능한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이 설문지 작성 시 집중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설문은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조사원-아동의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아동조사 역시 부모조사와 마찬가지로 아동 연령 및 지역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총 261명의 아동이

³⁾ 아동 대상 설문조사에 대한 IRB 승인을 받음(KICCEIRB-2023-제05호).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참여 아동 중 여아는 50.2%, 남아는 49.8%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이 34.1%, 초등학교 5학년이 33.3%, 초등학교 4학년이 32.6%로 나타났다.

〈표 Ⅰ-2-3〉 아동 대상 설문조사 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갼	계(수)
전체	100.0 (261)	성별	
학교 소재지		여자	50.2 (131)
서울특별시	15.7 (41)	남자	49.8 (130)
부산광역시	5.7 (15)	학년	
대구광역시	4.6 (12)	초등학교 4학년	32.6 (85)
인천광역시	6.1 (16)	초등학교 5학년	33.3 (87)
광주광역시	3.8 (10)	초등학교 6학년	34.1 (89)
대전광역시	2.7 (7)	거주 지역	
울산광역시	2.3 (6)	대도시	41.0 (107)
세종자치시	1.1 (3)	중소도시	44.8 (117)
경기도	27.6 (72)	읍면	14.2 (37)
강원도	2.3 (6)	학교 외 이용 기관/학습활동*	
충청북도	3.4 (9)	학원	89.3 (233)
충청남도	4.6 (12)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9.2 (24)
전라북도	2.3 (6)	학습지(방문교사)	23.0 (60)
전라남도	5.0 (13)	인터넷/화상 강의	26.8 (70)
경상북도	4.6 (12)	교내 방과후 학교	18.0 (47)
경상남도	6.9 (18)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시설기관	1.9 (5)
제주도	1.1 (3)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1.1 (3)
		기타	0.4 (1)

주1: 중복 응답으로 합계가 100을 초과함.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조사 내용은 아동 일반적 특성과 아동의 온라인 환경 이용 실태, 아동 SNS 이용 실태, SNS 이용 실태, 셰어런팅 관련 경험, 온라인 개인정보 및 아동권리 인식 등으로 구성한다.

〈표 ፲-2-4〉아동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아동 일반 특성	성별, 학년, 학교 소재지, 학교 외 이용 기관 등			
온라인 환경	기기 보유 실태 인터넷 할 때 이용하는 기기, 본인 소유 기기 등			
	이용 실태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하는 경우 주로 하는 활동, 주요 이용 사이트/앱 등			

구분		조사 내용				
SNS 이용 실태		SNS 이용하는 이유, SNS 이용하지 않는 이유, SNS 이용 시 사용 계정, 계정생성 방법, SNS 이용 시간, SNS 이용 시 사용하는 기기 등				
셰어런팅 관련 경험*	셰어런팅 경험,	셰어런팅 경험, 세부 내용, 경험 시 기분				
온라인 개인정보 및 아동권리 인식	개인정보 인식	개인정보 용어 인지 여부, (인지하는 경우) 알게 된 이유,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입력 시 입력하는 방법, 개인정보취급방침/이용약관 인지 여부, 약관 읽는 여부, 읽지 않는 이유, 개인정보 활용 시 아동 생각 및 행동 등				
	아동 권리 인식	아동권리 인식 관련 생각 및 행동, 권리 교육 실태, 권리 교육 필요성 등				

주: 셰어런팅이라는 단어가 연구 대상자인 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설문지 상에는 '부모가 자녀의 사진 등 자녀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사용함.

3)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가) 부모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FGI)

14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부모 및 아동의 개인정보 이용실태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인식, 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온라인상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요구, 셰어런팅 실태 및 인식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부모 설문조사 하단의 별도 링크를 마련하여 리크루팅을 진행하였으며, 리크루팅 이후 모자란 면담 인원은 눈덩이 표집을 통해 마련하였다. 부모 면담 대상은 14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며 4~6인으로 집단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부모 대상으로 SNS 사용 실태 및 아동의 프라이버시 관련 인식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부모 및 아동 특성별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면, 면담에서는 실제적인 부모의 셰어런팅 관련 인식, 아동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등을 깊이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면담 내용은 〈표 I-2-5〉과 같다.

〈표 I-2-5〉 FGI 내용 특성: 부모

구분	내용
〈기초 질문〉	
부모 일반 특성	성별, 학년, 자녀 수, 자녀 성별 및 연령, 직업, 자주 이용하는 SNS
〈면담 질문〉	
SNS 이용 실태	SNS 이용 이유, 게시물 업로드 내용, SNS 업로드 기준, SNS에 타인 사진/영상등 게시물 업로드 시 상대방 허락 여부와 그 이유
자녀에 대한 게시물	자녀에 대한 게시물 종류, 게시물에 대한 자녀 반응, 게시물 업로드 시 자녀 동의 여부 및 그 이유

구분	내용
협찬 등 수익 경험이	자녀 게시물로 인한 수익 창출 경험 및 내용, 업로드 계기, 수익활동에 대해 자녀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와 상의하는지 여부
자녀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온라인상 자녀 사진/동영상 공유 경험,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 및 침해 내용, 자녀에 대한 게시물 악용 소지 관련 우려
아동의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내용(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관련 필요한 사회적 노력
보호	내용,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법/제도)

부모 대상 FGI 참여자 특성은 다음 〈표 I-2-6〉 및 〈표 I-2-7〉과 같다.

〈표 I-2-6〉 FGI 참여자 특성1: 부모

번호	FGI 그룹	연령	성별	자녀 수	자녀 연령(성별)	SNS 이용 내용	SNS 공개 범위	SNS 활용 내용
1		42세	여	1명	12세(남)	5	지인 공개	정보 습득
2		41세	남	2명	11세(남), 10세(남)	5, 4, 6	지인 공개	정보 습득
3	그룹	45세	여	1명	11세(남)	5, 4, 1	전체 공개	일상 및 자녀 성장 기록
4	1	35세	여	2명	12세(남), 9세(여)	6	비공개	_
5		39세	남	1명	10세(남)	1, 6, 9	전체 공개	일상 및 자녀 성장 기록, 정보 습득
6		43세	남	2명	11세(여), 9세(여)	9, 11	전체 공개	소통
7	그룹 2	42세	남	2명	10세(여), 5세(여)	6, 1	지인 공개	소통
8	2	41세	여	2명	11세(여), 8세(여)	6	지인 공개	소통
9		43세	남	1명	6세(남)	7, 2, 11	지인 공개	소통
10		35세	여	1명	5세(남)	1, 4	전체 공개	일상 및 자녀 성장 기록
11		40세	여	1명	5세(여)	1	지인 공개	정보 습득
12	그룹	35세	여	1명	5세(여)	1, 4	전체 공개	이벤트 참여
13	3	35세	여	1명	3세(여)	1, 4	전체 공개	일상 및 자녀 성장 기록
14		38세	남	1명	9개월(여)	1, 11	전체 공개	일상 및 자녀 성장 기록
15		35세	남	1명	10세(남)	1	전체 공개	일상 및 자녀 성장 기록

주: ①인스타그램, ②페이스북, ③네이버 밴드, ④네이버 카페, ⑤네이버 블로그, ⑥카카오톡(메신저), ⑦카카오스토리, ⑧트위터, ⑨틱톡, ⑩다음카페, ⑪유튜브, ⑫유튜브 쇼츠, ⑱아프리카 TV, ⑭게임(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⑯ 사진 보정/영상 편집 앱, ⑯웹게시판(네이트판, 더쿠, 뽐뿌, 디시인사이드 등), ⑰OTT(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 왓챠 등), ⑱인터넷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 ⑲기타

〈표 I-2-7〉 FGI 참여자 특성2: 부모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 (15)		,
부모 성별		자녀 수	
남	46.7 (7)	1명	66.7 (10)
여	53.3 (8)	2명	33.3 (5)
부모 연령		자녀 연령 [*]	
35~39세	46.7 (7)	7세 미만	40.0 (6)
40~44세	46.7 (7)	8세 이상 10세 미만	26.7 (4)
45세 이상	6.7 (1)	10세 이상 13세 미만	66.7 (10)
평균 연령	39.3세	자녀 성별 [*]	
본인 교육 수준		남	60.0 (9)
고졸 이하	6.7 (1)	여	73.3 (11)
대학교졸	66.7 (10)	자녀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대학원 졸 이상	26.7 (4)	있음	40.0 (6)
배우자 교육 수준		없음	60.0 (9)
고졸 이하	0.0 (-)	자녀 게시물을 통한 수익 경험	
대학교졸	80.0 (12)	있음	40.0 (6)
대학원 졸 이상	20.0 (3)	없음	53.3 (8)
본인 취업 여부		무응답	6.7 (1)
취업	86.7 (13)	자녀 인터넷 사용 통제 여부	
미취업	13.3 (2)	통제함	66.7 (10)
배우자 취업 여부		통제 안함	33.3 (5)
취업	86.7 (13)	자녀 위치 추적앱 사용 여부	
휴직중	6.7 (1)	사용함	33.3 (5)
미취업	6.7 (1)	사용 안함	66.7 (10)
월 평균 소득		자주 사용하는 앱이나 사이트*	
500만원 이하	6.7 (1)	인스타그램	60.0 (9)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40.0 (6)	페이스북	6.7 (1)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53.3 (8)	네이버카페	33.3 (5)
평균 소득	700만원	네이버블로그	20.0 (3)
		카카오톡	33.3 (5)
		카카오 스토리	6.7 (1)
		틱톡	13.3 (2)
		유튜브	20.0 (3)

주: 중복 응답으로 합계가 100을 초과함.

나) 아동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아동과의 면담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 이용실태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인식, 기관 및 매체를 통한 관련 교육 경험, 온라인상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요구,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과 셰어린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 면담

참여자는 부모 설문조사 하단의 별도 링크를 마련하여 리크루팅을 진행하였으며, 리크루팅 이후 모자란 면담 인원은 눈덩이 표집을 통해 마련하였다. 아동 면담 대 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아동의 범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 아동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에서는 아동 대상으로 SNS 사용 실태 및 아동의 프라이버시 관련 인식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아동 특성별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면, 면담에서는 실제적인 SNS 사용 내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등을 깊이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담 내용은 아동의 온라인 환경 이용 실태와 SNS 사용 규칙 및 부모님 허락, SNS 사용 형태 및 개인정보 인식, 셰어런팅 경험 및 셰어런팅에 대한 생각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표 I-2-8〉과 같다.

〈표 I-2-8〉 FGI 내용 특성: 아동

구분	내용				
〈기초 질문〉					
아동 일반 특성	성별, 학년				
 온라인 환경	기기 보유 실태	인터넷 할 때 이용하는 기기, 본인 소유 기기 등			
이용 실태	이용 실태	주요 이용 사이트/앱			
〈면담 질문〉					
SNS 사용 규칙과 부모님 허락	SNS 사용 시 부모님과 약속한 사항, SNS 사용하기 위해 부모님 허락 유무				
SNS 사용 형태 및 개인정보 인식	SNS 사용 시 내 개인정보 공유 유무, 공유 시 정보 내용, 공유 대상, 해당 이유 등 SNS 사용 시 부모님/다른 사람 정보 공유 유무, 공유 시 정보 내용, 공유 대상, 해당 이유 등				
셰어런팅 [*] 경험 및 셰어런팅에 대한 생각	부모님/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공유한 경험, 그 당시 내 동의 여부, 나의 동의없이 내 정보가 온라인에 공유되고 있음을 인지했을 때 내 기분, 나의 동의없이 부모님이 내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 부모님이 내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에 대해 내가 취한 행동 등				
온라인상에서의 아동의 권리 보호 요구					

주: 셰어런팅이라는 단어가 연구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면담지 상에는 '부모님/다른 어른이 내 사진 등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사용함.

아동 대상 FGI 참여자 특성은 다음 〈표 I-2-9〉 및 〈표 I-2-10〉과 같다.

21

⁴⁾ 아동 대상 면담조사에 대한 IRB 승인을 받음(KICCEIRB-2023-제10호).

〈표 I-2-9〉 FGI 참여자 특성1: 아동

번호	FGI 그룹	아동 학년 (초등학교)	아동 성별	부모로부터 사진 노출 경험	사진 노출 때 부모로부터 동의 요청 여부	SNS 이용 여부	주로 사용 앱/사이트*
1		4학년	남	없음	노출 경험 없음	0	6, 18, 19
2	72	5학년	남	있음	동의 요청 없음	0	11, 12, 14
3	그룹	5학년	남	없음	노출 경험 없음	0	11, 14, 18
4		5학년	남	있음	동의 요청 없음	0	6, 14, 18
5		5학년	남	있음	동의 요청 있음	0	3, 11, 14
6	72	6학년	남	없음	노출 경험 없음	0	6, 11, 18
7	그룹 2	5학년	남	없음	노출 경험 없음	0	1, 6, 18
8	_	5학년	여	있음	동의 요청 있음	0	11, 14, 18
9		6학년	남	있음	동의 요청 없음	0	11, 17, 18
10	그룹	6학년	남	있음	동의 요청 없음	0	11, 12, 14, 18
11	3	6학년	남	있음	동의 요청 없음	X	6, 11, 14, 18
12		6학년	남	있음	동의 요청 없음	0	11, 12, 14
13		4학년	여	있음	동의 요청 있음	0	6, 11, 14
14	그룹	4학년	여	있음	동의 요청 없음	0	6, 7, 17
15	4	4학년	여	있음	동의 요청 없음	X	6, 9, 11
16		4학년	여	없음	노출 경험 없음	0	6, 9, 11, 12, 15, 18

주: ①인스타그램, ②페이스북, ③네이버 밴드, ④네이버 카페, ⑤네이버 블로그, ⑥카카오톡(메신저), ⑦카카오스토리, ⑧트위터, ⑨틱톡, ⑩다음카페, ⑪유튜브, ⑫유튜브 쇼츠, ⑱아프리카 TV, ⑭게임(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⑮ 사진 보정/영상 편집 앱, ⑯웹게시판(네이트판, 더쿠, 뽐뿌, 디시인사이드 등), ⑰OTT(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 왓챠 등), ⑱인터넷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 ⑲기타

〈표 I-2-10〉 FGI 참여자 특성2: 아동

단위: %(명)

			L11. /0(0)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아동 전체			
아동 성별		SNS 이용 여부	
남	62.5 (10)	이용함	87.5 (14)
여	37.5 (6)	이용하지 않음	12.5 (2)
아동 학년		자주 사용하는 앱이나 사이트*	
4학년	31.3 (5)	인스타그램	6.3 (1)
5학년	37.5 (6)	네이버 밴드	6.3 (1)
6학년	31.3 (5)	카카오톡	56.3 (9)
인터넷 사용 기기 [*]		카카오 스토리	6.3 (1)
스마트폰	63.2 (12)	틱톡	12.5 (2)
컴퓨터/노트북	21.1 (4)	유튜브	75.0 (12)
태블릿PC	10.5 (2)	유튜브 쇼츠	25.0 (4)
기타	5.3 (1)	게임(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45.3 (9)
본인 소유 기기 여부		사진 보정/영상 편집 앱	6.3 (1)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있음	93.8 (15)	OTT(웨이브, 넷플릭스 등)	12.5 (2)
없음	6.3 (1)	인터넷 검색엔진	62.5 (10)
사용 시 부모님 허락 여부		기타	6.3 (1)
언제든지 사용 가능	31.3 (5)		
허락 하에 사용 가능	25.0 (4)		
기기나 앱에 따라 다름	37.5 (6)		
사용 안함	6.3 (1)		

주: 중복 응답으로 합계가 100을 초과함.

4)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의 방향, 내용 및 방법, 해외사례, 정책제언 등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선행연구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I-2-11〉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차수	일자	대상	주제	주요 내용
1차	3.10(금)	학계전문가 1인	질적연구방법 적용	- 부모 및 아동 대상 면담 및 분석방법 자문
2차	3.10(금)	학계전문가 2인	전반적인 연구내용 및 해외 사례 및 동향	- 해외 사례 및 동향 관련 자문 - 연구 방향 및 연구 범위 자문
3차	3.17(금)	학계전문가 1인	질적연구방법 적용	- 부모 및 아동 대상 면담 및 분석방법 자문
4차	3.21(화)	학계전문가 4인	아동 프라이버시 권리 관련 자문	- 연구 방향 및 연구 범위 자문 - 이동 프라이버시권 등 법적 내용 관련 자문
5차	4.10(월)	학계전문가 3인	전반적인 연구내용 논의	- 연구 방향 및 연구 범위 자문
6차	5.8(월)	학계전문가 2인	온라인상 아동권리 침해 실태 자문	- 온라인 콘텐츠상 아동권리 침해 실태 및 개선안 자문
7차	5.30(화)	학계전문가 2인	아동 대상 설문지 및 FGI 면담지 서면자문	- 설문조사 및 FGI 관련 자문
8차	6.1(목)	학계전문가 1인	아동 대상 설문지 및 FGI 면담지 자문	- 설문조사 및 FGI 관련 자문
9차	8.18(금)	학계전문가 2인	설문문항 최종검토 및 면담 시 고려사항 논의	- 설문조사 및 FGI 관련 자문
10차	9.6(화)	법률전문가 1인	아동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법적 쟁점	-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법적 쟁점 자문
11차	9.18(월)	학계전문가 1인	해외 법률사례 자문	- 프랑스 법률사례 자문
12차	12.6(수)	학계전문가 1인	정책제언 관련 자문	- 법률 개정안에 관한 자문
13차	12.13(수)	학계전문가 1인	정책제언 관련 자문	- 정책적 개선사항 자문

5) 아동권리단체와의 연구협력 및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심을 갖고, 관련 홍보를 하고 있는 아동권리단체(세이브더 칠드런, 굿네이버스)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 이용 및 셰어런팅에 관한 실태를 공유하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표와 면담지를 함께 개발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계 전문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단체(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등과 함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입법 논의로서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5)

〈표 I-2-12〉 간담회 개최 등 연구협력 논의	게표
-----------------------------	----

차수	일자	주제	주요 내용
1차	3.27(월)	실제 사례 자문 및 향후 연구 협력 일정 논의	- 아동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공유 - 아동권리단체 연구 협력 관련 자문
2차	4.24(월)	부모 및 아동 대상 설문조사지 검토	- 설문조사지 관련 자문
3차	5.30(화)	아동기본법과의 관계 등 검토	- 논의 중인 아동기본법안과의 연결점 검토
4차	11.3(금)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논의	- 연구결과 공유 및 개선안 마련
5차	12.20(수)	아동기본법 제정시 후속입법 개정	- 국회 논의 중인 아동기본법안에 따른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논의

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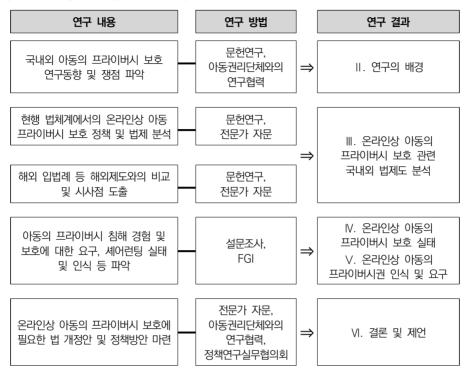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정책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방향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표 Ⅰ-2-1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차수	일자	주제	주요 내용
1차	6.28(수)	연구내용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 개인정보 정책 및 입 법 방향 논의
2차	11.1(수)	연구결과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 개인정보 정책 및 입법 방향 논의

^{5) 2023} 제5회 사회복지법제 연합포럼. 2023. 12. 20(수). 여의도 이룸센터.

[그림 I-2-1]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방법 및 결과



3. 연구의 범위 및 용어 정의

가. 아동

통상적으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나(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에서는 아동의 범위를 14세 미만으로 설정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아동의 범위를 일반적인 아동의 범위보다 좁게 설정하고 있다.

〈표 Ⅰ-3-1〉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법상 아동 범위 및 관련 내용

구분	미국	영국	EU	한국
관련 법규	COPPA ¹⁾	AADC ²⁾	GDPR ³⁾	개인정보 보호법

구분	미국	영국	EU	한국
아동 범위	13세 미만	18세 미만/ 연령범위 구분	16세 미만(국가별 13-16세 조정)	14세 미만
주요 내용 및 특징	- 아동 개인정보의 수 집, 이용 또는 공개 전 웹사이트 운영자 의 아동 부모에 대 한 고지 및 동의 의 무화 - 법정대리인에게 아 동의 개인정보 접근 및 삭제권 보장	단계로 구분하여 연 령별 보호조치 -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 아동 기본 권리 보	에 대한 정정권, 잊 힐 권리, 처리제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경우 법정대리인 동 의 의무 - 법정대리인의 열람, 정정·삭제,처리정 지, 동의 철회 등의 요구권 규정

주1: 미국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주2: 영국 Age Appropriate Design Code, 연령 적합 설계 규약

주3: 유럽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pp.8-12 참조.

2022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부록 1은 보호자 및 교사를 위한 안내사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세분화하고, 유아기(만 3세-만 6세), 초등학교 저학년(만 7세-만 9세), 초등학교 고학년(만 10세-만 12세), 중·고등학생(만 13세-만 18세)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보호자와 교사의 역할을 안내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55 이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법상 아동의 범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나.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소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로 이해되고 있다(이선민·장여경·김법연·오병일·김상 현, 2021: 11). 헌법재판소는 프라이버시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보고 있다(현재 2005. 5. 26. 99현마513 결정).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아동의 프라이버시(Privacy)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이를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로 번역하고 있다⁶. 이에 따르면 아동은 그 누구라도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간

섭받지 않으며, 명예나 평판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21년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5호를 통해 보호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사생활권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개인데이터 수집과 처리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의 개인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아동의 신원, 활동, 위치, 통신, 감정, 건강 및 인적 관계 등에 관한정보를 의미하며, 부모가 온라인에서 사진을 공유하거나 타인이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21: 67-68항).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해야 할 아동의 프라이버시의 범위를 "아동의 신원, 활동, 위치, 통신, 감정, 건강, 인적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 보고, 아동의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 공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본다.

다. 셰어런팅

셰어런팅(Sharenting)이란 부모가 자녀의 일상적인 사진, 동영상, 경험 등을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상에 올려 공유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 용어는 "공유(Sharing)" 와 "육아(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ITBC, 2022. 7. 11, 보도).

선행연구에 따르면 셰어런팅에 대해서는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는데, 다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외 논의 동향에 따라 셰어런팅을 "부모가 자녀의 사진 등 자녀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으로 서 이러한 행위가 자녀의 온라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셰어런팅으로 공개된 정보는 부모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등 셰어런팅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에 집중하여 해당 행위의위험성을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⁶⁾ 국내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2가지 번역본(국제아동인권센터, 법제처)이 통용되고 있는데, 두가지 번역본 모두 Privacy를 "사생활 보호"로 번역하고 있다. 2가지 국문 번역본은 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incrc.org/uncrc/에서 인출(2023. 6. 14. 기준).

연구의 배경

- 01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 02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법제도 문제
- 03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

Ⅱ. 연구의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서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위험성과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고찰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과 법제도상 문제점, 국내외 동향 등을 살펴본다.

1.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가. 아동의 프라이버시 의미와 유형

Livingstone, Stoilova, 그리고 Nandagiri(2019)는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개인의 관계 유형에 따라 1)개인과 다른 개인이나 집단(대인 프라이버시), 2)공 공 혹은 제3부문(비영리 프라이버시), 3)영리 집단(상업적 프라이버시)으로 구분하고, 대인 프라이버시(Interpersonal privacy)는 개인에 관한 온·오프라인에서 이용가능한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생성·접속·증폭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비영리 프라이버시는 정부, 교육, 보건 등 공공기관의 개인 데이터의 수집·처리과정에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상업적 프라이버시는 기업이 비즈니스와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사용하는 과정과 관계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개인이 맺는 관계 유형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분류한 Livingstone 외 (2019)와 달리 Unicef(2018)는 온라인 아동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복합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1)물리적, 2)커뮤니케이션, 3)정보, 4)의사결정 네 차원으로 프라이버시를 분류하였다. 물리적 프라이버시는 아동의 실제 이미지, 행동이나 위치를 추적, 모니터링과 방송하는 기술의 영향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는 아동의 게시물, 채팅, 대화, 메시지나 통화를 정부나 다른 행위자가 감시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정보 프라이버시는 아동의 개인 데이터가 수집·저장·처리될 때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프라이버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아동의 독자적 의사 결정이 방해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Unicef(2018)는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아동이 사적이고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고, 아동의 커뮤니케이션과 개인 데이터는 무단 접근·침입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하며, 아동의 프라이버시는 아동에 맞게 아동용 웹사이트, 플랫폼, 서비스 의 설계가 고려되고 온라인 프로파일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 한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정보를 제 공받으며, 권한이 주어질 때 아동의 프라이버시가 최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 하였다(Unicef, 2018: 8).

영국 아동위원회는 일상적으로 아동을 둘러싼 데이터 환경을 중심으로 1)온라인에서 공유되는 데이터, 2)가정에서 공유되는 데이터, 3)가정 밖에서 공유되는 데이터로 구분하였으며, 1)온라인에서 공유되는 데이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검색엔진, 부모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고, 2)가정의 데이터는 인공지능 스피커, 인터넷과 연결된 장난감, 홈캠, 3)가정 밖 데이터는 위치추적 시계,학교 데이터베이스, 학교의 생체인식 데이터, 마트 등 회원제서비스, 의료보험 및의료기록 등 주로 교육이나 보건서비스 같은 공적 영역 데이터로 보았다(이선민외, 2021: 19). 공공부문에서 공유되는 데이터의 경우 아동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목적이기는 하지만 프라이버시나 투명성, 보안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과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아동의 교육에 관한 매우 민감한 데이터가 사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으므로, 영국 아동위원회는 학교에서 아동에게 데이터 수집과 이용,데이터 발자국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선민외, 2021: 25).

나.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 강화

아동의 개인정보 이용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인식 관련 실태는 다음의 연구들에서 이미 파악된 바 있다. 이선민 외(2021)의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프라이버시 인식과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 37 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이선민 외, 2021: 223-225). 그 결과 FGI 참여자들은 가정, 학교, 미디어 등의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가정에서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는 사진 공유 외 스마트폰 감시앱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학교에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확대로 오프라인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그 내용이었다(이선민 외, 2021: 258). 또한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인 페이스북과 관련해 대다수 참여자가 약관의 내용이너무 어려워 사실상 읽지 못했고, 이 때문에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과 공유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민 외, 2021: 259).

10세 이상 18세 미만 한국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김아미 외(2022)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와 콘텐츠, 보호방안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집한 결과, 한국 아동의 78.7%가 이용 약관을 '읽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용약관을 읽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너무 길어서'였다(김아미외, 2022: 174). 아동들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내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이 이를 나쁘게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아미외, 2022: 174), 일 년에 1~2회 기준 18.3%의 한국 아동이 '개인정보로 해킹당함' 피해 경험이 있었으며, '내 휴대폰으로 나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가주된 피해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아미외, 2022: 174). 또한 한국 아동의 61%가 '한 달에 1~2회' 기준으로 '원하지 않는 상업적 광고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피해 경로는 팝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아미외, 2022: 174). 해당 연구에서 한국 아동의 절반은 개인정보와 유해 콘텐츠 관련 피해 모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의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김아미외, 2022: 174-175).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 스스로의 권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부모(보호자) 등의 역할 강화

나종연 외(2019)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인식과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동과 그 부모 617명(유아 부모 107명,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부모 110명,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100명 및 그들의 부모 100명, 중학교 1학년 아동 100명 및 그들의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나종연 외, 2019: 222). 온라인에서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관련 아동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은 개인정보의 수집 주체, 목적, 방법, 보관기간 등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았고, 그들 스스로 정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

감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나종연 외, 2019: 263). 결국 아동의 인지 발달이 완성되지 않았고 아동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나종연 외, 2019: 263).

장민영(2020)은 아동의 인터넷 활용 양태에 대해 초·중·고등학생 1,247명, 교사 50명, 전문가 설문조사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장민영, 2020: 32).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인권이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권 보장에 있어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에 비하여 아동친화적 언어, 콘텐츠, 플랫폼 등 환경 조성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장민영, 2020: 158).

최근 들어 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을 올리거나 자녀와의 일상생활 등 자녀의 정보를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 관련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국외의 경 우 Nottingham(2019)는 현대 사회에서 SNS가 생활의 일부가 된 상황에서 부모 가 쉽게 자녀의 이미지나 영상을 공개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의 문제를 고찰 하였는데, 일부 부모들은 블로깅('blogging' and 'vlogging')을 하거나 유튜브 채 널을 만들어 가족의 일상을 포함하여 자녀의 생활을 공개하고, 또 일부는 TV에서 방송되는 관찰형 다큐멘터리에 참여시키고 있었다(Nottingham, E., 2019). 그 결과 자녀의 사생활 내지 개인정보가 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성장하게 되면 자녀 스스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혼란 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Blum-Ross, Livingstone(2017)은 "셰어런팅 (sharenting)"이라는 개념을 탐구하여, 이것이 디지털 자아를 표현하는 한 형태인 지 고찰하였다(Blum-Ross, A. & Livingstone, S., 2017). 17명의 부모 블로거와 의 면담을 통해 부모들이 디지털 자아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하며 어떠한 내용을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부모 블로거들은 자신의 육아경험을 온라 인에 공유할 때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부모로서의 정체성 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위험이 발 생하기도 한다. 이에 부모들은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동시에 디 지털 공간에서 가족을 공유하는 윤리적 모순을 겪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이 제공하는 개인주의적 정체성과 셰어런팅을 평가하는데 있어 그 적절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C. Archer(2019)는 최근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맘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자신의 게시물에서 이용하고 후원 및 수익창출을 얻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일부의 경우 임신한 상태의 초음파 사진부터 자녀에 관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Stacey(2017)은 셰어런팅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가 처음 온라인 활동을 해보기도 전에 자녀의 디지털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모가 온라인상 공개하는 정보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 따라다닌다는 점을 비판하였다(Stacey B. S., 2017). 부모의 온라인상 공유 권리와 자녀의 개인정보보호 간 내재된 갈등에 관하여 분석하면서, 아동들이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또는 도덕적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의 경우 노인순과 김승희(2020)의 연구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23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노인순·김승희, 2020: 315),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SNS를 통해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며, 주로 맘카페나 단체 카톡에 참여함으로써 육아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순·김승희, 2020: 329). 서지은과 양성은(2022)의 연구에서는 3개월 이상 인스타그램에 자녀의 사진을 올린 경험이 있는 30대 어머니 1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한 결과(서지은·양성은, 2022: 80), 공개적 셰어런팅의 동기는 정체성표현의 욕구로 보일 수 있으며, 공개적 셰어런팅은 양육자로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새로운 수단이 된다고 분석하였다(서지은·양성은, 2022: 80), 하지만 과도한셰어런팅은 부정적 경험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면담 참여 어머니들은 셰어런팅을하면서 보여지는 정체성과 실제 자신과의 괴리, 피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자신 및 자녀의 사생활 노출에 대한 위험을 자각하면서 미디어 관계망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서지은·양성은, 2022: 80).

강누리와 강지영(2022)의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에 자녀의 사진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만6세 영유아의 어머니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여 비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강누리·강지영, 2022: 41-42). 그 결과 면담 참여 영유아 어머니들은 인스타그램 안에서 나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관계 속에서 정보적,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고 때로는 사회 비교를 경험하며, 취미와 사업의 경

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누리·강지영, 2022: 55). 면담 참여 영유 아 어머니들은 셰어런팅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셰어런팅의 패턴을 조절해가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강누리·강지영, 2022: 56).

천희영과 이미란의 연구(2022)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셰어런팅 경험을 다룬 8편의 질적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문화기술지 방법에 의한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천희영·이미란, 2022: 971-972). 해당 연구에서 영유아기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왜 셰어런팅을 하는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들은 소셜미디어가 사용하기 편리해서, 소통하고 싶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표현하고 싶어서 등의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셰어런팅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천희영·이미란, 2022: 984-98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셰어런팅을 하면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대상연구를 분석한 결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 확장, 정서적 지지와 회복, 보다 좋은 양육자 되기, 보다 나은 '나'되기 등의 긍정적 경험 외에 부정적 정서 경험 등의 범주도 도출되었다(천희영·이미란, 2022: 986).

한편 이보람(2021)은 특수한 요구를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SNS 의 순기능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만성질환을 앓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 중 해시태그로 자녀의 병을 알리면서 일상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에 공유하는 어머니 9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이보람, 2021: 156).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셰어런팅을 하는 어머니의경험과 의미를 주제 분석한 결과, SNS에 자녀의 병명을 공개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은 자녀의 질병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보람, 2021: 158). 어머니들은 SNS에서 자녀의 질환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고, 자녀의 성장과 치료과정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보람, 2021: 159). 또한 희귀난치질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간의 정서적 지지와 연대를 맺으며,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다른 부모에게 자신이 가진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두기 위해 SNS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보람, 2021: 159).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기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도 중요한데, 특히, 자녀의 프라이버시권을 옹호 할 수 있는 인식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2.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법제도 문제

이선민 등의 연구(2021)에서는 국내 개인정보 교육이 기업, 국가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채, 피해와 예방, 보호주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문제를 개인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이선민 외, 2021: 294). 또한 국내 개인정보 관련법과 제도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보호 차원에서 금지해야 할 부분이 방치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가 형식화된 점 등 국내법제도의 미비를 지적하였다(이선민 외, 2021: 294).

장민영(2020)은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권 보장에만 치중되어 있고, 사생활 보호권, 표현의 자유, 의견표명권, 건강권 등 발달권이나참여권에 관하여는 보호가 부족한 상황과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역량을 개발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제적 기반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장민영, 2020: 160), 이를 위해 아동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어렵지 않게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도 아동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장민영, 2020: 161).

그리고 이희정(2021)의 연구에서는 아동은 온라인 환경에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 및 그에 수반되는 장·단기적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능력도 낮아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부모 등 타인에 의한 조력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인식하였다(이희정, 2021: 157). 따라서 아동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는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 능력에 기초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준다는 접근보다는 프라이버시권 등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보호자, 개인정보처리자 등 여러 타인에 의해 그 이익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후견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이희정, 2021: 157).

이영희(2021)는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마련해놓은 운영지침과 청소년보호정책을 조사하였는데(이영희, 2021: 72), 조사 결과 주요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정책과 청소년 보호 정책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대부분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고,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아

동·청소년 출연자 권리에 관해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자는 주요 8개업체 중 유튜브 한 곳만 조사되었다고 보고하였다(이영희, 2021: 112). 이를 볼때 연구자는 현재 국내에서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을 자체 운영정책으로 규제할 수 있는 곳은 유튜브가 유일하며, 출연계약조건이나 보수지급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하다고 보았다(이영희, 2021: 112).

3.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

가.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 25호"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존중하며, 보호하고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기회, 위험 및 과제를 고려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협약의 선택의 정서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관련된 입법적, 정책적 조치와 기타 조치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제7항).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가 필요한 역동적인 개념이다. 디지털 환경은 기본적으로 아동을 위해 조성된 것이 아니었지만, 아동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의 제공, 규제, 설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모든 행동에서 모든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인 고려사항이되도록 해야 한다(제12항).

법안과 정책의 개발 외에도,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 권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기업이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엔지니어링, 개발, 운용, 배포 및 마케팅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사생활, 안전을 준수하는 규제 체계, 업계 규정,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이 최종 사용자이거나 그 밖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포함된다(제39항).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서는 제67항 이하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당사국은 모든 기관이 아동의 데이터(특히 아동의 신원, 활동, 위치, 통신, 감정, 건강 및 인적 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모든 환경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반도록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한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70항). 특히 당사국은 사생활과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절차와 관행을 통해 아동의 사생활이 고의로 침해당하거나 우발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70항).

아동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서 아동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가 필요한경우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의 동의 자체가 불충분하고 부모의 동의가 아동의 개인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당사국은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관에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의미있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제71항). 또한, 당사국은 아동과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저장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데이터를 수정하며, 공공기관이나 개인 또는 기타 단체에 의해 불법적으로 또는 불필요하게 저장된 데이터를 합당하고 합법적인 제약 하에 삭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여 접근권과 수정권, 삭제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제72항).

상업적 장소 및 교육·보육의 장소에서 감시에 대한 거부권 없이 디지털 감시를 실시해서는 안 되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제75항). 그리고 디지털 환경은 아동의 사생활권 존중과 관련하여 부모와 보호자에게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당사국은 아동, 부모와 보호자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의 사생활권이 갖는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자신들의행동이 이 권리를 어떤 식으로 침해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관행해 대해 알려야 한다(제76항).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에게 예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그러한 서비스 접근을 위해 아동 이용자에게 부모의 동의를 얻게 하는 어떠한 요건에서도 면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사생활과 아동 보호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제78항).

그 밖에도 일반논평은 기업 부문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제35항 이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아동이 인프라, 영업관행, 개인정보 및 자동화된 처리의 이용, 감시 등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사회의 디지

털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제 105항).

이와 같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EU와 영국 등의 개인 정보보호 법체계에서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EU 및 영국의 개인정보보 호 감독기관들은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 등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이선민 외, 2021: 163).

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7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수하여 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자율점검용 안내서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단 계별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미국·영국 등 해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준수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기획·설계 단계, ②수집 단계, ③이용·제공 단계, ④보관·파기 단계, ⑤권리보장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조치사항과 고려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사 등의 역할도 제시하고 있는데, 마이크나 카메라 등의 기능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넷 연결을 통해 해당 개인정보 전송이 가능한 완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수집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밖에 아동·청소년이 주요 이용자인 앱·서비스개발자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기획·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동 가이드라인의 개인정

보 중심 설계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본값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4월 24일부터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동 서비스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3. 7. 2).

[그림 II-3-1]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주요 내용

(아동 청소년 잊힐 권리 시범사업 주요 내용)

- · 신청자격: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 * 지원대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 ▶ 지원내용: 해당 게시물의 접근배제(블라인드) 또는 검색목록 배제 등 신청·상담
- ▶ 신청방법: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게시판 (privacy.go.kr/delete.do)에서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
- 이용절차: ①신청·접수 → ②상담 및 지원 방법 결정 → ③사업자 요청 → ④모니터링 및 결과 안내 등 4개 단계로 나누어 제공



자료: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60(2023. 7. 4. 인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을 맞아 6월 30일 까지 신청된 3,488건(처리 2,763건가)을 바탕으로 어느 연령대에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유형의 신청이 많은지 등 운영현황과 함께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3. 7. 2).

지금까지 신청된 3,488건 중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연령은 15세로, 총 652 건을 신청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고등학생)가 신청한 건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반면,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신청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3. 7. 2).



[그림 II-3-2]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신청자

자료: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60(202 3. 7. 4. 인출).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접수 사례를 보면 부모의 셰어런팅보다는,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였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하여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가 많았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은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SNS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지만, 개인정보 노

⁷⁾ 본인직접삭제(744건), 접근배제(56건), 검색목록배제(26건), 임시조치 지원(218건), 상담지원(1,719건) 등

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올렸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3, 7, 2).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녀 공개(셰어런팅)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정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녀 공개(셰어런팅)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총 10회(1,000여 명) 실시할 예정인데,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 공개(셰어런팅)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 방법 등이 사례와 함께 교육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3. 5. 23).

라. 아동권리단체의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동향8)

영국의 한 아동권리단체는 평균 13세 자녀를 둔 부모는 SNS에 자녀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평균 1,300장 정도 포스트하고, 18세까지 거의 7만개를 포스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Children's Commissioner, 2018: 2). 유니세프도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고, 2세가 되기 전부터 상당한 양의 정보가수집된다고 지적하였다(Unicef, 2018).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상 공유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며, 특히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육아 브이로그 컨텐츠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아동권리단체를 중심으로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하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 사례를 살펴보고, 공공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등을 파악해 보고자한다.

1)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셰어런팅 (sharenting)'이란 보호자가 아동의 일상이나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일로, [셰어

⁸⁾ 이하의 내용은 각 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는 SNS 속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SNS 통해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이 아이의 이름이나 성별, 나이, 보호 자 이름, 교육정보 등을 알려줌으로써 아동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며,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초상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먼저,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 - 아이의 사생활, 좋아요!?〉페이지를 통해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이 과도한 셰어런팅 사례를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온라인 공론장을 마련한다. 프로젝트에서는 시민들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은 콘텐츠를 제보 받았다. 시민들은 콘텐츠에 어떤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지,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등을 제보하도록 한 뒤 아동과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변경하여 "아이의 사생활, 좋아요?!"의 제보 게시판에 등록하여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함께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셰어런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와 더불어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SNS 이용을 위해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아이의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싫다'고 말할 기회를 주세요.", "SNS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이용하는지 확인하세요.", "아이의 개인정보가 새고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검색해주세요.", "아이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온라인 성범죄 위험으로부터아이를 보호해주세요.", "아이가 자주 가는 곳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올린 게시물은 주기적으로 삭제하세요," 8가지가 담겨있다. 가이드라인을 읽고 '서명하기'에 참여하면 준수 서명 캠페인 참여 확인증이 개별 발송된다.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9)

1. 아이의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⁹⁾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 https://sharenting.sc.or.kr/home(2023. 7. 1. 인출).

아이에 관한 게시물은 온라인상에 오랫동안 남아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아이 스스로에게도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아이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스스로 아래 질문에 답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게시물을 올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아이가 아니라 당신에 관한 이야기라도 올릴 것인지, 나중에라도 아이가 이 게시물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나중에라도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지는 않은지, 이내용이 아이의 평생 기록으로 온라인에 남아도 괜찮은 내용인지.'

2.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싫다'고 말할 기회를 주세요.

아이가 4세가 되면 자신을 개인으로 인지하고 어떤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다. 친구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사고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연령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올려도 괜찮은지를 물어봐주는 것이 좋다. 이 때 단순히 'OOO에 올려도돼''라고 묻기보다는 온라인에 게시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가 볼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풀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3. SNS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 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다수 SNS에서는 사용자가 올리는 사진이나 게시물마다 공개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아동의 개인정보가 내가 선택한 가족·친지에게만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SNS 보안이 완벽하지 않고, 기업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변경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모이자 소비자로서 기업이 보다 안전한 소비스를 제공하도록 꾸준히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아이의 개인정보가 새고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검색해주세요.

일단 온라인에 올리는 순간 게시물의 콘텐츠가 언제 어디까지 남을지 보호자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검색 포털에서 아이의 개인정보로 검색해보면 자신이 올린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다시 오르는지, 사람들이 그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구글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에 검색 알림을 설정하면 새로운 검색 결과가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5. 아이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온라인에는 양육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공간도 있다. 이런 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동의 개인정보가 들어갈 여지가 많다. 보호자 본인이나 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사용한다면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6. 온라인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목욕 사진이나 수영복 또는 속옷 차림의 사진은 성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귀엽게만 바라보겠지만, 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호주의 사이버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 보고에 따르면, 소아성애 성향 범죄 사이트 내 이미지 중

절반가량이 원래는 부모가 자녀와의 일상을 나누거나 기념하려고 SNS에 올린 사진들이었다고 한다)

7. 아이가 자주 가는 곳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아동의 생활 반경과 가족의 일과가 범죄자에게 노출된다면 아동 대상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시물을 올릴 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공문서 등 아이의 상세한 위치가 드러날 수 있는 정보가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모르는 사이 위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기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능을 미리 꺼두는 것이 좋다.)

8. 올린 게시물은 주기적으로 삭제하세요.

게시물 하나에 담긴 개인정보가 많지 않더라도 여러 게시물에 담긴 정보를 조합하면 굉장히 상세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기족과 친구들에게 소식이나 안부를 알리기 위해 올렸던 게시물이라면 일정 시간 이후에는 내리는 것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 서명하기 캠페인은 아동과 보호자(부모 및 교사 등)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SNS 속 나의 정보 찾기〉 패키지를 통해 아동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SNS 속 나의 정보 찾기〉는 아동과 보호자가 개인정보와 안전하게 SNS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SNS 사용 시 유의할점을 함께 정해보는 참여형 교구 꾸러미로 4단계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구 꾸러미에 제시된 빨간모자 이야기를 통해 무심코 올리는 SNS 게시물 속 정보들을 알아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림카드 속 SNS 게시물에서 이름, 나이, 사는 곳 등 정보 찾아본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SNS 속 우리의 안전을위해 서로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을 표현해본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을 주변에 공유해본다.



[그림 Ⅱ-3-3] 세이브더칠드런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

자료: 뉴스포스트(2021. 8. 23일자 기사). [셰어런팅 주의보] "이 사진 올려도 될까?" 아이에게 꼭 물어보세요,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4226(2023. 3. 2. 인출).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CJ파워캐스트와 협업하여 [셰어런팅 다시보기]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은 SNS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셰어 런팅 사례로 구성됐으며, 무심히 올린 아동의 사진을 누군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셰어런팅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며 캠페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 밖에도 폭력을 희화화한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프로그램 출연 아동을 성적 대 상화한 썸네일에 대해 해당 방송사 및 포털사이트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콘텐츠의 아동권리 침해를 지적한 바 있다(세이브더칠드런, 2022: 25). 2017년 9월에는 '보람튜브' 등 아동 유튜브 채널 운영자 일부를 아동 학대로 고발하였는데,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는 아동 출연자에게 임신한 연기를 시 키거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보람튜브의 가 족 회사 보람패밀리에 보호처분 결정을 내린바 있다.

2) 굿네이버스¹⁰⁾

굿네이버스는 [미디어 아동권리옹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디어가 아동권리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모든 아동이 미디어 환경에서 동등하고 충분한 접근성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에 따라 프로젝트는 미디어의 사회적 아동권리옹호 책무를 강화하도록 하며 아동의 미디어 접근 및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성을 갖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아동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 정책제언 등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프로젝트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미디어속 아동 다시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서는 "초딩", "급식이", "잼민이", "0린이" 등 미디어 속 무신경하게 쓰이고 있는 아동에 대한 표현들을 아동의 시선에서 다시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시민들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유튜브 개인방송 등을 통해 미디어에서 아동에게 불편함이나 상처를 줄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장면에 대해 제보를 받고, 제보내용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아동권리 감수성이 향상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촉구한다. 캠페인을 통해 미디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동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고 아동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가 필요함에도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권리 주체가 아니라 희화화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미디어가 아동을 다룰 때 드러나는 편견에 아동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지 고찰해보고 미디어속 아동 권리를 보호한다.

두 번째로 〈미디어 아동 자문단〉 활동을 진행한다. 미디어 아동 자문단은 아동이 스스로 경험하고 느낀 디지털/미디어 환경 속 이야기를 통해 디지털/미디어 환경 속 아동권리의 현재를 진단하고, 디지털/미디어 속 아동의 권리가 보다 더 잘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굿네이버스 [미디어 아동권리옹호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동 직접참여 사업이다. 〈미디어 아동 자문단〉은 아동의 직접참여를

¹⁰⁾ 이하의 내용은 '굿네이버스(2023). 굿네이버스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통해 아동권리 보호 정책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논의에서 아동의 의견과 참여를 반영하도록 한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정책을 넘어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하여 어른과 아동이 겪는 문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입법과정이나 정책 수립에서 아동의 직접 참여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미디어 아동 자문단〉은 미디어 아동권리이슈를 기반으로, 아동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인지, 아동이 경험하는 디지털/미디어 속 환경은 아이들에게 어떤 느낌인지 본인 및 친구의경험들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또한 굿네이버스에서 미디어아동권리옹호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좌담회, 토론회, 아동기고 작성등)에 참여한다.

마. 기타 관련 정책

1)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11)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이하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2020년 6월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인데, 해당 지침은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MCN 사업자(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MCN협회), 플랫폼 사업자(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먼저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하였다. 그 밖에도 인

¹¹⁾ 해당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0. 6. 30).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학대 행위 예방한다.' 참조

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 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방송통신위원회)

제5조(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성적유희 대상으로 보거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콘텐츠
- 2.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하는 상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 3.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 4.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소지 또는 흡입 등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 5. 이동·청소년 출연자가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 6.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 또는 고용되어 일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 7.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 8.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 9.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욕설 등을 의미하는 동작 등의 내용 이 담긴 콘텐츠
- 10.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 11.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노출이나 지나치게 선 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 12.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상생활이나 사이버상에서 타인을 신체적·정신적 위해 등을 통해 괴롭히 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의 콘텐츠
- 1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 등을 저해하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콘텐츠

제6조(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 제작과정) ①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하는 경우 사전에 콘텐츠의 제작 취지와 성격, 콘텐츠 가 유통되는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 수익 창출방법과 수익배분방식 등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 자와 그 보호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 출연 여부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자 또는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주체적 사고를 인정하고, 고유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2.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3.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4.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5.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2) 유튜브 정책

유튜브 등 개인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는 소위 '키즈 크리에이터'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출연한 콘텐츠 내용, 아동학대 등이 이슈가 된 바 있다.12) 이에 유튜브에서는 아동이 출연하는 콘텐츠를 위한 권장사항을 마련하여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를 게시할 때는 제작자 등에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동영상의 사용자 댓글 검토, 동영상의 공개 설정 및 퍼가기 설정 등을 관리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미성년자 노동 행위와 관련된 모든 법규, 규칙, 규제를 준수하고 학교교육, 작업 환경, 시간, 휴식 등 관련법률이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아동이 출연하는 콘텐츠를 위한 권장사항(3)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를 게시할 때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미성년자를 동영상에 등장시키기 전에 부모나 법적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영상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¹²⁾ SBS뉴스(2019. 9. 1일자 기사). [스브스夜] '그것이알고싶다' 아이의 행복과 아동학대 사이…'키즈 유튜브' 속 문제의식들,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09636693&plink=COPYPA STE&cooper=SBSENTERNEWS(2023. 10. 1. 인출); 컨슈모타임스(2019. 11. 1일자 기사). 키즈 유튜버 콘텐츠, 아동학대 의심 시 삭제 조치, https://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mod=news &act=articleView&idxno=319481(2023. 10. 1. 인출).

¹³⁾ You Tube 정책,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9229229?hl=ko-KRChoosing(20

- 동영상의 사용자 댓글 검토. 원하는 대로 댓글을 필터링하고 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며 언제 든지 YouTube에 스팸 또는 악용 댓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의 공개 설정 및 퍼가기 설정을 관리합니다. 동영상을 공개할 대상과 외부 사이트에서 공 유할 방법을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노동 행위와 관련된 모든 법규, 규칙,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 몇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 허가: 현지 법규 및 규정을 검토하여 동영상에 나오는 미성년자에게 노동 허가, 등록 또는 라이선 스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데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 임금/수익 분배: 미성년자에게 작업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관련된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미성년자에게 바로 제공하거나, 미성년자용으로 보호되는 일정 금액을 따로 확보해 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학교 및 교육: 미성년자의 콘텐츠 참여 시 적절한 학업 및 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해당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작업 환경, 시간, 휴식: 미성년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이어야 합니다. 매일 휴식, 교육, 오락을 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야간에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 또는 주 단위 작업 횟수 및 작업 시간 한도에 대한 현지 법규 일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영국 아동학대방지협회 지침14)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NSPCC, 국가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영국의 아동보호 단체인데, 영국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촬영하거나 비디오를 촬영할 때는 아동 보호와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기관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제작, 사용 및 보관하는 경우에 데이터 보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아동들의 이미지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진 촬영 및 비디오 촬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23. 10. 1.} 인출).

¹⁴⁾ NSPCC Learning 홈페이지, https://learning.nspcc.org.uk/safeguarding-child-protection(2023. 10. 1. 인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해 동의를 얻는 방법¹⁵⁾

언제 동의가 필요한가?

- 아동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미지 사용과 공유에 대해 상담을 받고 동의를 해야 한다.
-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경우. 이미지 사용에 대한 부모 동의도 얻어야 한다.
-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된 상황에서(예: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부모 권한을 가진 사람(예: 아동의 보호자 또는 지방 자치단체)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6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경우, 활동 및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부모 동의를 얻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모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아동의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야 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는 18세까지 자녀에 대한 법적 부모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동의를 얻는 방법

- 아동, 청소년, 그들의 부모 및 보호자들이 그들이 동의하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 사진이나 비디오가 찍히고 있다는 점을 알린다.
- 이미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설명한다.
- 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해 그들의 동의를 요청하고 이를 서면 동의서에 기록한다.
- 그들의 동의가 유효한 기간과 이미지를 보관할 기간을 알려준다.
- 아동 또는 그들의 부모가 나중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한다.
- 아동의 이미지가 온라인이나 인쇄물에 사용된 경우, 동의가 철회된다면 이미지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임을 명확히 한다.
- 부모, 보호자 및 아동이 이미지 사용에 대해 동의한 내용을 서면 동의서에 기록해야 한다. 해당 연도의 시작 시점에 사진 촬영 정책을 아동과 부모에게 공유하고 동의를 얻는 것은 좋은 관행이다.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예: 전문 사진작가를 초빙하거나 사진이 지역 또는 국가 매체에 등장할 수 있는 경우) 추가적인 동의를 얻어야 할 수도 있다.

동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아동 및/또는 그들의 부모와 보호자들이 사진 촬영이나 공유를 원치 않는다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 해야 한다. 아동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동의가 없어서 어떤 활동에서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 사진 촬영 세션 이전에 부모, 보호자, 그리고 아동과 함께 가장 적합한 방법을 합의하여, 사진작가가 그들의 사진을 찍지 않도록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배지, 스티커, 팔찌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아동들이 특정 대상으로 간주되거나 고립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아동의 사진을 공유하는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안내

- 다른 사람의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 것은 포함하여 공공 행사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Ask the Police, 2021). 그러나 사진 촬영 정책 성명서에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소셜미디어에 다른 사람의 아이들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공유하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아이들이 식별될 수 있는 이벤트나 활동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부모들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이 일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사진 촬영 및 비디오 촬영 정책 성명서에는 개인 사용을 위해 사진과 비디오를 찍고 싶은 부모, 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기대치를 명시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아이들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공유하려는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

- 자신의 아이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 설정을 사용하여 프로필과 사진이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리적 위치 설정은 공유되지 않도록 하라고 제안한다. 사진을 게시하기 전에 부모나 보호자들은 아이의 위치나 신원이 알려질 수 있는 것들(학교 로고, 표지판, 도로명, 아이가 참여하는 동아리의 이름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온라인에 사진이나 비디오를 게시하기 전에 아이들의 허락을 구하는 것을 장려한다. 아주 어린 아이나 유아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기능할 수 있지만, 부모나 보호자들은 이미 지를 공개하기 전에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부모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안전에 관한 정보 세션을 개최하여, 온라인에서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¹⁵⁾ Sharing images, https://learning.nspcc.org.uk/research-resources/briefings/photography-sh aring-images-guidance(2023. 10. 1. 인출).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도 분석

01 우리나라 법제도 현황

02 해외 법제도 현황

0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Ⅲ.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도 분석

이하에서는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해외의 제도를 분석한다. 국외 사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주요 사례로 언급되는 미국과 EU 외에 최근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진행 중인 프랑스 사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법제도적 개선안을 모색한다.

1. 우리나라 법제도 현황

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아동의 범위는 14세 미만을 의미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정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제3항, 2023. 3. 14. 개정). 특히 2023년 3월 개정을 통해, 기존에 여러 조항에 흩어져있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하나의 규정으로 신설·마련함으로써 강화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호법 제22조의2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호법 제22조의2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

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3항 및 제4항).

이처럼 개정을 통해 법 제5조 제3항 신설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금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기존에는 온라인 사업자에 한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의무 및 법정 대리인 동의 확인의무, 알기 쉬운 언어 사용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23년 9월 15일부터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4세 미만인 아동의 라를 받지 않고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 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1항),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를 할 수 있 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2항).

⟨표 Ⅲ-1-1⟩ 개인정보 보호법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개정 사항(법률 제19234호, 2023.3. 14. 개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법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 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 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 는 방법
 -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 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 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 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주소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12.]

시행령

나.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 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 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법 제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에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4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①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보급, ②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보급, ③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홍보, ④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4조의8).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41조 제2항). 그 밖에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제42조), 청소년 유해 매채물의 광고 금지(제42조의2),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제42조의3)에 관한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2018년 12월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여러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2020년 2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체계를 재정비하면서 2018년 2월 개정

시에 도입되었던 다수의 아동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거나 삭제되었다.

다. 위치정보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함)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 제1조).

위치정보법은 2018년 12월 개정(법률 제16087호, 2018. 12. 24. 공포)을 통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법 제25조 제1항),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여(법 제17조의2 신설) 아동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였 다(대통령령 제29853호, 2019. 6. 11 개정).

〈표 Ⅲ-1-2〉 위치정보법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주요 내용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 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법률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 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제19조제5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

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8세 이하의 아동
- 2. 피성년후견인
-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 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
- 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 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 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 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 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시행령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 을 안내할 수 있다.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 4. 동의의 연월일

라. 기타 유관 법률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행법상 아동의 기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5조의2 제3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역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 제6항)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생활의 보호와 같은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교육 부령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스템의 사용권한이나 운영, 보안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수집절차나침해시 구제수단에 대한 내용은 두고 있지 않다.

2. 해외 법제도 현황

가. 미국

1)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16)

가) 적용대상 및 주요 개념

미국 프라이버시 법제의 특징은 하나의 통일된 일반적 성격의 법률이 없고, 다양한 형태의 연방법과 주법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 정부의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규율하는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이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 규율(self-regulation) 방식으로, EU GDPR이나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보호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양한 영역별로 영역 특성에 맞는 프라이버시 관련 연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이다. 1998년 제정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에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13세 미만 미국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이 미국 외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용된다.

COPPA에서 개인정보란 온라인에서 수집된 개인에 대한 개인 식별 가능 정보로서 "성명, 도로명과 도시 이름을 포함한 집주소 또는 다른 물리적인 주소, 이메일 또는 온라인 연락처[메세지를 보낼 때 사용되는 이용자 식별자, 이메일 주소가 드러나는 인터넷상 이름 또는 가명, 휴대폰 번호, 사회보장번호, 쿠키 또는 프로세스 일련번호에 포함된 고객번호와 같은 영구 식별자(단, 식별가능한 정보와 연결된 경우에 한함)], 개인의 성 또는 사진이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물리적 또는 온라인으로 접촉을 허용하도록 하는 정보, 온라인에서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아동 또는 부모의 정보가 앞서 언급한 다른 식별자와 결합된 경우"등을 말한다.

¹⁶⁾ 이하의 내용은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미국 프라이버시 보호법, https://privacy.naver.com/global_s upport?menu=global_support_usa_privacy(2023. 6. 13. 인출); EU GDPR 홈페이지, https://gdpr-info.eu/(2023. 6. 13. 인출);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체계 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홈페이지, 국가별정보,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70&m Code=D060010000&etc2=%EB%AF%B8%EA%B5%AD(2023. 6. 13. 인출)' 참조.

한편, COPPA는 아동을 주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동을 주타겟으로 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내 아동향 서비스 요소를 포함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directed to children) 서비스'에 해당하는 "혼합 유저 서비스(mixed audience)", 그리고 아동을 주타겟으로 하지 않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실질적인 인식(actual knowledge)이 있는 일반 유저 서비스(general audience)"에도 적용된다. 즉, 미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directed to children) 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②아동을 주타겟으로 삼거나, ③일반 유저 서비스라도 아동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이 있는 경우 모두 COPPA를 준수해야 한다.

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directed to children) 서비스 판단 기준

FT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주제. 시각 또는 음성 콘텐츠.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사용 또는 아동 기반 활동, 모델의 나이, 아동 연예인 또는 아동처럼 보이는 외모를 가진 연예인의 등장 여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 나 서비스에서의 광고 집행, 그리고 그 외 아동 유저를 타겟팅 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등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판단요소로 제시되어 있 다. 아동을 주타겟으로 삼는 사이트의 경우, 모든 유저를 아동으로 보고 COPPA를 적용해야 한다.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아동을 주타겟 으로 삼지는 않는 혼합 유저 서비스(mixed audience service)의 경우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13세 미만으로 확인된 유저에게만 COPPA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가 13세 미만 아동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는 "아동 주타겟 서 비스"인지 "혼합 유저 서비스"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을 주타겟으로 하지 않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반 유저 서비스 (general audience service)의 경우 COPPA 적용을 받지 않지만, 13세 미만 아 동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에 대한 실질적 인식(actual knowledge)이 있는 경우 COPPA가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FTC는 틱톡의 경우 '언론에서 특정 서비스가 아동에게 인기 있거나 사용 중이라고 보도된 사실'이 판단 요소로 작용한 바 있다.

다)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COPPA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규제 기관인 FTC(Federal Trade Commission: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다. COPPA는 FTC에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행정입법(Rule)을 제정하여 집행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FTC는 COPPA법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COPPA Rule'을 2000년부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FTC는 2019년 2월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많은 아동들이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OPPA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아동의 이름,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 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집 한 것에 대해 570만달러(한화 약 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구글과 자회사인 유튜브에 대해 아동 대상 채널의 시청자로부터 부모에 대한 고지와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인터넷상에서 이용자를 추적하는 데 이용되는 지속적 식별자, persistent identifiers)를 수집하여 COPPA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행절차를 개시하여 2019년 9월, 1억 7천만 달러(한화 약 2,400억)의 과징금 부과와 기타 내용으로 합의(settlement)를 하였다. 합의에 따라 2020년부터 유튜브에 아동 대상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creators)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라벨링 (labelling)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아동 대상 채널에 대해서는 개인화된 광고가 금지되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도 FTC의 직접적인 법 집행 대상이될 수 있다.

라) COPPA 적용시 6가지 준수사항17)

FTC는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가 온라인상 아동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이 COPPA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특정 유형의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특정 정보를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¹⁷⁾ 자세한 내용은 '미국 FTC 홈페이지,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A Six-Step Complia nce Plan for Your Business, https://www.ftc.gov/business-guidance/resources/childrens-online-privacy-protection-rule-six-step-compliance-plan-your-business(2023. 11. 5. 인출)' 참조.

가이드라인에 따른 6가지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관행을 설명하는 명확하고 종합적인 온라인 Privacy Policy를 게시할 것
- 2)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제한적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에게 직접 통지하고, 검증 가능한 부모 동의를 획득할 것
- 3) 아동 정보의 수집 및 내부 사용에 대한 동의에 있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할 것
- 4) 부모에게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정보 삭제권을 보장할 것
- 5) 부모에게 아동 개인정보의 추가적 수집에 대한 제한 기회를 제공할 것
- 6)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기밀성, 보안성, 무결성을 유지할 것

마) 연령 확인 절차 및 부모 동의 방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워칙적으로는 모든 이용자를 아동으로 가주하고 COPPA의 보호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동을 주 타겠으로 삼지는 않고 다양한 연령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령 확인 절차를 두고 이용자를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혼합 유저 서비스(mixed audience services)는 연령 확인을 통해 이용자가 13세 미만 아동 으로 확인되는 경우 1)부모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 부모의 온라인 연락처를 수집하 거나, 2)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이 발생하지 않는 제한된 아동 전용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 대상 서비스인 경우에만 연령 확인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 서비스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 연령 확인 절차는 아동에게 나이를 속이는 행위를 장려하지 않는 "중립적인 방법 (neutral manner)"으로 진행해야 한다. 중립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생일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컨대 이 용자가 자신의 생년월일을 자유롭게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은 중립적인 방 법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드롭 다운 메뉴로 이용자가 13세 이상인지 아니지만 선택 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중립적인 연령 확인 절차로 볼 수 없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부모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FTC는 다음과 같이 7가지 유효한 동의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 1) 부모가 동의서 양식에 서명 후 팩스, 메일, 또는 전자 스캔 방식으로 동의서를 전달하는 방법
- 2) 거래 시마다 계좌 소유자에게 알림이 가는 신용, 체크 또는 다른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3)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훈련된 직원이 전화하여 동의를 구하는 방법
- 4) 훈련된 직원이 화상 채팅을 연결하여 동의를 구하는 방법
- 5) 정부에서 발행한 ID를 제공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체크하는 방법(단, 동의 프로세스가 끝나면 해당 정보를 바로 삭제해야 함)
- 6) 부모 외에는 대답하기 어려운 지식 기반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동의를 구하는 방법
- 7)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신분증 사진과 부모가 제출한 사진을 비교하는 방법

2) 캘리포니아주법18)

캘리포니아는 비즈니스 및 전문직 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Division 8에 'Chapter 22.1. Privacy Rights for California Minors in the Digital World'(디지털 세상에서 캘리포니아 미성년자를 위한 프라이버시권)을 추가하여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동 법안은 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들이 인터 넷 및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미성년자의 동의

동 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공유하기 전에 미성년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광고 프로파일링 제한

동 법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미성년자에게 광고를 게시할 때는 특정 광고 타겟팅(프로파일링)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다. 즉, 제3자의 마케팅을 위해 미성년자인 인터넷 사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집계하는 것이 금지되며, 특

^{18) &#}x27;Chapter 22.1. Privacy Rights for California Minors in the Digital World(디지털 세상에서 캘리포니아 미성년자를 위한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입법 정보 홈페이지,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BPC&division=8.&title=&part=&chapter=2 2.1.&article=(2023. 7. 1. 인출)' 참조.

히, 법률에 열거된 일정한 제품 및 서비스(무기, 술, 담배, 전자 담배, 음란물 등)를 직접 광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 개인정보 삭제권 또는 삭제요청권

미성년자가 개인정보를 게시한 경우 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 제(1)호, 운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등록된 사용자인 미성년자가 자신이 게시한 컨텐츠 또는 정보를 삭제(remove)하는 것을 허용할 것(삭제권) 또는, 운영자가 원한다면, (운영자에게) 삭제 (removal)를 요청하고 삭제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삭제요청권)
- 제(2)호, 운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등록된 사용자인 미성년자에게 미성년자가 게시한 컨텐츠 또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거나, 운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청하고 얻을 수 있음을 통지할 것
- 제(3)호, 운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등록된 사용자인 미성년자에게 운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게시한 컨텐츠 또는 정보를 사용자가 삭제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운영자가 원하는 경우,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
- 제(4)호, 운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등록된 사용자인 미성년자에게 제(1)호에 따른 삭제 (removal)가 등록된 사용자가 운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게시한 컨텐츠 또는 정보의 완전하거나 포괄적인 제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통지를 제공할 것

다만, ①연방법률 또는 주 법률의 다른 조항이 컨텐츠 또는 정보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②컨텐츠 또는 정보가 제3자에 의해서 운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저장되거나 게시된 경우 또는 등록된 사용자(인 미성년자)에 의해 게시된 컨텐츠 또는 정보가 제3자에 의해서 저장되거나, 재발간되거나 또는 재게시된 경우, ③운영자가 등록 사용자인 미성년자에 의해 게시된 컨텐츠나 정보를 익명화하여 등록된 사용자인 미성년자가 개별적으로 식별될 수 없는 경우, ④삭제청구권을 행사하는 미성년자가 제(a)항의 제(3)호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제공된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⑤미성년자가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이나 기타 보답(보수)를 받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운영자가 정보를 삭제 또는 제거하지 않거나 삭제 또는 제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22581조 제(b)항).

한편, 제22581조 제(d)항에 의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운영자가 미성년자에 의해 게시된 컨텐츠나 정보가 어떤 형태로든 운영자의 서버에 남아 있더라도 서비스의 다른 사용자와 대중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만든 경우 또는 미성년자인 사용자에 의해 게시된 원본 게시물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의해 게시된 컨텐츠나 정보를 제3자가 복사하거나 재게시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보이게 된 경우에는 운영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EU19)

EU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일 반데이터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라 함)'에서 COPPA와 유사한 아동을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를 신설하였다.

GDPR 제8조는 원칙적으로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각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연령을 13세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20) 제8조에 따라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정보사회서비스 (information society service directly offered to a child)'를 운영하는 데이터 관리자는 실제 동의자가 그 '부모'가 맞는지를 확인하여 유효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데이터 관리자가 이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을 이용하여(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technological state of the art)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데이터 관리자가 해야 한다. 그 밖에 제17조에서는 삭제할 권리(잊힐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의무(제12조), 데이터 보호(제25조),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제35조) 규정 등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이다.

제17조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컨트롤러(controller)²¹)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의 달성,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등의

¹⁹⁾ 이하의 내용은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EU GDPR이란, https://privacy.naver.com/global_support? menu=global_support_eu_gdpr_understand(2023. 6. 13. 인출); EU GDPR 홈페이지, https://gdpr-info.eu/(2023. 6. 13. 인출) 참조.

²⁰⁾ 이는 EU차원에서 연령을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각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채택한 연령은 13세(포루투갈, 벨기에, 덴마크 등), 14세(오스트리아, 이탈리아), 15세(그리스, 프랑스), 16세(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희정(2021).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고. 국가법연구, 17(2), pp. 177-178' 참조.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컨트롤러는 ①개인정보가 원래의수집·처리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단, 해당 처리에 대한 법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③정보주체가 처리에 반대하는경우로서 처리의 계속을 위한 더 중요한 사유가 없는 경우, ④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된 경우(GDPR 위반 등), ⑤법적 의무 준수를 위하여 삭제가 필요한 경우,⑥아동에게 제공할 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다만,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혹은 공익적 임무 수행 등 몇 가지 경우에는 삭제 요구를 거부할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정당한 삭제요구가 있는 경우, 컨트롤러는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제3자에게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GDPR 제정 이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들은 동 규범에 기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침해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는 결정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

- 이탈리아: 10세 아동이 틱톡에서 질식게임인 블랙아웃 챌린지를 하다가 사망하자 틱톡에 대해 연령이 불확실한 개인들의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할 것을 명령(2021년 1월)
- 네덜란드: 틱톡이 대다수가 16세 미만 아동인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영어로만 제공한 것은 GDPR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75만 유로(한화 약 10억원) 과장금 부과 (2021년 4월)
- 아이슬란드: 어린이 축구대회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려는 한 은행의 계획은 GDPR을 위반한 다고 결정. 특히 아동의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2020년 6월)
- 덴마크: '에픽 부킹'이 아동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광범위하게 게재하고 보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발표하고 사진 삭제 명령(2021년 3월)
- 스페인: 미성년 자녀의 사진을 부모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위챗에 공유한 외국어 교실에 3천유로 (약 4백만원) 과징금 부과(2021년 3월). 부모가 동의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아동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리듬체조 클럽에 5천유로(약 6백80만원) 과징금 부과(2021년 8월)

²¹⁾ GDPR 제 4조 7항에서 '컨트롤러'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 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²²⁾ 이에 대한 내용은 '이선민 외(2021).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시청자미디어재단, pp.172-176' 참조.

- **노르웨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민감정보(특수학급 학생과 부모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디지털학습 플랫폼으로 유출한 사건에 대해 50만NOK(약6천6백만원) 과징금 부과(2020년 7월)
- 벨기에: 교육위원회가 12세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스쿨 시스템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면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부모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최소화와 투명성 원칙을 위반(괴롭힘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면서 익명성 보장하지 않음)했다고 지적(2020년 6월)
- 스웨덴: 학생 50만명과 보호자, 교직원의 민감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스톡홀름 교육 위원회의 교육관리시스템이 취약한 보안으로 GDPR을 위반했다고 보고 약 39만2천유로(약 5억 3천6백만원) 과징금 부과(2020년 11월)

다. 영국

영국은 2018년 유럽연합이 GDPR을 발효한 이후 이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Data Privacy Act 2018, DPA)을 제정하였다. DPA는 아동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규정(제9조)하고 있으나, 영국 개인 정보보호 감독기관인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DPA 제 123조에 근거하여 연령적합설계규약(Age Appropriate Design Code, AADC)을 제정하여 그 범위를 18세 미만 아동 전체로 규정하였다(이선민 외, 2021: 176-177).

ICO는 특별한 보호로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GDPR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아동친화적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와 설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동과 친권자에게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합법성 등 GDPR상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보장하여야 하며,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반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이선민 외, 2021: 177). 특히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알릴 때는 성인에게 제공하는 내용과 같은 정보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하고 병확하며 평범한 문구로 작성해야 하며, 도표, 만화, 그래픽과 비디오 사용이 권장된다(이선민 외, 2021: 177).

AADC는 연령을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연령별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은 18세 미만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문서화된 구체적 증거를 통해 아동이 서비 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 흥원, 2020: 49). 18세 미만 아동과 관련하여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AADC는 유엔아 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영국의 아동권리 보호 의무에 근거하고 있다. AADC는 온라인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아동의 표현과 종교의 자유,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미디어 정보에 접근할 권리, 나이에 적합한 여가를 즐길 권리, 각종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나종연 외, 2022: 72-73).

AADC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영국의 아동권리보호 의무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동이 연령에 따라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AADC에서는 아동의 발달 수준과 요구사항이 연령별도 달라지기 때문에 각 연령 단계에 맞게 온라인 서비스가 조정되어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연령 단계의 특성에 맞게 6단계의 아동으로 세분화하여 정보 주체가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나종연 외, 2022: 74). 한편, 투명성에 대한 표준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및 기타 게시된 약관, 정책 및 커뮤니티 표준은 해당 아동의 연령에 알맞은 간결하고 눈에 띄며 명확한 언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①명확한 개인 정보보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②개인의 개인정보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③명확한 용어와 정책 및 커뮤니티의 표준을 제공해야 하며, ④아동에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⑤아동의 연령에 적절하게 정보를 조정해야 한다(나종연 외, 2019: 57-58).

〈표 Ⅲ-2-1〉 연령범위에 따른 투명성 준수 방법

연령범위	가이드라인
0-5세 영유아기 (pre-literate and early literacy)	GDPR 제13조와 14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에게 적합한 형식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의 전체 내용을 제공한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 형태로 아동에게 제공하고 만약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설정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기존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거나 또는 부모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6-9세 초등기 (core primary school years)	GDPR 제13조와 14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에게 적합한 형식으로 개인정 보보호에 대한 정보의 전체 내용을 제공한다. 만화, 비디오 또는 오디오 수단을 통해 부모에게 제공된 내용과 일관된 정보를 제공한다. 당신의 서비스와 관련된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누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그들의 권 리와, 그들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

연령범위	가이드라인
	시는 어떻게 존중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기본 설명과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또 사용자와 공급자가 서로 기대하는 바에 대해설명한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로 개인 정보 보호 개념과서비스 내의 위험을 설명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로서비스의 기본 내용과 작동 방식을 설명한다, 무엇을 그들은 당신에게 기대할 수있고 당신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만약 아동이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본 설정 값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만화, 비디오, 오디오의 수단으로 그들의 정보에 어떤 점이 발생하는지, 관련된 위험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아동에게 기본값을 그대로 두거나, 변경하기 전에부모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한다.
10-12세 전환기 (transition years)	GDPR 제13조와 14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에게 적합한 형식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의 전체 내용을 제공한다. 해당 연령 아동을 위한 적합한 형식으로 GDPR 제 13조, 14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의 전체 내용을 제공한다. 아동에게 글, 비디오, 오디오의 형태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개인의 요구에 따라 정보의 수준의 상향과 하향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아동이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본 설정 값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글, 만화, 비디오, 오디오의 수단으로 그들의 정보에 어떤 점이 발생하는지, 관련된 위험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아동에게 기본값을 그대로 두거나, 변경하기 전에 부모나 믿을 수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한다.
13-15세 10대 초반 (early teens)	GDPR 제13조와 14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에게 적합한 형식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의 전체 내용을 제공한다. 해당 연령 이동을 위한 적합한 형식으로 GDPR 제 13조, 14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의 전체 내용을 제공한다. 아동에게 글, 비디오, 오디오의 형태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개인의 요구에 따라 정보의 수준의 상향과 허향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아동이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본 설정 값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글, 비디오, 오디오의 수단으로 그들의 정보에 어떤 점이 발생하는지, 관련된 위험은 무엇인지설명한다. 아동에게 기본값을 그대로 두거나, 변경하기 전에 부모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한다. 정보를 보고자 하는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적합한 형태의 정보의 전체 내용을 제공한다.
16-17세 예비 성인기 (approaching adulthood)	해당 연령대의 아동에게 적합한 형태로 정보의 전체 내용을 제공한다. 아동에게 글, 비디오, 오디오의 형태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개인의 요구에 따라 정보의 수준의 상향과 하향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아동이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기본 설정 값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글, 비디오, 오디오의 수단으로그들의 정보에 어떤 점이 발생하는지, 관련된 위험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어른이나 믿을 수 있는 정보 소스와 함께 확인할 것을 촉구하거나, 관련하여 고려하는점이나, 설명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기본 값을 변경하지 말 것을 말한다. 정보를 보고자 하는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적합한 형태의 정보의 전체 내용을 제공한다.

자료: 나종연 외(2019).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pp.58-60.

라. 프랑스

1) 개인정보 보호법23)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제40조 제Ⅱ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디지털상의 잊혀질 권리를 규정하였는데, 이 권리는 미성년시기에 수집된 정보에 대한 '삭제권'(un droit à l'effacement)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⁴⁾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 제63조에 의해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II 항은 제1문단에서 미성년자시기에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삭제요청과 정보처리책임자의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문단에서는 삭제요청의처리 기한과 함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에제소(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삭제권은 첫째, 모든 '수집된' 정보에 적용된다. 즉, 수집된 정보를 게시한 자가 미성년자인지, 제3자인지, 제3자라면 미성년자인지 또 는 성년자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삭제권의 행사를 위해서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에서 성년자가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보가 수집될 당시에 정보주체 가 미성년자이기만 하면 되며, 삭제권 행사 시점에 미성년자인 것은 중요하지 않 다. 셋째, 다만, 삭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 이름, 이미지 등의 개인정보 주체 가 당시 미성년자이었음을 증명하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II 항 제3문단에서는 제1문단과 제2문단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의 처리가 ①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행사, ②법적의무의 준수, ③공중보건 분야에서의 공익, ④공익기록물의 보관, 과학 및 역사 연구 또는 통계적 합목적성, ⑤법정에서의 권리의 확인, 행사 또는 방어 등을 위해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정보 열람의 자유)에 관한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본권간의 충

²³⁾ 이하의 내용은 '정재도(2023).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의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의 성립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강법률 논총, 12(2), 117-150' 참조.

²⁴⁾ 한동훈(2021).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워. 44면.

돌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즉, 비록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가 '1789년 인 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1948년 세계인권선언'(Déclaration universelle des droits de l'homme), '1950년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등 수많은 인권선언에 의해서 보장되는 인권 중 하나이지만, 대중의 정보의 자유(la liberté d'information du public)를 위해서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를 제한한다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Didier Frochot, 2017; 정재도, 2023: 137에서 재인용).

2)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소위 "아동 인플루언서 법")(2020)

동 법률은 2020년 10월 19일의 법률 제1조 제4호에 의해서 노동법전 제 L.7124-1조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16세 미만 아동이 음성녹음 또는 시청각녹음 회사에 고용 내지 출연되거나(제2호), 비디오(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에 유상으로 배포(방송, diffusion)할 목적으로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청각 녹음 제작활동을 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고용 내지 출연되는 경우에는(제5호)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개별적인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제5호의 경우에 행정기관이 아동의 권리보호에 관한 정보(아동의 이미지 배포(방송)가 아동의 사생활에 가져올 결과를 포함)를 법정대리인에게 배부하게 하였다.

〈개정된 노동법전 제L.7124-1조〉

제L.7124-1조

16세 미만의 아동(enfant)은, 행정기관(autorité administrative)에 의해 인정을 받은 사전의 개별적인 허가(autorisation individuelle préalable) 없이는 어떤 자격으로든 (다음의 회사나 사용자에 의해서) 고용되거나 출연될 수 없다.

2°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상관없이 음성녹음 또는 시청각 녹음 회사에 5° 비디오(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에서 유상으로 배포(방송)할 목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을 주요 주제로 하는 시청각 녹음 제작활동을 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이 조문의 제5호에서 언급된 허가(사전의 개별적인 허가)을 받은 경우, 행정기관은 비디오(동영상) 제작의 범위 내에서 아동의 권리보호에 관한 정보를 법정대리인들(représentants légaux)에게 배부하며, 이 정보는 특히 비디오 공유 플랫폼(une plateforme de partage de vidéos)에 아동의 이미지를 배포(방송)하는 것이 아동의 사생활에 대해 가져올 결과를 포함한다. 이 정보는 또한 제 L.7124-25조에 준거하여, 그들(법정대리인들)에게 부과되는 재정적 의무도 포함한다.

참고로 노동법전 제L.7124-1조 제5호는 '2023년 6월 9일의 제2023-451호 법률' 제2조에 의해서 다시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디지털 서비스 단일시장에 관한 그리고 2000/31/CE 지침을 수정하는 2022년 10월 19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2022/2065(UE) 규칙(디지털 서비스 규칙)²⁵⁾ 제3조 i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plateforme en ligne)에 유상으로 배포(방송)할 목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시청각 녹음 제작활동을 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이 조 제5호에서 언급된 허가(사전의 개별적인 허가)을 받은 경우, 행정기관은 비디오(동영상) 제작의 범위 내에서 아동의 권리보호에 관한 정보를 법정대리인들(représentants légaux)에게 배부하며, 이 정보는 특히 제5호에서 언급된 온라인 플랫폼(plateforme en ligne)에 아동의 이미지를 배포(방송) 하는 것이 아동의 사생활에 대해 가져올 결과를 포함한다. 이 정보는 또한 제L.7124-25조에 준거하여. 그들(법정대리인들)에게 부과되는 재정적 의무도 포함한다.

종전에 노동법전 제L.7124-9조에 의하면, 아동이 받는 보수(rémunération)의 일부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맡겨질 수 있으며, 그 나머지는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예금 및 공탁기금, 프랑스 공공부문 금융기관)에 적립되며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된다.

법률 제3조는 노동법전 제L.7124-1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16세 미만 아동의 이미지 배포(방송, diffusion)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해당 콘텐츠의 누적 기간 또는 콘텐츠의 수가 데크레 (décret)²⁶⁾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해당 콘텐츠의 배포로 인한 소득이 데크

^{25) &#}x27;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s Act)으로 불리는 이 규범의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다. "Règlement (UE) 2022/2065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9 octobre 2022 relatif à un marché unique des services numériques et modifiant la directive 2000/31/CE (règlement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EUR-lex 홈페이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FR/TXT/?uri=uri serv%3AOJ.L_.2022.277.01.0001.01.FRA&toc=OJ%3AL%3A2022%3A277%3ATOC(2023. 10. 14. 인출).

레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I.).

둘째, 관할 기관이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에 대해 일정한 사항에 관한 권고를 작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3조 II.).

셋째,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의 배포(방송)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제3조 I의 제2호에 규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수익을 예금 및 공탁기금(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관할 기관이 결정한 소득의 일부는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처분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Ⅲ. 참조).

끝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이 주요 주제인 비디오(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배포 (방송)되는 시청각 프로그램에 제품 간접 광고를 하는 광고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광고주는 배포(방송)책임자가 그 방송이 본 조의 III에 명시된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신고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광고주는 제품 간접 광고의 대가로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 중에서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금 및 공탁기금'(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에 지불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7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제3조 IV.).

법률 제4조는 비디오(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업체들로 하여금 시청각 콘텐츠에 등장하는 16세 미만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내용들을 현장으로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10월 19일의 법률 제4조)

비디오(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업체들은 특히 다음의 것을 대상(목표)으로 하는 헌장(chartes)을 채택한다.

1° 그들의 서비스를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이미지의 배포(방송)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또는 명령 규정 및 그러한 이미지의 배포(방송)에 관련된 위험 특히 심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들에 게 홍보하는 것

²⁶⁾ 우리나라의 총리령 또는 대통령령 등에 해당함. 발령권자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으로 구별되며, 제정절 차에 따라 국사원의 심의를 거 친 명령(décret en Conseil d'Etat),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명령(décret en Conseil des Ministres), 수상 및 대통령이 단독으로 서명하는 단순명령(décret simple) 등이 있다.

- 2° 16세 미만 미성년자들(mineurs)에게, 그들의 사생활 및 심리적·법적 위험의 측면에 있어서 비디오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그들의 이미지를 배포(방송)하는 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권리, 존엄성 그리고 도덕적 완전성과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에 대하여, 아동보호협회와 협력하여 정보와 의식화(인식)를 장려하는 것
- 3° 16세 미만의 아동들의 존엄성과 도덕적 또는 심리적 완전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16세 미만의 아동들이 등장하는 시청각 콘텐츠에 대하여 사용자에 의한 신고를 장려하는 것
- 4° 방문판매(démarchage), 프로파일링(profilage) 그리고 행동적 타겟팅에 기반한 광고(publicité basée sur le ciblage comportemental)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시청각 콘텐츠를 사용자가 업로드할 때에 그들의 서비스를 통해서²⁷⁾ 수집되는,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유용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 것
- 5° 그러한 콘텐츠 28 의 제작 또는 배포가 (그들이 출연시키는 29) 16 세 미만 미성년자의 존엄성 또는 도 덕적 또는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탐지를, 아동보호협회와 협력하여, 개선하는 것
- 6°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의 제78-17호 법률' 제51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삭제권(droit à l'effacement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을 미성년자들이 행사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로 이 권리의 행사 방법을 미성년자들에게 알 리는 것

마지막으로 법률 제6조는 개인정보삭제권을 미성년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친 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독자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3)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인터넷 접속수단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2022)
- 이 법률을 통해서 우편 및 전자통신법전(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미성년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 및 콘텐츠의 접근을 제공하는 단말기 장비(équipements terminaux)에 일정한 장치(dispositif)를 장착하여 해당 서비스 및 콘텐츠에 미성년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²⁷⁾ 비디오(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서비스를 통해서

²⁸⁾ 시청각 콘텐츠의

²⁹⁾ 비디오(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서비스가 출연시키는

수 있게 할 것을 규정하고, 단말기 장비의 제조업자, 운영 체제의 공급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주문 이행 서비스업자, 그리고 판매자에게 부여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신설된 제L.34-9-3조의 II에는 개인정보보회위원회(CNIL)의 의견을 들은 뒤 '꽁세이데타의 심의를 거친 데크레'(décret en Conseil d'Etat)를 통해서 정해야 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 34-9-3주

- II. 개인정보보호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의 의견을 들은 뒤에 채택되는 '꽁세이데타의 심의를 거친 데크레'(décret en Conseil d'Etat)는 다음의 것을 결정한다.
- 1° I의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장치(dispositif)의 최소한의 기능성 및 기술적 특성을 포함하여, I의 적용 방법들 및 그 장치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업자를 통해서 실현되는 수단들
- 2° 제조업자 및,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체제의 공급자가 단말기 장비에 설치된 운영 체제가 동일한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장치(dispositif)를 통합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방식들
- 3° 위험(risque)이나 부적합(non-conformité)을 보이는 전술한 첫 번째 문단에 언급된 단말기 장비들의 시장 출시를 관할 기관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조건들과 관할 기관이 그 장비들의 회수 (rappel) 또는 제거(retrait)를 행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
- 4° 제조업자가 미성년자(mineures)의 온라인 공공 통신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위험들에 대해서, 아동 (enfant)의 모니터 조기 노출 및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수단들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전파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들

4) 아동의 초상권을 보장하는 법안(2023)30)

프랑스는 최근 아동의 초상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다. 프랑스에서 셰어런팅을 제한하는 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건, 자녀가 공유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는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스투더 의원은 "아이들이 13세가 되기 전 SNS에

³⁰⁾ 이하의 내용은 프랑스 국회 홈페이지, 브루노 스튜더 (Bruno Studer)의원 발의, 아동의 초상권 존중을 위한 법률 초안, 제758호,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b0758_proposition-loi(2023. 6. 30. 인출) 내용 참조.

공유되는 사진이 평균 1,300건"이라고 밝히며, 무분별하게 공유된 사진은 아이들이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며, 아이 사진이 아동 음란물에 악용되는 경우가적지 않고, 학교 내 괴롭힘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1)

제안된 법안은 자녀의 이미지를 과도하게 게시하여 소셜 미디어 팔로워를 확보하거나 돈을 벌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프랑스에선 부모가자녀 동의 없이 사진을 올렸을 때,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도록 허용하고있는데, 관련 법상 부모의 잘못이 인정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4만5,000유로(약 6,205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셰어런팅 제한법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32)

프랑스에서 2020년에 채택된 "아동 인플루언서"(Enfants influenceurs) 법은 아동 인플루언서와 아동의 초상권을 관리하는 부모들 사이에 설정되는 근로관계 (la relation de travail)에 의하여,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활동으로 인한 콘텐츠의 수익창출 때문에 가장 쉬운 아동의 초상권 행사의 보호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였고, 이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동 법안의 규정이 완전히 효과적이며, 아동의 초상권 행사에서 부모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은 어린이들이 매일 게시하는 콘텐츠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아동 단체 및 법적 주체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모든 아동의 초상권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희망하였다.

프랑스에서 동법은 제재적인 수단보다는 교육적인 법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의 초상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단계적 접근은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고,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은 아동과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출발점으로 한다. 공공 단체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부모 대신처벌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동 법은 아동의 초상권에 관한 민법의 특별한 조항을 수정하여 부모의 공동 초상권

³¹⁾ Euronews(2023. 3. 10일자 기사). 'Sharenting': Why is France trying to stop parents from oversh aring their children's images online?, https://www.euronews.com/next/2023/03/10/sharenti ng-why-is-france-trying-to-stop-parents-from-oversharing-their-childrens-images-on(202 3. 6. 14. 인출).

³²⁾ 한국일보(2023. 3. 6일자 기사). "자녀 사진 올리는 데 판사도 개입? ... 프랑스는 '셰어런팅 금지법' 논의 중",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611260001624(2023. 6. 14. 인출).

행사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초상권 행사에서의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1조는 친권의 정의에 사생활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미성년 자녀(enfant mineur)의 초상권 행사는 양쪽 부모에 의해서 공동으로 행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초상권 행사에 있어 부모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제4조는 아동의 초상권 행사에 있어서 부모의 이익이 아동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친권을 강제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법안은 부모의 권한 정의에 개인 정보(프라이버시)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초상권 행사가 부모 양측에 의해 공동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명시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초상권 행사에서 부모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며, 부모의 이익이 아동의 초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아동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부모의 권하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이상 현행법과 해외법제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연령범위 확대의 필요성이다. 미국의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하나 캘리포니아주법은 18세 미만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EU의 GDPR은 COPPA보다 넓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국가별/연령대별로 차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영국 ICO의 연령적합설계규약 역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16세 미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의 14세 미만보다 보호 범위가 넓다.

둘째, 잊힐 권리의 제도화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은 정보주체에게 본인에 관한 정보의 삭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은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서비스,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에 게시된 콘텐츠 또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U의 GDPR 역시 삭제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미성년자의 디지털상의 잊혀질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구권을

통해 권리실현은 가능하나, 본인이 올린 정보에 한정되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하여 처리되는 정보로 적용대상이 좁아서 셰어런팅을 포함하여 제3자에 의해 개인정보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따라서 만약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게 된다면 1)해당 게시물을 보유한자의 의무(삭제 등), 게시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의무(검색제한 등), 최초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의 의무(유통과정 제한 등) 등 행위별 의무의 내용과 2)잊힐권리를 보장할 연령(19세, 19세+@, 제한없음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연령별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다. 영국의 경우 연령적합설계규약을 통해 영국 ICO에서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 사회 서비스의 연령에 적합한 설계표준에 대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침이 포함된 시행 세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성화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역량강화와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셰어런팅 규제 제도 도입여부이다. 프랑스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2020), 아동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법안(2023) 등을 통해 자녀의 사진/영상 등을 부모(보호자)가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TV프로 그램을 비롯하여 연예인의 어린 자녀 노출이 많은 편이고, 아동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감수성도 낮은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분이라도 셰어런팅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W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

- 01 이동의 온라인 환경 이용 실태
- 02 부모의 셰어런팅 경험
- 03 자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인식 및 경험
- 04 소결

Ⅳ.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

본 장에서는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를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 결과를 통해 살펴본다. 아동과 부모의 온라인 환경 이용 실태와 셰어런팅 경험,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한다.

1. 아동의 온라인 환경 이용 실태

가. 아동의 인터넷 이용 현황

아동들이 어떠한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들의 인터넷 이용 시 주요 활용 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응답자의 76.6%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이 컴퓨터 이용 14.2%, 태블릿 이용이 9.2%로 나타났다.

〈표 Ⅳ-1-1〉 인터넷 이용 시 주요 활용 기기

단위: %(명)

구분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기타	인터넷 사용하지 않음	계(수)
 전체	76.6	14.2	9.2	0.0	0.0	100.0(26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한편, 주요 활용 기기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본인 소유인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89.7%가 본인 소유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기기 본인 소유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나 대도시나 읍면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스마트기기 소유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스마트폰/태블릿 PC 본인 소유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89.7	10.3	100.0(261)
거주 지역			
대도시	98.1	1.9	100.0(107)
중소도시	80.3	19.7	100.0(117)
읍면	94.6	5.4	100.0(37)
$x^2(df)$	20.20	3(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나아가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부모님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았는데, 부모님 통제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아동은 전체 응답자의 65.4%였다.

〈표 IV-1-3〉 부모님 통제 없이 스마트폰/태블릿 PC 사용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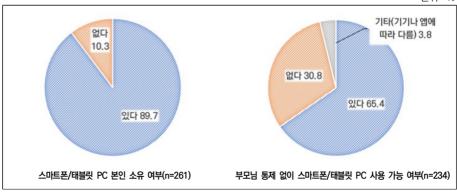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기타 (기기나 앱에 따라 다름)	계(수)
전체	65.4	30.8	3.8	100.0(234)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1-1] 스마트폰/태블릿 소유 여부 및 부모님 통제 없이 사용 가능 여부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다음은 자녀의 스마트폰을 사주게 된 시기를 알아보았다. 응답한 부모 중 40.6% 가 초등학교 1,2학년에 스마트폰을 구입해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입 시기는 부모의 연령, 막내 자녀 연령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부모

^{***} *p* ⟨ .001.

의 연령이 적을수록 이른 시기에 구입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막내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맞벌이일수록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표 Ⅳ-1-4〉 자녀의 개인 스마트폰 구입 시기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계(수)
	입학 전	1,2학년	3,4학년	5,6학년	1학년	.,,,
전체	27.9	40.6	21.5	8.7	1.4	100.0(657)
연령						
20대	66.7	33.3	_	_	_	100.0(12)
30대	56.0	34.0	8.7	-	1.3	100.0(150)
40대 이상	18.4	42.8	25.9	11.5	1.4	100.0(495)
$x^2(df)$			104.762(8)***	+		
막내 자녀연령						
0-3세 미만	100.0	-	-	-	_	100.0(40)
3-6세 미만	99.0	1.0	-	-	-	100.0(97)
6-10세 미만	11.8	71.5	16.7	-	_	100.0(228)
10-14세 미만	6.8	35.3	35.3	19.5	3.1	100.0(292)
$x^2(df)$		5	67.580(12)**	*		
맞벌이 여부						
맞벌이	31.3	38.7	20.4	8.1	1.5	100.0(470)
외벌이	17.3	44.9	25.0	11.5	1.3	100.0(156)
둘 다 무직	50.0	18.8	25.0	6.3	_	100.0(16)
해당없음	6.7	80.0	13.3	-	_	100.0(15)
$x^2(df)$			27.412(12)**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한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의 가족(부모님)과 공유 여부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의 54.7%가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유하지 않았다고응답한 경우가 34.6%였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을때, 읍면이나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해당 앱을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한 경우가 높았다.

〈표 IV-1-5〉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앱을 통해 가족(부모님)과 공유하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였음	공유하지 않음	모르겠다	계(수)
전체	54.7	34.6	10.7	100.0(234)
거주 지역				

^{**} $p \langle .01, *** p \langle .001.$

구분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였음	공유하지 않음	모르겠다	계(수)
대도시	71.4	22.9	5.7	100.0(105)
중소도시	43.6	43.6	12.8	100.0(94)
읍면	34.3	45.7	20.0	100.0(35)
x^2 (df)		23.441(4)***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앱을 설치한 시기를 살펴본 결과, 7세 때 처음 설치하는 경우가 33.6%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10세에 이르러 설치를 종료하는 경우가 35.2%로 나타났다. 해당 앱의 설치와 종료는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여 먼저 학년 이 낮을수록 해당 앱의 설치 및 종료 시기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앱의 종료에 있어서는 거주지역이 읍면,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설치 종료시기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6〉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앱 설치 시기

단위: %(명), 세

		섵	설치 시	시작시	기				1	설치 종	료시기	1		
구분	6세 이하	7세	8세	9세	10세 이상	평균	계(수)	8세 이하	9세	10세	11세	12세	평균	계(수)
전체	12.5	33.6	26.6	25.0	2.3	7.6	100.0(128)	7.0	7.0	35.2	31.3	19.5	10.4	100.0(128)
학년														
초등학교 4학년	21.4	40.5	23.8	14.3	0.0	7.1	100.0(42)	14.3	7.1	76.2	2.4	0.0	9.6	100.0(42)
초등학교 5학년	16.3	25.6	37.2	20.9	0.0	7.5	100.0(43)	4.7	4.7	16.3	74.4	0.0	10.6	100.0(43)
초등학교 6학년	0.0	34.9	18.6	39.5	7.0	8.2	100.0(43)	2.3	9.3	14.0	16.3	58.1	11.2	100.0(43)
$x^2(df)/F$		24.	.738(8)**		9.335			124	1.826(8)***		25.571 ***	
거주 지역														
대도시	12.0	26.7	32.0	26.7	2.7	7.7	100.0(75)	1.3	9.3	32.0	32.0	25.3	10.7	100.0(75)
중소도시	9.8	43.9	22.0	22.0	2.4	7.6	100.0(41)	14.6	2.4	36.6	34.1	12.2	10.2	100.0(41)
읍면	25.0	41.7	8.3	25.0	0.0	7.0	100.0(12)	16.7	8.3	50.0	16.7	8.3	9.6	100.0(12)
$x^2(df)/F$		7.	.579(8)		1.708			1!	5.364((8)		5.680 **	

주1: 설치 시작/종료시기는 모두 만 연령 기준임.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 시 자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게임이 67.0%로 가장 높았으며 동영상 시청이 61.3%, SNS가 36.0%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교육, 음악 감상, 정보 검색, 블로그 및 카페 순으로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1, ^{***} *p* ⟨ .001.

〈표 Ⅳ-1-7〉 인터넷 이용 시 자주 이용하는 것: 1+2순위

단위: %(명)

구분	동영상 시청	게임	음악 감상	블로그, 카페	SNS	교육	쇼핑	정보 검색	기타	(수)
전체	61.3	67.0	7.3	1.5	36.0	19.5	0.0	6.1	0.0	(26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이 인터넷 이용 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유튜브 70.9%, 키카오 톡(메신저) 64.4%, 게임(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5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틱톡(26.8%), 인터넷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26.1%), 유튜브 쇼츠(8.4%) 등의 순으로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IV-1-8〉 인터넷 이용 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앱: 1+2+3순위

단위: %(명)

구분	1	2	4	6	7	9	11)	12	13	14)	15	16	17)	18	(수)
전체	8.0	2.7	1.1	64.4	0.4	26.8	70.9	8.4	1.5	50.6	1.9	1.5	3.8	26.1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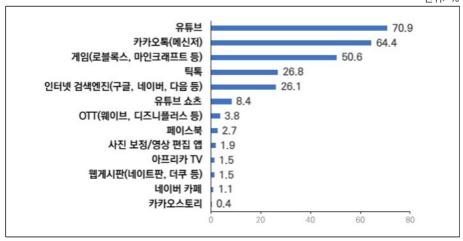
주1: ①인스타그램, ②페이스북, ③네이버 밴드, ④네이버 카페, ⑤네이버 블로그, ⑥카카오톡(메신저), ⑦카카오스토리, ⑧트위터, ⑨틱톡, ⑩다음카페, ⑪유튜브, ⑫유튜브 쇼츠, ⑬아프리카 TV, ⑭게임(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등), ⑯사진 보정/영상 편집 앱, ⑯웹게시판(네이트판, 더쿠, 뽐뿌, 디시인사이드 등), ⑰OTT(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 왓챠 등), ⑱인터넷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 ⑲기타

주2: 응답 나오지 않은 보기의 경우 표에서 셀 삭제함.

주3: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1-2] 인터넷 이용 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앱: 1+2+3순위

단위: %



주1: 응답 나오지 않은 보기의 경우 그래프에서 항목 삭제함.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나. 아동의 SNS 사용 현황

이번에는 아동의 SNS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SNS에 게시물 작성 및 게시한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전체 아동의 65.9%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24.3%의 아동만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SNS 게시물 작성 경험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SNS에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더 높았다.

〈표 IV-1-9〉 SNS에 게시물 작성/게시 경험 유무

단위: %(명)

구분	작성/게시함	작성/게시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메신저만 사용)	계(수)
전체	24.3	65.9	9.8	100.0(255)
성별				
여자	32.3	59.2	8.5	100.0(130)
남자	16.0	72.8	11.2	100.0(125)
x^2 (df)		9.239(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이 SNS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77.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38.4%), 정보나 지식을 검색하며(20.0%), 타인이 올린 콘텐츠를 살펴보는(18.8%) 등의 이유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10〉 SNS 이용하는 주된 이유 2가지(중복응답)

단위: %(명)

1	2	3	4	(5)	6	7	8	9	10	(수)
77.6	15.7	2.7	18.8	3.9	12.5	20.0	38.4	0.4	0.0	(255)
0.08	14.6	3.1	17.7	4.6	12.3	17.7	40.0	8.0	0.0	(130)
75.2	16.8	2.4	20.0	3.2	12.8	22.4	36.8	0.0	0.0	(125)
75.3	16.0	2.5	14.8	2.5	13.6	23.5	39.5	0.0	0.0	(81)
70.9	17.4	2.3	22.1	5.8	11.6	20.9	37.2	1.2	0.0	(86)
86.4	13.6	3.4	19.3	3.4	12.5	15.9	38.6	0.0	0.0	(88)
91.6	20.6	0.9	13.1	1.9	5.6	20.6	39.3	0.0	0.0	(107)
63.1	11.7	5.4	24.3	3.6	17.1	23.4	37.8	0.9	0.0	(111)
81.1	13.5	0.0	18.9	10.8	18.9	8.1	37.8	0.0	0.0	(37)
	77.6 80.0 75.2 75.3 70.9 86.4 91.6 63.1	77.6 15.7 80.0 14.6 75.2 16.8 75.3 16.0 70.9 17.4 86.4 13.6 91.6 20.6 63.1 11.7	77.6 15.7 2.7 80.0 14.6 3.1 75.2 16.8 2.4 75.3 16.0 2.5 70.9 17.4 2.3 86.4 13.6 3.4 91.6 20.6 0.9 63.1 11.7 5.4	77.6 15.7 2.7 18.8 80.0 14.6 3.1 17.7 75.2 16.8 2.4 20.0 75.3 16.0 2.5 14.8 70.9 17.4 2.3 22.1 86.4 13.6 3.4 19.3 91.6 20.6 0.9 13.1 63.1 11.7 5.4 24.3	77.6 15.7 2.7 18.8 3.9 80.0 14.6 3.1 17.7 4.6 75.2 16.8 2.4 20.0 3.2 75.3 16.0 2.5 14.8 2.5 70.9 17.4 2.3 22.1 5.8 86.4 13.6 3.4 19.3 3.4 91.6 20.6 0.9 13.1 1.9 63.1 11.7 5.4 24.3 3.6	77.6 15.7 2.7 18.8 3.9 12.5 80.0 14.6 3.1 17.7 4.6 12.3 75.2 16.8 2.4 20.0 3.2 12.8 75.3 16.0 2.5 14.8 2.5 13.6 70.9 17.4 2.3 22.1 5.8 11.6 86.4 13.6 3.4 19.3 3.4 12.5 91.6 20.6 0.9 13.1 1.9 5.6 63.1 11.7 5.4 24.3 3.6 17.1	77.6 15.7 2.7 18.8 3.9 12.5 20.0 80.0 14.6 3.1 17.7 4.6 12.3 17.7 75.2 16.8 2.4 20.0 3.2 12.8 22.4 75.3 16.0 2.5 14.8 2.5 13.6 23.5 70.9 17.4 2.3 22.1 5.8 11.6 20.9 86.4 13.6 3.4 19.3 3.4 12.5 15.9 91.6 20.6 0.9 13.1 1.9 5.6 20.6 63.1 11.7 5.4 24.3 3.6 17.1 23.4	77.6 15.7 2.7 18.8 3.9 12.5 20.0 38.4 80.0 14.6 3.1 17.7 4.6 12.3 17.7 40.0 75.2 16.8 2.4 20.0 3.2 12.8 22.4 36.8 75.3 16.0 2.5 14.8 2.5 13.6 23.5 39.5 70.9 17.4 2.3 22.1 5.8 11.6 20.9 37.2 86.4 13.6 3.4 19.3 3.4 12.5 15.9 38.6 91.6 20.6 0.9 13.1 1.9 5.6 20.6 39.3 63.1 11.7 5.4 24.3 3.6 17.1 23.4 37.8	77.6 15.7 2.7 18.8 3.9 12.5 20.0 38.4 0.4 80.0 14.6 3.1 17.7 4.6 12.3 17.7 40.0 0.8 75.2 16.8 2.4 20.0 3.2 12.8 22.4 36.8 0.0 75.3 16.0 2.5 14.8 2.5 13.6 23.5 39.5 0.0 70.9 17.4 2.3 22.1 5.8 11.6 20.9 37.2 1.2 86.4 13.6 3.4 19.3 3.4 12.5 15.9 38.6 0.0 91.6 20.6 0.9 13.1 1.9 5.6 20.6 39.3 0.0 63.1 11.7 5.4 24.3 3.6 17.1 23.4 37.8 0.9	77.6 15.7 2.7 18.8 3.9 12.5 20.0 38.4 0.4 0.0 80.0 14.6 3.1 17.7 4.6 12.3 17.7 40.0 0.8 0.0 75.2 16.8 2.4 20.0 3.2 12.8 22.4 36.8 0.0 0.0 75.3 16.0 2.5 14.8 2.5 13.6 23.5 39.5 0.0 0.0 70.9 17.4 2.3 22.1 5.8 11.6 20.9 37.2 1.2 0.0 86.4 13.6 3.4 19.3 3.4 12.5 15.9 38.6 0.0 0.0 91.6 20.6 0.9 13.1 1.9 5.6 20.6 39.3 0.0 0.0 63.1 11.7 5.4 24.3 3.6 17.1 23.4 37.8 0.9 0.0

주1: ①친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②부모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③선생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④타인이 올린 콘텐츠를

^{**} *p* ⟨ .01.

살펴보기 위해서, ⑤일상생활을 기록하기 위해서, ⑥취미 등 개인적 관심사, 정보나 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⑦정보나 지식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 ⑧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⑨팔로워수, 구독자 및 조회수 등을 올리 기 위해, ⑩기타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V-1-3] SNS 이용하는 주된 이유 2가지(중복응답)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의 SNS 게시물의 내용은 주로 자신의 일상생활에 관하여 올리는 경우가 54.8%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경우가 51.6%로 나타났다. 그 밖에 친구의 사진(27.4%), 자신의 영상(22.6%), 자신의 친구에 관한 글(17.7%) 등의 순으로 SNS에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1〉 SNS에 작성하거나 올린 게시물 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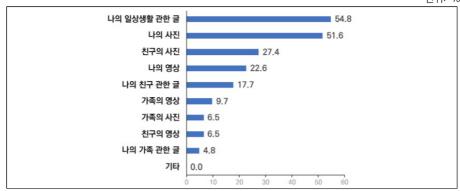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나의 일상생활 관한 글	나의 가족 관한 글	나의 친구 관한 글	LITI	가족의 사진	친구의 사진	나의 영상	가 족 의 영상	친구의 영상	기타	(수)
전체	54.8	4.8	17.7	51.6	6.5	27.4	22.6	9.7	6.5	0.0	(6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V-1-4] SNS에 작성하거나 올린 게시물 내용(중복응답)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이 SNS에 가족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25.8%에 불과하였으며,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38.7%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1-12〉 가족의 사진/영상 올릴 때 가족 동의 구하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동의를 구함			계(수)
전체	25.8	38.7	35.5	100.0(6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이 SNS에 가족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상대가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0.0%로 가장 높았다.

〈표 IV-1-13〉 가족의 사진/영상 올릴 때 가족 동의 구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상대가 싫어할 수도 있어서	같이 찍은 영상이라 상대방에게도 초상권이 있으므로	혼날까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상대가 원해서	모름/무응답	계(수)
전체	50.0	18.8	12.5	6.3	6.3	6.3	100.0(16)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반면, 아동이 SNS에 가족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기타(상대가 싫어하지 않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등)에 응답한 경우가 16.7%로 나타났으며, 모름 및 무응답 또한 16.7%로 보고되었다.

〈표 Ⅳ-1-14〉 가족의 사진/영상 올릴 때 가족 동의 구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상대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서	내 공간 이라서	안 물어봐도 될 거 같아서/암묵적 동의라고 생각해서		잘 나온 사진만 올려서	귀찮 아서	필요가 없어서	상대가 편해서	기타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8.3	8.3	8.3	8.3	8.3	8.3	8.3	8.3	16.7	16.7	100.0(24)

주1: 기타 응답에는 '상대가 싫어하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중요하다고 생각 안해서'. '혼날까봐' 등 있음.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1-5] 가족의 사진/영상 올릴 때 가족 동의 구하는 이유 및 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아동이 SNS에 친구의 사진 및 영상을 올릴 때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46.8%였으며,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19.4%로 나타났다.

〈표 Ⅳ-1-15〉 친구의 사진/영상 올릴 때 친구 동의 구하는지 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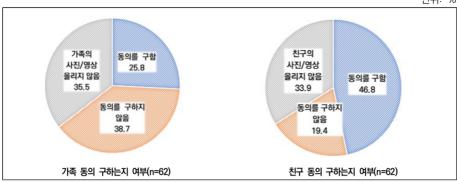
구분	동의를 구함	동의를 구하지 않음	친구의 사진/영상 올리지 않음	계(수)
전체	46.8	19.4	33.9	100.0(6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동의를 구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족의 경우와 비교하면 친구의 사진/영상을 올릴 때 동의를 구하는 비율이 20%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1-6] 가족이나 친구의 사진/영상 올릴 때 가족이나 친구 동의 구하는지 여부 및 이유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이 SNS에 친구의 사진 및 영상을 올릴 때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상대가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1.4%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거주지역이 대도시일 경우에는 같이찍은 영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1-16〉 친구의 사진/영상 올릴 때 친구 동의 구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상대가 싫어할 수도 있어서	같이 찍은 영상이라서	친구의 초상권이 있 <u>으므로</u>	이상한 사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기타	계(수)
전체	41.4	34.5	10.3	6.9	6.9	100.0(29)
성별	-	+	-		-	-
여자	40.9	31.8	9.1	9.1	9.1	100.0(22)
남자	42.9	42.9	14.3	0.0	0.0	100.0(7)
x^2 (df)			1.604(4)			
학년	-				-	-
초등학교 4학년	16.7	33.3	33.3	16.7	0.0	100.0(6)
초등학교 5학년	40.0	30.0	10.0	0.0	20.0	100.0(10)
초등학교 6학년	53.8	38.5	0.0	7.7	0.0	100.0(13)
x^2 (df)			11.242(8)			
거주 지역	-				-	-
대도시	35.3	52.9	0.0	11.8	0.0	100.0(17)
중소도시	42.9	0.0	42.9	0.0	14.3	100.0(7)
읍면	60.0	20.0	0.0	0.0	20.0	100.0(5)
x^2 (df)			18.784(8)*			

주1: 기타 응답에는 '상대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대가 편해서'가 있음.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아동이 SNS에 친구의 사진 및 영상을 올릴 때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친구와 함께 찍어서 물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3.3%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친구도 올려서(25.0%), 상대가 편해서(25.0%) 등의 이유로 친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7〉 친구의 사진/영상 올릴 때 친구 동의 구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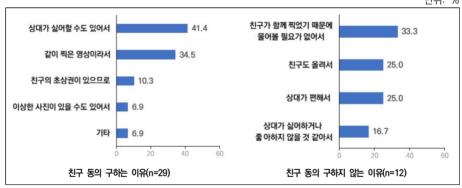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친구가 함께 찍었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서	친구도 올려서	상대가 편해서	상대가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수)
전체	33.3	25.0	25.0	16.7	100.0(1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1-7] 친구의 사진/영상 올릴 때 친구 동의 구하는 이유 및 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이 SNS에 올린 게시물의 공개 범위를 살펴보았을 때, 자신이 공개하기로 선택한 사람(팔로워, 친구 등)만 볼 수 있는 경우가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누구나 볼 수 있는 경우가 46.8%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V-1-18〉 SNS에 작성하거나 올린 게시물 공개 범위 여부

단위: %(명)

구분	누구나 볼 수 있음	내가 공개하기로 선택한 사람(팔로워, 친구 등)만 볼 수 있음	아무나 볼 수 없고 나만 볼 수 있음	기타	계(수)
전체	46.8	51.6	1.6	0.0	100.0(6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이 SNS를 사용할 때 이용하는 계정의 소유 주체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 자의 59.6%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는 32.2%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보였는데, 대도시나 읍면에 거주할수록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중소도시의 경우는 부모님의 계정을 이용하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9) SNS 사용 시 이용하는 계정 소유 주체

단위: %(명)

구분	부모님 계정	나의 계정	다른 사람 계정	잘 모르겠음	계정이 없어도 됨	계(수)
전체	32.2	59.6	0.0	8.2	0.0	100.0(255)
거주 지역						
대도시	17.8	81.3	0.0	0.9	0.0	100.0(107)
중소도시	50.5	35.1	0.0	14.4	0.0	100.0(111)
읍면	18.9	70.3	0.0	10.8	0.0	100.0(37)
$x^2(df)$			53.149(4)***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신의 계정으로 SNS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계정을 만든 방법을 조사하였을 때, 부모님이 동의해 준 경우가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정을 스스로 만든 경우는 16.4%였으며, 부모님의 계정과 연동한 경우는 10.5%로 보고되었다. 다만, 응답자의 경우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계정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부모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부모 몰래 만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1-20〉 SNS 계정 만든 방법

단위: %(명)

구분	계정 만들 때 부모님이 동의해 줌	계정을 부모님의 계정과 연동하여 만들었음	스스로 계정을 만듦	잘 모르겠음	기타	계(수)
전체	71.7	10.5	16.4	1.3	0.0	100.0(15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2. 부모의 셰어런팅 경험

가. 아동이 인지하는 부모의 셰어런팅 현황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에 의한 셰어런팅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님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SNS에 업로드하지 않는 경우가 55.9%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31.4%만이 부모님에 의해 자신의 정보가 SNS에 업로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12.6%나 되었는데, 이는 자녀가 부모님이 자신의 정보를 SNS에 올리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안된다는 것으로,이와 관련된 대화 및 동의 과정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V-2-1〉 부모님이 현재 나에 관한 정보 SNS 업로드하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네	아니오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31.4	55.9	12.6	100.0(261)
거주 지역				
대도시	29.0	60.7	10.3	100.0(107)
중소도시	24.8	57.3	17.9	100.0(117)
읍면	59.5	37.8	2.7	100.0(37)
$x^2(df)$		19.717(4)***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이 과거에 부모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SNS에 업로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4.1%,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는 54.7%로 나타났다.

〈표 IV-2-2〉 부모님이 과거 나에 관한 정보 SNS 업로드했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34.1	54.7	11.2	100.0(179)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 자신의 사진 및 영상이 부모의 SNS에 올라간 것을 알았을 때의 기분을 조사한 결과,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은 경우가 60.1%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기분이 좋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7.3%, 기분이 싫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1.9%로 나타났다.

^{***} *p* ⟨ .001.

〈표 IV-2-3〉 부모님 SNS 계정에 내 사진/영상이 올라간 것 알았을 때 내 기분

구분	좋았다	싫었다	기타	아무 생각 들지 않았다	계(수)
전체	27.3	11.9	0.7	60.1	100.0(14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 자신의 사진 및 영상이 부모의 SNS에 올라간 것을 알았을 때 기뻤던 이유에 대한 응답은 잘 나온 사진을 올려서(35.9%), 나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서/나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25.6%), 가족이라서(10.3%), 재미있어서(10.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4〉 부모님 SNS 계정에 내 사진/영상이 올라간 것 알았을 때 기뻤던 이유

단위: %(명)

구분	11.	나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나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족 이라서	재미 있어서	가족 사진 이라서	내 사진이 올라가서	기타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35.9	25.6	10.3	10.3	5.1	5.1	5.1	2.6	100.0(39)

주1: 기타 응답으로 '상관없어서', '성장과정을 알 수 있어서'가 있음.

아동 자신의 사진 및 영상이 부모의 SNS에 올라간 것을 알았을 때 싫었던 이유에 대한 나도 모르게/동의 없이 올려서(29.4%), 내 얼굴이 보이는 게 싫어서 (23.5%), 사생활이라서(11.8%), 창피해서(11.8%), 선호하지 않아서(11.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5〉 부모님 SNS 계정에 내 사진/영상이 올라간 것 알았을 때 싫었던 이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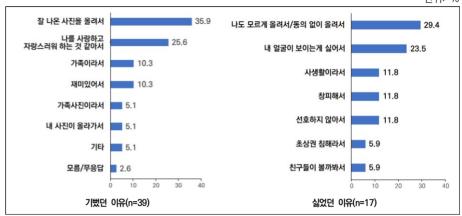
구분	나도 모르게 올려서/동의 없이 올려서	사생활 이라서	내 얼굴이 보이는게 싫어서	초상권 침해라서	친구들이 볼까봐서	창피해서	선호하지 않아서	계(수)
전체	29.4	11.8	23.5	5.9	5.9	11.8	11.8	100.0(17)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V-2-1] 부모님 SNS 계정에 내 사진/영상이 올라간 것 알았을 때 기뻤거나 싫었던 이유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이와 관련하여, FGI에 참여한 아동들은 모두 부모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인식 때문으로 여겨진다. 아동 참여자는 부모가 자신의 정보를 온라인상에 노출하는 것도 용인하였다. "부모님이니까 개인정보를 심하게 노출할 것 같지 않아서 (아동 7)"라든가 "나의 예쁜 사진만 올려서(아동 14)"와 같은 응답이 이를 반영한다.

나. 부모의 셰어런팅 현황

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 SNS에 자녀에 관한 정보를 업로드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3.7%가 현재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부모의 성별과 연령, 막내 자녀연령, 가구소득 및 SNS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20대와 40대보다는 30대가, 막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구의 소득이 500~700만원에 해당할 때, SNS를 현재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자녀에 관한 정보를 현시점에도 올리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IV-2-6〉 SNS에 자녀에 관한 정보 업로드 경험

단위: %(명)

구분	과거에는 그랬음	현재 올리고 있음	전혀 올리지 않음	계(수)
전체	32.9	43.7	23.4	100.0(1,238)
성별				

구분	과거에는 그랬음	현재 올리고 있음	전혀 올리지 않음	계(수)
여자	33.3	48.0	18.7	100.0(562)
남자	32.5	40.1	27.4	100.0(676)
x^2 (df)		14.370(2)**		
연령				
20대	37.5	47.9	14.6	100.0(48)
30대	26.4	54.9	18.7	100.0(455)
40대 이상	36.6	36.5	26.9	100.0(735)
$x^2(df)$		41.280(4)***		
막내 자녀연령				
0-3세 미만	21.2	55.9	22.9	100.0(297)
3-6세 미만	29.0	49.5	21.5	100.0(317)
6-10세 미만	35.2	41.3	23.5	100.0(310)
10-14세 미만	45.5	28.7	25.8	100.0(314)
$x^2(df)$		60.080(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3.3	29.0	37.7	100.0(69)
300~500만원	35.8	45.3	19.0	100.0(369)
500~700만원	30.3	45.7	24.0	100.0(416)
700만원 이상	32.9	43.0	24.1	100.0(377)
모름/무응답	28.6	28.6	42.9	100.0(7)
x^2 (df)		15.120(6)*		
SNS 이용 여부				
이용	32.7	44.3	23.0	100.0(1,220)
미이용	44.4	_	55.6	100.0(18)
x^2 (df)		16.775(2)***		

주1: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주2: '가구 소득'의 차이검정 결과는 '모름/무응답' 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FGI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동의 정보를 노출한 수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셰어런팅 경험이 있었다. 셰어런팅은 부모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대표 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아동을 촬영하여 아동의 동의 없이 유튜브 콘텐츠로 공개 하거나 SNS, 블로그와 같은 소셜미디어에 아동의 정보를 노출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셰어런팅을 했던 부모도 자신이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부모는 아동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거나 실명 공개를 하지 않아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아니라는 자의적 판단을 하기도 했다. 아동의 사진에 해시태그를 붙여 더 많은 타인이 아동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도록 유도하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는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를 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예외로 가주하는 태도는 비판적 담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 *p* ⟨ .05, ** *p* ⟨ .01, *** *p* ⟨ .001.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웃기게 나온 사진을 올려 달라고 하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 저는 아이들 사진을 올릴 때 뒷모습이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진을 올려요. (부모 5)

아기가 태어난 연도나 개월 수, 그날 있었던 특정한 곳이나 특정 단어를 포함해서 쓰고요. 그래도 다른 분들이 볼 수 있으니, 아이의 실명은 쓰지 않고 태명으로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 13)

부모가 SNS에 자녀에 관한 정보를 과거에는 업로드했지만 현재 중단한 가장 큰이유는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자녀의 안전이 걱정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자녀가 많이 성장해서(18.4%), 흥미를 잃어서(17.4%) 등의 이유가 높게 보고되었다.

〈표 IV-2-7〉 SNS에 자녀에 관한 정보 업로드 했다가 현재는 중단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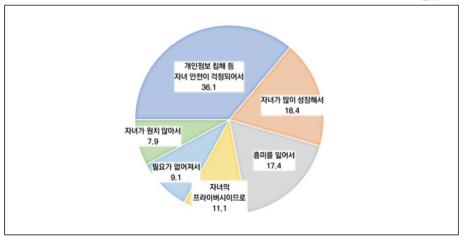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자녀가 : 원치 않아서	자녀가 많0 성장해서			개인정보 침해 등 자녀 안전이 걱정되어서	자녀의 프라이버시 이므로	계(수)
전체	7.9	18.4	9.1	17.4	36.1	11.1	100.0(407)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V-2-2] SNS에 자녀에 관한 정보 업로드 했다가 현재는 중단한 이유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모가 SNS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을 처음 올린 시기를 살펴보았을 때, 신생아부터 돌 이전에 해당하는 시기가 49.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성별, 연령, 막내 자녀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막내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SNS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을 신생아부터 돌 이전에 해당하는 시기에 처음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SNS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 처음 올린 시기

단위: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수)
전체	49.2	12.3	7.3	5.5	3.5	13.0	1.8	1.6	2.8	0.7	1.1	0.7	0.5	100.0(948)
성별														
여자	56.0	10.1	7.2	4.8	2.6	9.8	1.1	2.0	3.1	0.7	1.3	0.4	0.9	100.0(457)
남자	42.8	14.5	7.3	6.1	4.3	15.9	2.4	1.2	2.6	0.8	8.0	1.0	0.2	100.0(491)
$x^2(df)$						28.	517(1	2)**						
연령														
20대	73.2	14.6	4.9	2.4	2.4	2.4	-	-	_	-	-	_	-	100.0(41)
30대	57.0	15.4	8.1	5.1	2.7	7.6	1.1	1.1	8.0	0.5	0.3	-	0.3	100.0(370)
40대 이상	41.9	10.1	6.9	6.0	4.1	17.5	2.4	2.0	4.5	0.9	1.7	1.3	0.7	100.0(537)
$x^2(df)$						72.2	258(2	4)***						
막내 자녀연령														
0-3세 미만	74.2	17.0	8.7	-	_	_	-	-	_	-	-	_	-	100.0(229)
3-6세 미만	47.0	10.4	12.0	10.8	6.0	13.7	-	-	_	-	-	_	-	100.0(249)
6-10세 미만	43.5	12.7	5.5	6.8	2.5	16.5	4.2	3.8	4.6	-	-	_	-	100.0(237)
10-14세 미만	32.6	9.4	2.6	3.9	5.2	21.5	3.0	2.6	6.9	3.0	4.3	3.0	2.1	100.0(233)
x^2 (df)	307.599(36)***													

주1: ①신생아~돌 이전, ②만 1세, ③만 2세, ④만 3세, ⑤만 4세, ⑥만 5세~초등학교 입학전, ⑦초등학교 1학년, ⑧초등학교 2학년, ⑨초등학교 3학년, ⑩초등학교 4학년, ⑪초등학교 5학년, ⑫초등학교 6학년, ⑬중학교 1학년 주2: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모가 SNS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 업로드를 중단한 시기는 5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막내 자녀 연령 이 어릴수록 게시물 업로드 중단 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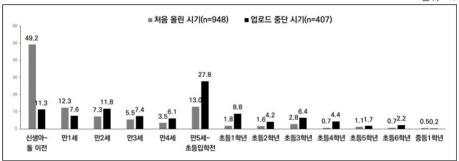
〈표 IV-2-9〉 (게시물 업로드 중단한 경우) SNS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 업로드 중단 시기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수)
전체	11.3	7.6	11.8	7.4	6.1	27.8	8.8	4.2	6.4	4.4	1.7	2.2	0.2	100.0(407)
연령														
20대	22.2	16.7	38.9	11.1	5.6	5.6	-	-	-	-	_	-	-	100.0(18)
30대	20.8	13.3	15.8	7.5	8.3	25.0	5.8	8.0	0.8	1.7	_	-	-	100.0(120)
40대 이상	6.3	4.5	8.2	7.1	5.2	30.5	10.8	5.9	9.3	5.9	2.6	3.3	0.4	100.0(269)
$x^2(df)$						83.2	296(2	4)***						
막내 자녀연령														
0-3세 미만	38.1	28.6	33.3	-	_	-	_	-	-	-	_	-	-	100.0(63)
3-6세 미만	15.2	10.9	23.9	15.2	16.3	18.5	-	-	-	-	-	-	-	100.0(92)
6-10세 미만	4.6	0.9	3.7	11.9	7.3	45.0	17.4	4.6	4.6	-	-	-	-	100.0(109)
10-14세 미만	2.1	1.4	0.7	2.1	1.4	32.9	11.9	8.4	14.7	12.6	4.9	6.3	0.7	100.0(143)
$x^2(df)$						371.	158(3	36)***						

주1: ①신생아~돌 이전, ②만 1세, ③만 2세, ④만 3세, ⑤만 4세, ⑥ 만5세~초등학교 입학전, ⑦초등학교 1학년, ⑧초등학교 2학년, ⑨초등학교 3학년, ⑩초등학교 4학년, ⑪초등학교 5학년, ⑫초등학교 6학년, ⑬중학교 1학년 주2: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ρ < .001.

[그림 IV-2-3] SNS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 처음 올린 시기 및 업로드 중단 시기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다. 자녀 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자녀의 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과거나 현재에 아동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릴 때 동의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3%에 불과하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동의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8.2%로 보고되었다.

〈표 IV-2-10〉 부모님이 과거/현재 본인 사진/영상을 SNS 올릴 때 동의 받았는지 여부

구분	네	아니오	과거에는 동의받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동의받고 있음	계(수)
전체	6.3	75.5	18.2	100.0(143)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부모가 자녀에 관한 게시물을 올릴 때 자녀의 동의를 받는다고 응답한 부모는 33.7%였으며,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41.2%로 나타 났다. 과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동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25.1%로 보고되었다. 해당 결과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42.2%), 중소도시(25.0%), 읍면(16.7%) 순으로 자녀에 관한 게시물을 올릴 때 자녀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1〉 자녀에 관한 게시물 업로드 시 자녀 동의 받는지 여부

단위: %(명)

				211 11(0)
구분	예	아니오	과거에는 동의받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동의받고 있음	계(수)
전체	33.7	41.2	25.1	100.0(335)
거주 지역				
대도시	42.2	34.1	23.8	100.0(185)
중소도시	25.0	45.8	29.2	100.0(120)
읍면	16.7	66.7	16.7	100.0(30)
$x^2(df)$		1	8.612(4)**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 혹은 영상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경우는 12.6%로 나타났으며, 이때 부모가 해당 의견을 반영한 경우는 83.3%로 보고되었다.

〈표 IV-2-12〉 부모님이 SNS에 올린 본인 사진/영상 삭제 요청 여부

단위: %(명)

78	삭제 요	2청 여부	계(수)	모 의견 반영 여부	계(수)	
구분	네	아니오	게(구)	네	아니오	게(구)
전체	12.6	87.4	100.0(143)	83.3	16.7	100.0(18)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라. 자녀 정보 공개 범위 및 내용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정보 공개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SNS에 업로드 한 자녀 관련 게시물의 공개 범위를 알아보았는데, 자신이 공개하기로 선택한 사람(팔로워, 친구)만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6.6%로 가장 높았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경우가 40.5%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V-2-13〉 SNS에 업로드한 자녀 관련 게시물 공개 범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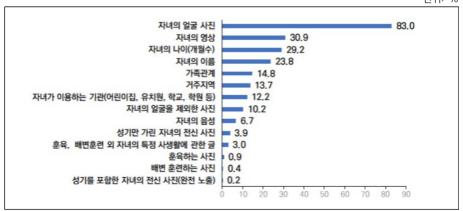
구분	누구나 볼 수 있음	내가 공개하기로 선택한 사람(팔로워, 친구)만 볼 수 있음	없고 나만 볼	기타	계(수)
전체	40.5	56.6	2.2	0.7	100.0(541)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녀 관련 게시물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을 때, 자녀의 얼굴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83.0%로 가장 높았다. 그 밖에도 자녀의 영상(30.9%), 자녀의 나이(29.2%), 자녀의 이름(23.8%) 등을 게시물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IV-2-4] 자녀 관련 게시물 작성 시 해당 내용(중복응답)(n=541)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녀가 부모의 SNS에 자녀 본인의 게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는 74.4%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부모와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의 SNS에 자녀 본인의 게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가 높았다.

〈표 IV-2-14〉 자녀가 부모 SNS에 자녀 본인 게시물 업로드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계(수)
전체	74.4	25.6	100.0(450)
 연령			
20대	41.7	58.3	100.0(12)
30대	65.0	35.0	100.0(183)
40대 이상	82.7	17.3	100.0(255)
$x^2(df)$	24.54		
막내 자녀연령			
0-3세 미만	50.7	49.3	100.0(75)
3-6세 미만	63.1	36.9	100.0(157)
6-10세 미만	86.7	13.3	100.0(128)
10-14세 미만	96.7	3.3	100.0(90)
$x^2(dt)$	66.48	37(3)***	

주1: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주2: 본 문항은 자녀가 '영아(24개월 미만)'인 경우는 질문하지 않음

*** p ⟨ .001.

부모가 자신의 SNS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을 업로드 하는 주기는 한 달에 1~2회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 1회(23.7%), 6개월에 1~2회(15.5%), 주 3회(10.9%) 등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 및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SNS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을 업로드 하는 주기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5〉 SNS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 업로드 주기

단위: %(명)

구분	1일 1회 이상	주 3회	주 1회	한달에 1~2회	6개월에 1~2회	1년에 1~2회	계(수)
전체	3.7	10.9	23.7	40.5	15.5	5.7	100.0(541)
연령							
20대	13.0	26.1	30.4	21.7	8.7	-	100.0(23)
30대	4.0	12.8	27.6	38.8	12.8	4.0	100.0(250)
40대 이상	2.6	7.8	19.4	43.7	18.7	7.8	100.0(268)
x^2 (df)			29.60	3(10)**			
막내 자녀연령							
0-3세 미만	5.4	17.5	27.1	39.2	9.6	1.2	100.0(166)

구분	1일 1회 이상	주 3회	주 1회	한달에 1~2회	6개월에 1~2회	1년에 1~2회	계(수)
3-6세 미만	3.2	9.6	25.5	40.1	16.6	5.1	100.0(157)
6-10세 미만	3.1	5.5	21.9	41.4	18.0	10.2	100.0(128)
10-14세 미만	2.2	8.9	16.7	42.2	21.1	8.9	100.0(90)
$x^2(df)$			34.07	4(15)**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마. 자녀 게시물로 인한 수익 경험 등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 관한 게시물로 인해 수익을 얻은 경험 등을 알아보았다. 먼저, 자녀에 관한 게시물로 인해 수익을 얻은 경험의 유무를 확인한 결과, 수익을 얻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92.8%였고,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7.2%였다. 이러한 결과는 막내 자녀의 연령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막내 자녀의 연령이 0-3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가 둘 다 무직인 경우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로 인해 수익을 얻은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Ⅳ-2-16〉 자녀에 관한 게시물로 인해 수익 얻은 경험 유무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7.2	92.8	100.0(948)
막내 자녀연령			
0-3세 미만	12.2	87.8	100.0(229)
3-6세 미만	4.0	96.0	100.0(249)
6-10세 미만	5.9	94.1	100.0(237)
10-14세 미만	6.9	93.1	100.0(233)
$x^2(df)$	13.1	115(3)**	
맞벌이 여부			
맞벌이	8.5	91.5	100.0(655)
외벌이	3.5	96.5	100.0(255)
둘 다 무직	13.6	86.4	100.0(22)
해당없음	_	100.0	100.0(16)
$x^2(df)$	9.5	665(3)*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다음으로 자녀에 관한 게시물로 인해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수익을 목적한 자녀 관련 게시물을 SNS에 업로드하는 주기를 살펴보았을 때, 주기 적으로는 않으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린다는 경우가 47.1%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일회성으로 올리는 경우가 33.8%, 한 달에 1회 이상 주 1회 미만 주기적으로 올린다는 경우가 14.7%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2-17〉 수익 목적으로 자녀 관련 게시물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일회성 <u>으로</u> 올림	주기적으로는 않으나 기회기 있을 때마다 올림	한달에 1회 이상 주 1회 미만 주기적으로 올림	주1회 이상 주기적 <u>으로</u> 올림	계(수)
전체	33.8	47.1	14.7	4.4	100.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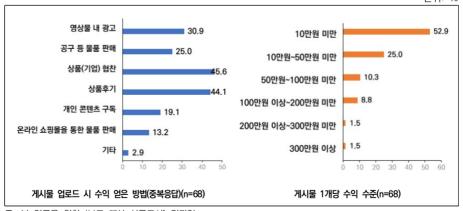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동일한 대상에게 자녀와 관련된 게시물 업로드 시에 수익을 얻은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상품(기업)협찬이 45.6%로 가장 높았으며 상품 후기가 44.1%, 영상 물 내 광고가 30.9%, 공구 등 물품 판매가 25.0%로 그 뒤를 이었다.

자녀와 관련된 게시물 1개당 얻는 수익의 수준을 살펴보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5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0만원에서 50만원 미만(25.0%),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10.3%) 등의 순으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5] 게시물 업로드 시 수익 얻은 방법(중복응답) 및 게시물 1개당 수익 수준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본 연구에서 FGI에 참여한 부모 중 아동의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아동의 특정 이미지를 제공하여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제품을 부상으로 받은 경험은 있었다. 단발성이지만 아동을 노출시키는 이벤트 참여나 후기 작성 등도 엄밀한 의미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로 가주될 수 있다.

기저귀나 이유식 후기 올릴 때 아이가 사용한 사진을 같이 보내거나 \cdots 그 당시에는 별생각 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부모 5)

아이들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 걸 보여주고 선물을 받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당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경우는 있네요. (부모 6)

부모는 자신이 아동을 상업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수익성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관대한 경향이 있다. 이는 타인이 아동의 정보를 수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비난했던 것과 상반된다. 이러한 태도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가 부모의 권한이라는 신념에 기반한다. 또한 얻어진 수익을 부모가 아동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어차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크리에이터는 대중에게 노출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선택한 것 또한 부모의 책임이지 않을까요? (부모 7)

아이를 대상으로 후기 이벤트를 하는 경우는 보통 만 4세 미만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부모가 지원해서 부모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감을 갖고 신청하는 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부모 12)

3. 자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인식 및 경험

본 연구에서 FGI에 참여한 부모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에 대해 아동의 정보를 노출하는 주체가 타인인지 부모인지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즉, 부모는 타인이 아동의 동의 없이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본다. 그러나 그 주체가 부모인 경우 아동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침해가 아니라고 여겼다.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면담 전반에 걸쳐 나타난 핵심적 주제이다. 이들은 부모가 아동을 돌보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도 아동의 암묵적 동의가 전제된다고 생각하였다.

[아이의] 동의를 받고 [부모가] 노출을 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케어하고 있으니까. (부모 9)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유아 시기는 아이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요, (부모 12)

부모 참여자가 나타낸 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은 "부모는 아동을 보호하는 존재로서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태도는 부모의 아동 정보 노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부모 참여자는 아동의 일상과 성장 과정을 타인과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고, 유익한 정보를 얻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모의 아동 정보 노출은 "순수한 의도"를 지니며,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동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보 노출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부모에게 동조하는 경향이 높아 반대 의사를 주장하기 어렵다. 이는 부모가 아동의 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해도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가끔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꿔 달라고 하거나 얼굴을 가려달라고 한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SNS에 사진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부모 7)

자기 어릴 때 게시물을 찾아보면서 좋아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된다는 인식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 9)

아이가 아직 9개월이라서 말도 못 하고, 그게[사진 노출]에 대해 좋다, 싫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시기에는 부모가 자유롭게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부모 14)

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가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자녀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한 경험의 유무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부모는 침해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7.3%로 나타났다.

〈표 IV-3-1〉 온라인 환경에서 자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 유무

단위: %(명)

			E11. 70(8)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7.3	92.7	100.0(1,238)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이후 자녀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그 종류를 알아보았을 때, 악성댓글을 경험한 경우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의 이유로는 개인신상정보 유출(28.9%), 아동이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 배포(28.9%), 굴욕 사진(25.6%), 허위사실유포(21.1%), 합성사진(15.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글목사진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 합성사진 개인신상정보 유출 아동이나 부모 동의받지 않은 게시물 배포 기타

[그림 IV-3-1] (자녀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 있는 경우) 침해 종류(중복응답)(n=90)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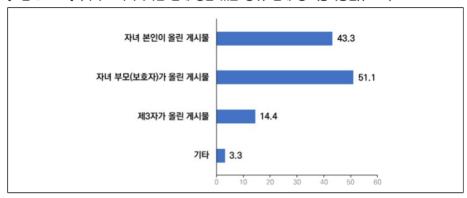
다음으로 동일한 대상에게 자녀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주체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녀의 친구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이 32.2%, 자녀의 부모(보호자) 지인이 22.2%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IV-3-2] (자녀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 있는 경우) 침해 주체(중복응답)(n=90)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녀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한 게시물의 종류는 51.5%가 자녀 부모(보호자) 가 올린 게시물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 본인이 올린 게시물이 43.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3-3] (자녀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 있는 경우) 침해 경로(중복응답)(n=90)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녀와 관련된 게시물로 인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했을 때의 대처 방안으로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7.8%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그 밖에도 부모(보호자)가 직접 삭제하는 경우가 34.4%, 자녀가 직접 삭제하는 경우가 26.7%, 해당 매체에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16.7%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4] (자녀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 있는 경우) 침해 대처방안(중복응답)(n=90)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본 연구에서 FGI에 참여한 부모는 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판단할 때 객관적

규준보다는 상황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아동의 동의를 받았는지, 아동의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아동이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주요한 침해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주관적 해석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나타냈다. 일례로, 교육기관에서의 아동 사진 활용을 침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 일부 참여자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노출이므로 아동 프라이버시 침해로 판단하였다. 반면 일부 참여자는 아동의 교육 활동 내용을 공유받는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로 간주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아이들 활동사진을 올려서 학원 홍보하는 건 봤어요. 사진 보면서 정보를 얻는 다고 생각했지 그걸로 우리 애가 피해를 보거나 제가 기분 나빴던 적은 없습니다. (부모 8)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경우 동의 없이 밴드나 네이버 카페에 아이 사진을 그냥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침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 12)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고 믿는 면담 참여자들은 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타인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부모는 아동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타인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한인식이 없다(부모 10)"거나 "아이의 초상권에 대한 감이 없다(부모 14)"는 등의 비난을 하였다. 부모는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고, 자신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아동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적극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어려워하였다. 부모는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대상과의 관계, 이후 발생할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서 직면하는 것을 꺼렸다.

아이가 자주 가는 어린이 서점에서 저희 아이의 정면, 측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단골 가게이고 앞으로 또 갈 거니까 지워달라고 말씀을 못 했어요. 서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라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전혀 인식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모 10)

저희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활동하는 모습을 게시하시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관계가 껄끄러워지거나 저희 아이만 빼놓고 사진을 찍을까봐 중단 요청을 못 한 경우가 있기는 했어요. (부모 11)

친구 엄마가 우리 아이 모습을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특정 정보가 나온 것도 아니고, 친구랑 노는 옆모습만 나오기도 해서 따로 제재하거나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유연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부모 15)

4. 소결

본 장에서는 아동의 온라인 이용 및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온라인 이용 실태, 부모의 셰 어런팅 및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 등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동의 온라인 이용 실태는 크게, 인터넷 이용과 SNS 사용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아동의 인터넷 이용은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컴퓨터, 태블릿 순이었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스마트폰 소유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초등학교 1, 2학년에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해 주었으며 부모의통제없이 기기 사용이 가능한 아동이 전체 응답자의 65.4%였다. 한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의 가족(부모님)과 공유 여부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의 반 정도가 공유하고 있었고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해당 앱의 공유가 높았다. 아동들이 인터넷 이용시 자주 이용하는 것은 게임과 동영상 시청이 가장 많았고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의경우에는 유튜브, 카카오톡(메신저), 게임(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순이었다.

아동이 SNS 사용을 하는 이유는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정보나 지식을 검색하기 위해서, 타인이 올린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SNS에 게시물을 작성 및 게시한 경험은 전체 응답 아동의 24.3% 정도만 있다고 보고하였고, 아동의 SNS 게시물의 내용은 주로 자신의 일상생활과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아동이 SNS에 가족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25.8%에 불과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대가 싫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부모의 셰어런팅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동 응답자의 31.4%만이 부모님이 자신의 정보를 SNS에 업로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동 자신의 사진 및 영상이 부모의 SNS에 올라간 것을 알았을 때의 기분을 조사한 결과,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은 경우가 60.1%로 많았고, 좋았다고 답한 경우도 27.3%, 싫었다는 11.9%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를 대상으로 SNS에 자녀에 관한 정보를 업로드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3.7%가 현재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거에는 업로드했지만 현재 중단한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자녀의 안전이 걱정되어 서라고 응답하였다. 보통 신생아부터 돌 이전까지 게시물을 많이 올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의 얼굴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의 영상 등이었으며 한 달에 1~2회 정도로 업로드하고 있었다. 그러한 게시물의 공개 범위는 팔로워와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가 56.6% 였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경우도 40.5%였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SNS에 자녀 본인의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도 높았다.

자녀에 관한 게시물로 인해 수익을 얻은 경험 등에 관한 알아본 결과, 대부분이 수익을 얻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는 부모는 소수였 으며 수익은 1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을 알아보았다. 대부분 부모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7.3%는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의 주된 내용은 악성댓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개인정보 유출, 게시물 배포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주체는 자녀의 친구가 많았고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주된 대처 방안으로 보고하였다.

V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인식 및 요구

- 01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인식 현황
- 02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요구
- 03 자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
- 04 소결

V.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인식 및 요구

본 장에서는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 결과를 토대로 인식과 요구 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살펴본다.

1.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인식 현황

우선 조사 대상 아동에게 '개인정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질문한 결과 '개인정보'라는 말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이 전체의 96.2%, 모른다는 비율이 3.8%로 나타났다. 아동 학년 및 거주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1〉 '개인정보'용어 인식 정도

단위: %(명)

구분	네	아니오	계(수)
전체	96.2	3.8	100.0(26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개인정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경우 이 말을 어디서 들어봤는지 질문한 결과,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87.3%, 인터넷에서 보았다는 응답이 72.1%,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응답은 5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 학년 이 높아질수록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이 용어에 대해 알게 되는 경향이 많았고, 아동이 4학년인 경우 친구로부터 이 용어에 대해 듣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1-2〉 '개인정보'용어 들어본 곳(중복응답)

구분	선생님 (학교에서)	부모님으로 부터	친구로부터	인터넷에서	TV방송 프로그램에서	기타	(수)
전체	87.3	53.4	38.6	72.1	49.0	0.0	(251)
성별							
여자	89.6	52.0	36.8	74.4	45.6	0.0	(125)
남자	84.9	54.8	40.5	69.8	52.4	0.0	(126)
학년							
초등학교 4학년	84.8	51.9	40.5	72.2	43.0	0.0	(79)
초등학교 5학년	85.7	58.3	36.9	69.0	51.2	0.0	(84)
초등학교 6학년	90.9	50.0	38.6	75.0	52.3	0.0	(88)
거주 지역							
대도시	94.2	42.7	35.9	84.5	58.3	0.0	(103)
중소도시	83.0	60.7	41.1	64.3	46.4	0.0	(112)
읍면	80.6	61.1	38.9	61.1	30.6	0.0	(36)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셰어런팅'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6%, 모른다는 응답은 95.4%였다. 성별 및 아동 학년별 차이는 없었으나, 지역별 차이는 나타났는데, 읍면지역 아동의 경우 도시 지역 아동보다 '셰어런팅'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3〉 '셰어런팅'용어 인식 정도

단위: %(명)

구분	네	아니오	계(수)
전체	4.6	95.4	100.0(261)
거주 지역			
대도시	0.9	99.1	100.0(107)
중소도시	5.1	94.9	100.0(117)
읍면	13.5	86.5	100.0(37)
$x^2(df)$	10.0	54(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본 연구에서 FGI에 참여한 아동들은 아직 온라인상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명료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 참여자는 부모가 온라인상에 자신의 정보를 노출할 때 동의를 구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사진이나 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낮았다. 이들도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꺼렸지만,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부모의 지인이라면 괜찮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 p ⟨ .01.

엄마가 엄마 친구들이랑 제 친구들 단톡방에다 제 사진을 올렸어요. 말도 없이 올려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저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아동 4)

모르는 사람이 보는 건 싫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친구들이랑 친척, 사촌이랑 가족들한테 보여지는 건 괜찮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엄마, 아빠의 친구라면 상관없어요. (아동 16)

아동이 허용하는 노출 가능한 콘텐츠 내용의 판단 기준도 "제 사진은 괜찮은데, 제가 쓴 글이나 노래 부르는 건 안 될 것 같아요(아동 6)"와 같이 비일관적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가 노출되는 것은 괜찮지만 수치심을 야기하는 내용은 꺼려했다.

웃고 있는 사진은 상관없는데, 슬픈 표정이나 화난 표정은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 피아노 대회에서 낮은 상 받은 사진을 올리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아동 2)

태권도 시범단을 하고 있어서 관장님이나 단장님이 제 사진을 다른 곳에 올리시니까 제 사진이 어디에 올라가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범단 활동할 때 큰 실수 한 장면이 올라가면 창피하니까 그런 건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동 5)

이처럼 아동은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엄청 이상한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아동 9)"와 같이 반응했다. 심지어 원하는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판단 능력과 함께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학습할 기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의 나체와 같이 명백히 민감한 사진이노출된 경우에도 "얼굴에 모자이크만 돼 있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아동 1)"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아동들에게 온라인에서 각종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취급 방침 또는 이용약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 는 응답이 62.1%, 모른다는 응답이 37.9%로 나타나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정도는 아동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 었으나 지역 차이는 나타났는데, 대도시 아동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아동보다 '개 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보다 높았다.

〈표 V-1-4〉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인지 여부

74		AU 10	70/4)
구분	네	아니오	계(수)
전체	62.1	37.9	100.0(261)
성별			
여자	63.4	36.6	100.0(131)
남자	60.8	39.2	100.0(130)
$x^2(df)$	0.	186(1)	
<u></u> 학년			
초등학교 4학년	58.8	41.2	100.0(85)
초등학교 5학년	54.0	46.0	100.0(87)
초등학교 6학년	73.0	27.0	100.0(89)
$x^2(df)$	7.3	317(2)*	
거주 지역			
대도시	73.8	26.2	100.0(107)
중소도시	51.3	48.7	100.0(117)
읍면	62.2	37.8	100.0(37)
$x^2(df)$	12.	071(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한편 아동에게 최근 1년간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교육 (예: 개인정보 보호 교육, 디지털/미디어 보호 관련 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1.8%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 내용이 잘 기억 안 난다는 응답이 31.4%,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이 15.7%로 나타났다. 교육 자체를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도 11.1%나 보고되었다. 교육 여부에 대한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역별 차이는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대도시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읍면 지역 아동은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 최근 1년간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교육 여부

단위: %(명)

구분	받은 적 있음	교육 받았으나 교육내용 잘 기억 안남	받은 적 없음	교육 받았는지 잘 기억 안 남	계(수)
전체	41.8	31.4	15.7	11.1	100.0(261)
거주 지역					
대도시	69.2	12.1	15.0	3.7	100.0(107)
중소도시	23.9	43.6	17.1	15.4	100.0(117)

^{*} *p* ⟨ .05, ** *p* ⟨ .01.

d

구분	받은 적 있음	교육 받았으나 교육내용 잘 기억 안남	받은 적 없음	교육 받았는지 잘 기억 안 남	계(수)
읍면	18.9	48.6	13.5	18.9	100.0(37)
$x^2(df)$		63.902(6)*	**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다음은 SNS 이용 시 '나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경우 해당 컨텐츠가 공유될 수 있으며 삭제가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45.2%,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0.3%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는 아동이 모른다는 아동보다 많았으나, 모른다는 비율도 40% 이상으로 꽤 높게 나타났으므로 아동 대상 SNS 관련 이용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V-1-6〉나의 사진/영상 올릴 때 공유될 수 있으며 삭제 어려움에 대해 인식 여부

단위: %(명)

구분	네	아니오	내 사진/영상 올리지 않음	계(수)
전체	45.2	40.3	14.5	100.0(6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약 40%(약간 그렇다 26.8% + 매우 그렇다 12.6%)로 부정 응답보다 적게 나타났다. 즉 아동들은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도울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도시 아동의 경우 대처 지식 및 효능감이 비교적 높은 반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아동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차이를 보였다.

〈표 V-1-7〉 온라인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인지 여부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21.8	30.7	26.8	12.6	2.33	8.0	100.0(261)
거주 지역							
대도시	20.6	21.5	31.8	22.4	2.58	3.7	100.0(107)
중소도시	19.7	36.8	22.2	6.8	2.19	14.5	100.0(117)
읍면	32.4	37.8	27.0	2.7	2.00	0.0	100.0(37)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잘 모르겠음	계(수)
$x^2(df)/F$		21.661(6)**		6.750**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ρ \langle .01.

2.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요구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교육(예: 개인정보 보호 교육, 디지털/미디어 보호 관련 교육 등)이 아동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이 거의 90% 가까이 나타났다(필요한 편 67.0% + 매우 필요함 22.2%). 이는 아동 학년별로 차이를 나타냈는데, 아동이 고학년이 될수록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아동보다 대도시 지역의 아동이 이와 같은 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V-2-1〉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정도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는 편임	필요한 편	매우 필요함	4점 평균	계(수)
전체	0.4	10.3	67.0	22.2	3.11	100.0(261)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2	15.3	74.1	9.4	2.92	100.0(85)
초등학교 5학년	0.0	9.2	66.7	24.1	3.15	100.0(87)
초등학교 6학년	0.0	6.7	60.7	32.6	3.26	100.0(89)
$x^2(df)/F$		17.20)7(6)**		8.394***	
거주 지역						
대도시	0.0	0.9	66.4	32.7	3.32	100.0(107)
중소도시	0.0	17.1	67.5	15.4	2.98	100.0(117)
읍면	2.7	16.2	67.6	13.5	2.92	100.0(37)
$x^2(df)/F$		30.63	32(6)***		13.01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한편 부모님이 자녀의 사진 또는 영상을 부모님 SNS에 업로드하기 전에 아동 본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응 답이 37.2%,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62.8%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에서 아동 학년 및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p ⟨ .01, *** p ⟨ .001.

 $\langle \pm \ V-2-2 \rangle$ 부모님이 본인 시진/영상을 SNS에 올리기 전에 본인 동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구분	동의받아야 함	동의받지 않아도 됨	계(수)
전체	37.2	62.8	100.0(261)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모님이 자녀의 사진 또는 영상을 SNS에 올리기 전에 자녀인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내 사진이 아니라서/상대의 사진이라서'라는 응답이 약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상대가 싫어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14.4%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기타응답이 34%으로 나타났는데, 기타 응답으로는 '아무 사진이나 올리지 않게 하기위해서', '미성년자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줘야 해서', '상대가 원해서', '상대도 사진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서',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어서' 등이 있었다.

〈표 V-2-3〉 부모님이 본인 사진/영상을 SNS에 올리기 전에 본인 동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경우 그 이유

단위: %(명)

구분	내 사진이 아니라서/상대 의 사진이라서	상대가 싫어할 수도 있어서	초상권이 있어서	개인 정보라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타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28.9	14.4	8.2	7.2	6.2	34.0	1.0	100.0 (97)

주1: 기타 응답으로 '아무 사진이나 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줘야 해서'. '상대가 원해서'. '상대도 사진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서'.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어서'가 있음.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 본인이 원할 경우 부모님이 자녀 사진이나 영상을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삭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54%,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46%로, 삭제해야 한다는 응답이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에 삭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아보다높았으며, 대도시 지역 아동이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아동보다 삭제의 필요성을 더높게 응답하였다.

〈표 V-2-4〉본인이 원할 경우 부모님이 올린 본인 사진/영상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구분	삭제해야 함	삭제하지 않아도 됨	계(수)
전체	54.0	46.0	100.0(261)
성별			
여자	61.8	38.2	100.0(131)
남자	46.2	53.8	100.0(130)
$x^2(df)$	6	6.457(1)*	
거주 지역			
대도시	64.5	35.5	100.0(107)
중소도시	43.6	56.4	100.0(117)
읍면	56.8	43.2	100.0(37)
$x^2(df)$	9	.955(2)**	

주: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이 원할 경우 부모님이 자녀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내가 원해서/내가 싫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 사진이라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24.1%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에 있어 아동 성별 및 학년, 거주지역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5〉 본인이 원할 경우 부모님이 올린 본인 사진/영상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단위: %(명)

구분	내가 원해서/ 내가 싫어서	내 사진이라서	개인 정보가 보호돼야 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을 올릴까봐서	프다이미시 라서	기타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32.6	24.1	3.5	15.6	7.1	16.3	0.7	100.0(141)

주1: 기타 응답으로 '개인적인 거라서, 초상권이 있어서, 요구할 수 있는 거라서, 본인도 알아야 해서, 동의없이 올린 사진이라서,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서, 내 모습을 남들이 아는게 싫어서, 올린 글이나 사진으로 인 해 친구들에게 안 좋게 적용될까봐, 인권 존중, 흑역사로 남을까봐, 다른 내용을 볼 수도 있어서'가 있음.

한편 동일한 질문으로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부모 본인의 SNS에 게시하기 전에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동 의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72.3%,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27.7%로 나

^{*} p ⟨ .05, ** p ⟨ .01.

주2: 본 연구를 위한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V

타났다. 부(文)보다 모(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동의를 받고 SNS에 게시물을 업로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2-6〉 SNS에 자녀 사진/영상 게시 전 자녀 동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명)

			L11: /0(U)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72.3	27.7	100.0(1,238)
성별			
여자	77.2	22.8	100.0(562)
남자	68.2	31.8	100.0(676)
$x^2(df)$	12.4	39(1)***	
막내 자녀연령			
0-3세 미만	66.3	33.7	100.0(297)
3-6세 미만	70.0	30.0	100.0(317)
6-10세 미만	71.0	29.0	100.0(310)
10-14세 미만	81.5	18.5	100.0(314)
$x^2(df)$	19.7	25(3)***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SNS에 자녀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의 개인정보(사생활)이므로'라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원치 않을 수 있으므로'라는 응답이 26.3%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릴 때 사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나타났다. 모(母)는 자녀가 원치 않을 수 있어서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부(父)의 경우에는 자녀의 개인정보이므로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V-2-7〉 SNS에 자녀 사진/영상 게시 전 자녀 동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단위: %(명)

구분	자녀의 개인 정보(사생활)이 므로	자녀가 원치 않을 수 있으므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릴 때 사진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타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64.9	26.3	2.2	3.5	1.8	1.3	100.0(895)
성별				•			

^{**} *p* ⟨ .001.

구분	자녀의 개인 정보(사생활)이 므로	자녀가 원치 않을 수 있으므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릴 때 사진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타	모름/ 무응답	계(수)
여자	62.0	31.1	2.8	2.3	1.2	0.7	100.0(434)
남자	67.7	21.7	1.7	4.6	2.4	2.0	100.0(461)
$x^2(df)$			17.549(5)**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p \ \langle \ .01. \ \rangle$

이처럼 아동들은 부모도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은 부족했다. 아동에게 있어 부모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는 대상이다.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이 그 사람한테 소송을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문제면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돼요. (아동 7)

아동 참여자가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에 대해 부모와 이야기하거나 안내받은 경우는 드물었다. 언급된 내용도 범죄 위험에 대한 부모의 불안이나 경고에 대한 것이었다. 아동은 "엄마가 사진 올리면 [남들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고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아동 7)",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올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아동 10)"라고 대답했다. 아동은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받은 경험은 있었다. 그러나 교사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고, 이 역시 "학교에서 예시를 보여주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아동 8)"와 같이 범죄 위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는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요(아동 12)"라는 반응도 보였다. 이는 학교에서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에 대한 교육이보완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3. 자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

가. 자녀 정보 온라인 게시에 대한 의견

다음은 부모 대상으로 자녀의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이다. '자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기 전에는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제시문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72.1%로 나타났다. 부(父)보다 모(母)의 경

우 자녀 정보 게시물을 업로드할 때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V-3-1〉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1) 자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기 전에는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0.8	5.6	21.6	49.2	22.9	3.88	100.0(1,238)
성별							_
여자	0.5	5.0	17.6	50.9	26.0	3.97	100.0(562)
남자	1.0	6.1	24.9	47.8	20.3	3.80	100.0(676)
$x^2(dt)/t$			14.036(4)*	*		3.448***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의 정보를 게시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제시문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1%(전혀 그렇지 않다 13.1% + 별로 그렇지 않다 27.9%)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인 28.3%(대체로그렇다 23.8% + 매우 그렇다 4.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 특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V-3-2〉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2〉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의 정보를 게시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13.1	27.9	30.7	23.8	4.5	2.79	100.0(1,238)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모가 올린 자녀 관련 게시물을 통해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4.3%(대체로 그렇다 43.5% + 매우 그렇다 30.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부(父)보다 모(母)의 경우에 해당 위험 정도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1, *** *p* ⟨ .001.

〈표 V-3-3〉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3) 부모가 올린 자녀 관련 게시물을 통해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0.8	4.8	20.1	43.5	30.8	3.99	100.0(1,238)
성별							
여자	0.9	4.6	16.0	40.6	37.9	4.10	100.0(562)
남자	0.7	5.0	23.5	45.9	24.9	3.89	100.0(676)
$x^2(dt)/t$:	27.737(4)**	*		4.173***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부모가 올린 자녀 관련 게시물로 인해 자녀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제시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65.6%(대체로 그렇다 39.3% + 매우그렇다 26.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 특히 부(文)보다 모(母)의 경우 이러한 우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4〉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4) 부모가 올린 자녀 관련 게시물로 인해 자녀 가 범죄에 노출될 기능성이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0.7	7.2	26.5	39.3	26.3	3.83	100.0(1,238)
성별							
여자	0.2	7.1	23.0	35.6	34.2	3.96	100.0(562)
남자	1.2	7.2	29.4	42.3	19.8	3.72	100.0(676)
$x^2(df)/t$		3	36.643(4)**	**		4.592***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자녀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정보를 SNS에 올리는 것은 자녀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제시문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64.2%(대체로 그렇다 41.7% + 매우 그렇다 22.5%)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역시 월등히 더 높았다. 이 질문의 경우 부모 특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3-5〉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5) (자녀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정보를 SNS에 올라는 것은 자녀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0.8	7.5	27.5	41.7	22.5	3.77	100.0(1,238)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러나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제시문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29.7%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인 35.8%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결과를 살펴볼 때 앞선 질문들에 있어 부모들은 자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부모의 법적 책임까지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결과에 따른 부모 특성별 차이는 없었다.

〈표 V-3-6〉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6)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8.2	27.6	34.5	21.8	7.9	2.94	100.0(1,238)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부모의 활동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제시 문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37.8%(대체로 그렇다 28.1% + 매우 그렇다 9.7%)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인 23.6%(전혀 그렇지 않다 4.9% + 별로 그렇지 않다 18.7%) 보다 더 높게 나타나 자녀 관련 게시물을 활용한 부모의 본격적인 활동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표 V-3-7〉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7)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부모의 활동은 규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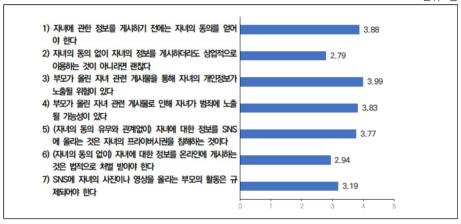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4.9	18.7	38.5	28.1	9.7	3.19	100.0(1,238)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V-3-1]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1(n=1,238)

단위: 점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이처럼 부모들은 자신이 노출한 아동의 정보가 악용될 위험성을 자각하기도 했으며, 특히 FGI에 참여한 부모들은 미디어나 지인으로부터 노출된 아동의 정보가 범죄의 표적이 된 사례를 접하며 걱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우려는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적극적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들에게 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아동의 정보를 노출한 부모가 아닌 이를 남용하는 타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부모는 아동의 개인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반대하였는데, FGI에 참여한 부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동의 초상권을 존중하지 않고, 아동의 정보를 분별없이 이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부모가 올린 아동의 사진이나 정보를 기업이다시 노출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아동의 사진과 정보를 일차적으로 노출한 당사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았다. 한편, 부모가 자발적으

로 아동의 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부모가 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요즘은 범죄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혹여나 [우리 아이 정보가] 노출이 될까 싶어서 조심하게 돼요. 아이가 초등학생만 돼도 혼자서 이동하는 일정이 많아지잖아요. (부모 1)

나중에 범죄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진이 노출되면 도용돼서 인터넷 범죄로 이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부모 6)

아이 용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경우, 아이의 초상권에 대한 감이 없을 것 같아요. 부모가 올렸다고 하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 (부모 14)

나.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지원 요구

다음은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지원 요구에 대한 응답 내용이다.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의 접근권/삭제권/수정권 등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시문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이 이에 응답하였다.

〈표 V-3-8〉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8)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의 접근권/삭제권/수정권 등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1.3	8.6	32.2	41.6	16.2	3.63	100.0(1,238)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해당 정보의 접근권/삭제권/수정권 등 구제절차가 마련된다면 해당 제도를 아동이 단독으로(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시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42.6%(대체로 그렇다 32.6% + 매우 그렇다 10.0%)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3-9〉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9) 정보의 접근권/삭제권/수정권 등 구제절차가 마련된다면 해당 제도를 이동이 단독으로(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2.9	15.3	39.1	32.6	10.0	3.32	100.0(1,238)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온라인상 아동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아동이 이해가능한 수준의 언어로 쓰여야한다'는 제시문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66.2%(대체로 그렇다 45.8% + 매우 그렇다 20.4%)로 동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10〉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10) 온라인상 아동에게 주어자는 정보는 아동이 이해가능한 수준의 언어로 쓰여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1.3	5.8	26.7	45.8	20.4	3.78	100.0(1,238)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시문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66.2%(대체로 그렇다 44.2% + 매우그렇다 22.0%)로 정부 정책의 필요성 정도를 높게 응답하였다. 부모 성별에 따라서는 부(父)보다 모(母)의 경우 그 필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표 V-3-11〉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11)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1.1	5.9	26.9	44.2	22.0	3.80	100.0(1,238)
성별							
여자	0.7	5.0	23.7	44.5	26.2	3.90	100.0(562)
남자	1.3	6.7	29.6	43.9	18.5	3.72	100.0(676)
$x^2(dt)/t$			14.808(4)*	*		3.754***	
막내 자녀연령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0-3세 미만	_	8.8	31.6	37.0	22.6	3.73	100.0(297)
3-6세 미만	1.3	6.3	29.7	41.6	21.1	3.75	100.0(317)
6-10세 미만	1.0	4.2	24.5	51.0	19.4	3.84	100.0(310)
10-14세 미만	1.9	4.5	22.0	46.8	24.8	3.88	100.0(314)
$x^2(df)/F$		2	9.099(12)	1.957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ρ \langle .001, *** ρ \langle .001.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 관련 기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제시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63.7%(대체로 그렇다 41.1% + 매우 그렇다 22.6%)로 높은 규제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이 역시 부(父)보다 모(母)의 경우 더 철저한 규제의 필요성을 높게 드러냈다.

〈표 V-3-12〉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12)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 관련 기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1.5	6.4	28.4	41.1	22.6	3.77	100.0(1,238)
성별							
여자	1.1	4.6	24.6	41.8	27.9	3.91	100.0(562)
남자	1.9	7.8	31.5	40.5	18.2	3.65	100.0(676)
$x^2(df)/t$		2	24.660(4)**	*		4.943***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디지털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는 제시문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67.8%(대체로 그렇다 43.0% + 매우 그렇다 24.8%)로 월등히 많았으며, 부모 특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3-13〉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13)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 이집·유치원에서 디지털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0.9	5.9	25.4	43.0	24.8	3.85	100.0(1,238)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디지털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72.5%(대체로 그렇다 46.0% + 매우 그렇다 26.5%)로 매우 높게 나타나 학교에서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 역시 모(母)의 경우에 교육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V-3-14〉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14)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 에서 디지털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0.6	4.8	22.1	46.0	26.5	3.93	100.0(1,238)
성별							_
여자	0.7	3.9	19.9	44.0	31.5	4.02	100.0(562)
남자	0.4	5.5	24.0	47.8	22.3	3.86	100.0(676)
$x^2(dt)/t$			14.903(4)*	*		3.199**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p < .01.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부모(보호자) 대상 디지털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는 제시문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69.7%로 대다수였으며, 이 역시 부(父)보다는 모(母)의 경우 그 필요 정도를 높게 응답하였다.

〈표 V-3-15〉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15)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부모 (보호자) 대상 디지털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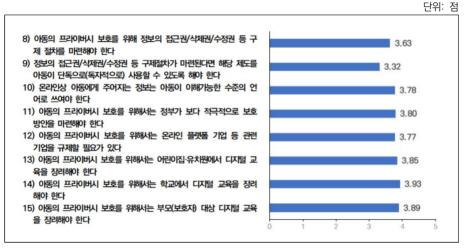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0.5	4.2	25.6	44.7	25.0	3.89	100.0(1,238)
성별							

T 7
v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계(수)
여자	0.4	3.9	24.0	41.6	30.1	3.97	100.0(562)
남자	0.6	4.4	26.9	47.3	20.7	3.83	100.0(676)
$x^2(dt)/t$			14.563(4)*	*		2.920**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p < .01.

[그림 V-3-2]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2(n=1,238)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타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아동의 정보가 타인에 의해 남용되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특히 부모는 영리 목적으로 아동의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기업은 이윤이 남는다면 아이들 사진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 사진이 도용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6)

올라간 [아이들] 사진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 7)

기업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아이 사진을] 쓸 수 없도록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부모 14)

한편, 아동의 정보를 공개하는 주체가 부모인 경우에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부모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한 규제(부모 2)"이며, "무리가 있는 지나친 통제(부모 7)"라는 것이다. 심지어 부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지적도 대두되었다. 단, 부모 스스로가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아동의 정보를 다뤄야 하는 필요성은 언급되었다.

[부모] 개인이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유니까요. 규제하기보다는 부모 개인 이 자유롭게 알아서 조심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 4)

[부모한테] 무조건 사진 못 찍게 하고, 온라인상에 올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하는 건 현재 우리 시대 분위기나 사고방식이랑 맞지도 않아요. (부모 8)

부모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실수로(부모 6)" 침해하지 않도록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부모가 아동의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범위나 내용이 명시된 규정이 제공된다면 이를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부모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요소가 있는 사진 등을 올리면 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부모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규정 부재나 시스템 미흡 때문이라는 외적 귀인에서 나온다.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동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외부 규정이나 시스템 무제로 가주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하겠다.

아이들 사진을 올리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맘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아이들 얼굴이 여러 개 인식된다면, 경고 문구처럼 '아이들의 동의를 받으셨나요? 공개가 되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같은 문구가 떠서 승인을 해야 올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4)

플랫폼에 음란물을 올리면 바로 차단되는 것처럼 부모가 아동 게시물을 잘못 올릴 때 이를 차단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 10)

아이의 개인정보를 올렸던 부모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 14)

한편,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부모는 FGI에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행동이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음을 자각하기도 하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지금과는 다른 조망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이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프라이버시 교육의 가능성과 연결된다. 아동의 발달단계가 유사한 부모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아동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고찰하고, 부모가 먼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그전에는 아이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나름 지킨다고 했지만,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어요. 많은 부모가 경각심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캠페인, 교육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 10)

이런 담론[온라인상의 아동 프라이버시]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아이 사진을 아예 올리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올린 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미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경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 11)

4. 소결

본 장에서는 아동 본인들의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부모가 응답한 아동 프라이버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논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에 참여한 부모와 아동은 "부모가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보호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했다. 아동 참여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기보다 부모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부모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주 행위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부모는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거나 책임을 간과하는 등 혼란을 나타냈다. 이는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부모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우선 본 조사 대상인 아동들은 비교적 많이 '개인정보'라는 용어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셰어런팅'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학년 및 거주지역에 따라 달랐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대도시일수록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온라인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역별 차이를 드러냈는데, 대도시일수록 해당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높았다.

SNS 이용 시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공유될 수 있고 삭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아동 다섯 중에 두 명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에서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기 전에 아동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2%에 그쳤다. 동일한 질문에 있어 부모는 자녀 사진이나영상 게시 전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원할 경우 부모님이 아동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언제든지 삭제할 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야만한다고 응답한 아동 비율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었다.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를 살펴본 결과, 부모들은 비교적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지원을 위해 아동 정보의 접근권/삭제권/수정권 등구제절차 마련, 해당 제도의 사용 권리, 정부 차원에서의 보호 방안 마련, 기업 역할, 각종 교육 필요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다만 부모들은 자녀의 동의 없이 본인들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적었으며,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부모의 활동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응답 역시 비교적 그 비율이 적게 나타나 부모의 책임보다는 국가/학교/사회적 책임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 분석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동들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경험 등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며, 권리 행사를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특히, 아동은 유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신체적·인지적 발달과정을 거치며 그 특성이 연령대별로 상이하여 차등적 보호조치가 필요한데,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안내하는 등아동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이상 앞서 살펴본 주요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부모의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 부모는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모순되고 다소 자의적인 주장을 하였다. 이는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모의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기 때 문이다. 부모는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이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간과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는 미성년 아동의 의사결정이 제한적 이고,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갖는 다. 그러나 부모가 이를 자신의 권리로 동일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 다. 따라서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모의 권한을 아동 보호를 위해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와 아동을 위한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해당 교육은 학교와 같은 형식 기관을 통해 아동에게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기관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워크숍 형식의 교육 기회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일상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한존중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상에 과도하거나 민감한 아동의 정보가 노출되면 그 주체가 부 모라 할지라도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환경은 아동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하게 아동의 정보를 이용하는 타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모는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타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아동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필요로 했다. 아동의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범죄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영리 목적의 기업은 아동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2. 쟁점별 고찰

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인식 개선과 역량강화

1)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 개념화 및 인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히 규정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미성년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 규정이 필수적이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온라인상 개인정보에 대한 아동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을 프라이버시의 권리주체로 명시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단,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이는 아동의 의사표시가 불완전하고, 개인정보 침해 시 아동 스스로 구제 절차를 이용할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들의 경우에도 아직 온라인상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명료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들은 부모가 온라인상에 자신의 정보를 노출할 때 동의를 구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사진이나 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낮았다. 이들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꺼렸지만,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부모의지인이라면 괜찮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사회문화적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상 노출되는 것이 거리나 광장에서 낮선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못하는 등 온라인상 노출이 장래에 가져올 여러 위험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의 주체와 양태를 명확히 하는 것 이전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및 위험발생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널리 유통시킴으로써 부모나 아동이 무엇을어느 정도로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실제로 본 연구의 아동 참여자들은 부모가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다. 이들은 동의 여부보다는 자신의 사진이 노출되는 범위와 노출된 내용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가능한 소셜미디어가 해당한다. 가족, 친지, 지인과 같이 한정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서의 노출은 신경 쓰이지 않는다, 또는 상관하지 않는다, 혹은 괜찮다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아동들이 허용하는 노출이 가능한 콘텐츠 내용의 기준은 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가 노출되는 것을 선호하는 한편, 자신이 느끼기에 이상한 사진, 정보가 많이 드러나는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아동 참여자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원하는 이미지가 있을 경우 오히려 드러 내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동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대하는 태도는 소셜미디어상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존중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 프

라이버시 권리를 존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마땅하지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자율적 판단과 결정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여 아동 중 일부는 아동의 나체 사진과 같이 명백히 민감한 사진이 노출된 상황에서도 장기적 위험에 대해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아직까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교육기회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 내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질적으로 내용이 보장된 콘텐츠 개발 등이필요할 것이다.

한편, 아동들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을 때 가장 먼저 취할 행동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인 부모,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권리가 있는 성인들이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부모가 의식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 참여한 부모들도 부모 개인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아동이 프라이버시를 고민한 적이 없는 부모의 경우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반면, 셰어런팅을 한 부모가 자신이 아동의 온라인상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 등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아동을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보는 보호자의 인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셰어런팅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직간접적 위험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 의 삶을 존중하는 동시에 부모로서 갖는 권리는 무엇인지, 셰어런팅으로 인한 위험 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부모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 다. 이는 부모뿐 아니라 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보 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모교육과 지원을 통해 성인 보호자가 아동이 경험하는 온라인 위험 상황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다.

아동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범위와 초상권, 사생활 등에 대해 개인정보 주체로 서의 아동의 권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의 연령 별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스스로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SNS 등 디지털 세계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리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 아동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즉, 다른 아동에대한 매너, 보이지 않는 타인에 대한 위험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신고절차, 개인정보 동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보다 아동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온라인 사업자 등이 조치를 취하도록 아동의 알 권리 강화 노력이필요하다. 예컨대, 표준화된 알기 쉬운 고지 양식, 좀 더 접근 가능한 방식의 온라인 신고절차 툴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여 아동이 자신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잊힐 권리는 부모의 표현의 자유에 따른 아동의 장기적인 피해를 일부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이기도 한데, 이때 잊힐 권리는 아동이직접 올린 개인정보,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등 행위 주체를 포괄해야 할 것이다.

OECD(2021)는 아동의 온라인 보호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아동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아동과 부모/보호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해당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예컨대, 신고, 법적 대응 방안)하고 2)데이터 주체로서 아동의 권리 및 아동의 개인데이터가 수집, 이용, 공유되는 방식에 대해 아동과 부모/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지원, 3)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는 권리 보장, 4)아동과 부모/보호자가 아동이 디지털환경에서 한 경험과 관련하여 받을수 있는 법적, 심리사회적, 치료적 지원에 대한정보제공, 5)아동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온라인상 상업적 행위에 대한 정보제공등을 제안하였다(김아미, 2023: 3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에서도 프라이버시 교육을확대하여 아동의 디지털역량을 강화시킬필요가 있다.한편, 이러한 교육은 지역간불균형이 나타나지않도록해야하는데, 아동대상설문조사에서최근 1년간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교육경험물었을때 지역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는점(대도시의 경우 69.2%가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읍면지역은 18.9%에불과)을 상기해야할 것이다.

나.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실천

1) 셰어런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관련 제도 마련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주체이므로 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의 프라이버시 권리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 부모가 아동의 사진 및정보를 노출하는데 있어서 미성년 아동의 동의가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미성년 아동의 의사표시가 불완전하다는 가정 때문이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아동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즉,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아동의 동의 없이 사진 및 정보를 셰어런팅 하는 배경이 된다.

FGI 결과에서도 아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 개인정보의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는 점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유아기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아동이 어리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않고, 자신의 사진이나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없어서 동의를 얻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단, 의사표현이 가능한 시기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했다. 의사표현이 가능한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 전, 후를 꼽았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인지하고 의사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역시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셰어런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소셜미디어에 자기의 사진이 노출되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오히려 아동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들어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들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중학생, 청소년기로 꼽았다. 아동들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국가의 법이 강화되거나 처벌을 세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아동 2)"와 같은 반응을 보인 반면, 부모도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은 부족했다. 아동에게 있어 부모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는 대상이다.

프랑스에서 셰어런팅을 규제하게 된 이유는 셰어런팅이 아동의 사생활 침해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인데, 우선, 아동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사진) 확산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과 부모들에 의해 아동들의 초상권 관리에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사진이 인터넷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은 먼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미지 확산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체화된다. 국제적으로 포르노그래피 포럼(아동 포르노 인터넷 게시판)에서 교환되는 사진의 50%는 원래 부모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특히 벌거벗은 아기 사진이나 체육복을 입은 소녀들의 사진과 같은 일부 이미지는 소아성애자 집단에게 특히 관심을 끌기도 한다. 아동의 일상에 대해 배포된 정보는 최악의 경우개인들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의 장소와 생활습관 등을 식별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아성애자 위험 외에도 온라인상에 게시된 컨텐츠는 그것을 완전하게 삭제할 가능성이 없어 오랜 시간 동안 아동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셰어런팅도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프랑스와 같이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위해서는 1)부모가 친권자로서 셰어런팅을 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 제한 방안, 2)셰어런팅을 할 수 있는 사진이나 개인정보 등의 범위에 관한 제한 방안, 3)셰어런팅임을 표시하고 해당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①삭제, ②아동 및 친권자 외의 열람 제한, ③검색제한 등을 선택하고 선택에 따라 이해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4)친권자가 아닌데도 셰어런팅임을 가장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등 셰어런팅 규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셰어런팅을 포함하여 본인이나 제3자에의해 개인정보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동이 인지하게 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서 잊힐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제3자와의 관계에서 프라이버시는 부모가 보호해주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는 부모가 이에 대해 전담하여 결정하는 경우 셰어런팅의 경우와 같이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부모가 준수

³³⁾ 실종 및 성착취 아동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의 보고서에서는 2020년 이후로 유로폴(Europol)과 인터폴(Interpol)은 젊은이들이나 그들의 환경이 자기 제작 콘텐츠로 성착취적인 교환에 널리 사용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프랑스 국회 홈페이지, 브루노 스튜더 (Bruno Studer)의원 발의, 아동의 초상권 존중을 위한 법률 초안, 제758호, 입법이유'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b0758 proposition-loi(2023. 6. 30. 인출).

해야 할 윤리적 가이드라인부터 부모 또는 그와 관련을 맺는 기업 등 사회의 주체들이 준수해야 할 법규범까지 정립해야 할 것이다.

2)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환경 조성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f Rights of Child) 제3조는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이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이다. 이는 소셜미디어상의 아동 프라이버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부모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잠재적, 장기적 위험에 대해 대처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해주어야 한다. 일부 부모 참여자는 소셜미디어에 자녀의 게시물 노출 시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자녀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위치나 교육 기관의 정보를 가리고 사진을 게시하였다.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자녀의 정보를 노출하게 된다. 부모의 자유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는 부모의 자유가 우선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의 프라이버시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한편, 영국 ICO의 연령적합설계규약의 '아동보호를 위한 부모의 통제'는 부모가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경우 시스템 상 아동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명한신호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보호와 아동의 프라이버시 존중의 균형을 위해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아동에게 이를 알리는 시스템이필요하다. 또한 위치추적이 아동의 최선을 이익을 고려하여 정말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옵션을 해제하고, 위치 추적이 활성화되는 경우 아동에게 이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디어 사용시간을 통제하거나 아동의 안전을 목적으로 위치추적과 같은 감시와 통제적 양육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감시앱은 부모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인해 부모에게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어릴 때부터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시받는 상황은 아이의 성장과 프라이버시 감각을 키우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이선민 외, 2021: 311)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 제·개정

연구결과와 비교법적 검토 등을 통해 입법화가 필요한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제시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아동의 연령 범위, 두 번째는 셰어런팅 규제 방안, 세 번째는 잊힐 권리 보장 방안, 네 번째는 아동 및 보호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등이다.

현행법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찾기는 어렵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도 법정대리인 동의제도와 아동의 알 권리를 일부 보장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위의 4가지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현재 논의중인 아동기본법안과 독자적인 법률 제정안 등을 검토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해볼 수 있다. 연령의 경우 현행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따라 18세 미만3⁴)으로 상향하여 보호 범위를 두텁게 하되, 법정대리인 동의 연령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에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아동의 경우 잊혀질 권리의 경우에는 게시물을 보유한 자의 의무와 게시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 행위 내용별로 삭제 외에 검색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좀 더 광범위하게 잊혀질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셰어런팅에 관한 논의가 숙성된 이후에는 프랑스법제를 참고하여 개 인정보 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에 부모가 셰어런팅을 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미취학 아동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면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셰어런팅을 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범위 등을 하위법령이나 지침에 마련하여 규제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³⁴⁾ 일부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범위를 고려하여 19세 미만으로 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아 여기에서는 18세 미만으로 제안함.

〈표 Ⅵ-2-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혀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미만 아동이 개인 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 │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8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 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 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 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 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 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 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 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 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 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 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 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는 18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이 번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 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 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 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아동 정보의 삭제 등에 관한 특례) 제 36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가 아동인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 비스에 게재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아동인 동안 또는 성년이 된 후 1년 이내에 삭제 등을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요청한 대로 처리해야 한다.(신설)

제36조의3(자녀정보 공개의 제한) 보호자 등이 자 녀 등의 정보를 그 정보에 접근하는 자의 범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게 시할 때에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신설)

현행	개정안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② <u>18세</u>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 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생략)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u>만 14세</u>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생략)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u>18세</u>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관한 규정만 신설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부모가 아동의 정보(영상)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상 쉽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셰어런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친권과 아동의 프라이버시권과의 긴장관계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보호를 아동의 '동의' 의사에 맡기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한 경우법 집행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셰어런팅으로 인한 위험이 높은 상황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하되,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자녀의 신체가 노출되는 사진을 게시하거나 거주지 등 위치를 함께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이 금지수준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아동에게 설명을 하여 아동이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부모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플랫폼(기업) 등 제3자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아동기본법 제정안 검토

현재 국회에는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아동기본법 제정안(의안번호 제21733호)과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아동기본법 제정안(의안번호 제21756호) 2가지가 계류 중에 있다. 이 중 양금희 의원안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강훈식의원안에는 보호권에 "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고 인격 또는 명예를 침해받거나 훼손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프라이버시권을 명시하고 있다.

〈표 VI-2-2〉 아동기본법안(강훈식의원안/양금희의원안) 구성체계 비교

구분	강훈식의원안	양금희의원안
생존권	∘생존권 -생명권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 -친생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 -보건의료시설 사용권 -출생 전·후 건강관리를 보장 받을 권리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생명에 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보호권	◦보호권 -체벌, 집단 괴롭힘, 폭력,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치료 및 전문상담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유해한 업무·고용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책임 없는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 등을 보호받을 권리	-치료 및 전문상담조직의 조력 -성범죄 보호를 위한 법률
발달권	∘발달권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없는 교육 여건을 누릴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권리 -문화생활·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 -쉴 권리 및 놀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정규 교육 외 차별없는 교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보호 및 지원 -아동 복지 지원을 위한 법률 ○건강에 관한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참여권	·참여권 -자유로운 견해 표명권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쉬운 언어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 접근권 -자기정보 처리 관련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차별없는 참여권 -아동정책 과정에 의견개진권	∘의사표현의 권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과정 등에서 의견표명권

구분	강훈식의원안	양금희의원안
비차별	기본이념에서 규정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원칙		-장애아동 복지 지원을 위한 법률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3. 6). 아동기본법안 검토보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아동의 권리 역시 확장되는데, 온라인 환경에서의 프라이 버시 보호 등은 온라인 세계가 아동의 삶에서 뗄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이 커졌으며,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5호(디지털 환경 관련 아동의 권리)를 발표하여 아동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강미정, 2023: 233). 이처럼 디지털 환경과 같이 전 인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슈의 경우 아동기본법에 담아 아동권리 관점에서 바라보고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완석, 2023: 240).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범죄 악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등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종합적 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아동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강미정, 2023: 234).

우리나라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프라이버시도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하나, 부모 등 보호자들의 밀접한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아동이 개인으로서 적절한 프라이버시권을 향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등을 통해 보호자는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으나 실제 셰어런팅과 같이 부모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아동기본법에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에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기본법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 외에 다른 제도적 수단들을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아동기본법이 기본권 중심의 규정들만 나열하는 경우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법(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3) 독자적 법률 제정안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 독자적 인 법률 제정안 마련을 검토한 바 있다. 즉, 아동의 개인정보 위험의 다양성 및 심 각성 증가에 따른 보다 강화된 보호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합한 입법 방식으로 본 것이다(나종연 외, 2022: 329). 동 제정안은 법정대리인 권리제한, 맞춤형 광고 제한, 프로파일링 제한,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잊힐 권리, 아동 연령 범위 기준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한 번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제정안 마련이 타당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보았을 때 아동의 삭제권(잊힐권리)과 셰어런팅, 아동의 연령 등에 대한 내용만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개별법 개정안(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표 VI-2-1〉참조〉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본다.

〈표 Ⅵ-2-3〉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구성체계

(가칭)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타 법률과의 관계) 제6조(아동 개인정보 기본계획) 제7조(민관협의회) 제8조(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제9조(법정대리인 동의에 대한 특례) 제10조(개인정보처리 방침 공개에 대한 특례) 제11조(법정대리인의 열람 요구 등) 재12조(아동의 삭제 요구 등에 관한 특례) 제13조(아동의 연령 확인) 제14조(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지원)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	--

자료: 나종연 외(2022).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소비자 정보·유통연구실 /한국인터넷진흥원. pp. 330-335.

한편, 가칭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익보호법"과 같이 여러 부처 소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아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개인정보 관리의 경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련된 위험, 친구등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위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이용당할 위험등 여러 위험과 연결되고, 아동 보호를 위해서도 부모 뿐 아니라 교육기관, 경찰, 플랫폼(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또 이들 상호간에 협력이 필요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만 관련규정을 넣기 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누리·강지영(2022).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셰어런팅 경험에 관한 연구: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2), 35-65.
- 강미정(2023). 2023 제5회 사회복지법제 연합포럼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세션 토론문. 사회복지 혁신과 융합. 한국법제연구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육아정책연구소·생존신호정 보연구센터·아동권리보장원·(사)사회복지법제학회 공동주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3. 5. 23). 자녀사진, 알고 공유합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3. 7.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 업' 시행 2달. 누가 왜 신청했을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고완석(2023). 2023 제5회 사회복지법제 연합포럼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세션 토론문. 사회복지 혁신과 융합. 한국법제연구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육아정책연구소·생존신호정 보연구센터·아동권리보장원·(사)사회복지법제학회 공동주최.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2. 7. 11). 관계부처 합동「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발표 신뢰하는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부터 시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3. 6). 아동기본법안 검토보고.
- 굿네이버스(2023). 굿네이버스 내부자료.
- 김아미(2023). 아동의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위한 우리의 사회적 책무. 초록우산 창립 75주년 기념 아동의 디지털 권리 옹호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 집. 초록우산.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 김아미·김희진·윤수경·박진이·윤남희·이슬비(2022).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 리 보장 방안 연구: 한국-필리핀 아동이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개인정보와 콘텐츠 관련 위험 및 대응방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나종연·최경진·전윤선·조은선·서겸손·장유정·길주현·유정현(2022). 아동·청소 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소비자 정 보·유통연구실/한국인터넷진흥원.

- 나종연·김지혜·전윤선·조은선·이승은·이아롬 외(2019).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 노인순·김승희(2020).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 활용에 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311-335.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0. 6. 30).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학대 행위 예방한다.
- 서지은·양성은(2022). 어머니의 셰어런팅(Sharenting) 경험에 대한 탐색 연구. 2022 한국생활과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80.
- 세이브더칠드런(2022). 세이브더칠드런 2021년 연차보고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21).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 반논평 제25호.
- 이보람(2021).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셰어런팅 현황과 양육지원 요구, 아동학회지, 43(2), 153-167.
- 이선민·장여경·김법연·오병일·김상현(2021).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시청자미디어재단.
- 이영희(2021). 인터넷 개인방송의 아동 청소년 출연자 권익보호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20(2), 69-120.
- 이희정(2021).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고. 국가법연구, 17(2), 157-190.
- 장민영(2020).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1-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정재도(2023).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의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의 성립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강법률 논총, 12(2), 117-150.
- 천희영·이미란(202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셰어런팅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4), 967-991.
- 한국인터넷진흥원(2020).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ICO의 '연령적합설계규약' 분석(1).
- 한동훈(2021).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Archer, C.(2019). How influencer 'mumpreneur' bloggers and

- 'everyday' mums frame presenting their children online.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Vol.170(1), 47-56.
- Blum-Ross, A & Livingstone, S(2017). Sharenting: parent blogging and the boundaries of the digital self. Popular Communication, 15 (2). 110-125.
- Livingstone, S. Stoilova, M. and Nandagiri, R.(2019). Children's data and privacy online: growing up in a digital age: an evidence. An evidence review.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Nottingham, E.(2019). 'Dad! Cut that Part Out!' Children's Rights to Privacy in the Age of 'Generation Tagged': Sharenting, Digital Kidnapping and the Child Micro-Celebrity' in Jane Murray, Beth Blue Swadener, Kylie Smith (ed)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Young Children's Rights.
- OECD(2021). Draft Revise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hildren in the Digital Environment, C/MIN(2021)7.
- Stacey, B. S.(2017). Sharenting: Children's Priv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 University of Florida Levin College of Law Research Paper, 16-41.

〈인터넷 자료〉

-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60(2023. 7. 4. 인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국가별정보,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70&mCode=D060010000&etc2 =%EB%AF%B8%EA%B5%AD(2023. 6. 13. 인출).
- 경향신문(2019. 2. 6일자 기사). 내 아이 사진 올리는데 뭐 어때? 초상권, 해외선 다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92096 1?sid=102(2023. 7. 10. 인출).
- 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incrc.org/uncrc/에서 인출(2023. 6. 14. 기준).

-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EU GDPR이란, https://privacy.naver.com/global _support?menu=global_support_eu_gdpr_understand(2023. 6. 1 3. 인출).
-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미국 프라이버시 보호법, https://privacy.naver.com/global_support?menu=global_support_usa_privacy(2023. 6. 13. 인출).
- 뉴스포스트(2021. 8. 23일자 기사). [셰어런팅 주의보] "이 사진 올려도 될까?" 아이에게 꼭 물어보세요,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 w.html?idxno=94226(2023. 3. 2. 인출).
- 뉴스포스트(2021. 8. 18일자 기사). [셰어런팅 주의보] SNS에 24시간 '자녀 일 상' 중계하는 나라,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 idxno=94159(2023. 7. 10. 인출).
- 미국 FTC 홈페이지,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A Six-Ste p Compliance Plan for Your Business, https://www.ftc.gov/busin ess-guidance/resources/childrens-online-privacy-protection-rule -six-step-compliance-plan-your-business(2023. 11. 5. 인출).
-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 https://sharenting.sc. or.kr/home(2023. 7. 1. 인출).
- 언론중재위원회(2021. 4. 13). [일상다반사] '셰어런팅' 아동권리침해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pac3083/222308429628(2023. 3. 2. 인출).
- 캘리포니아 입법 정보 홈페이지,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 es_displayText.xhtml?lawCode=BPC&division=8.&title=&part=&c hapter=22.1.&article=(2023. 7. 1. 인출).
- 컨슈모타임스(2019. 11. 1일자 기사). 키즈 유튜버 콘텐츠, 아동학대 의심 시 삭제 조치, https://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319481(2023. 10. 1. 인출).
- 프랑스 국회 홈페이지, 브루노 스튜더 (Bruno Studer)의원 발의, 아동의 초상권 존중을 위한 법률 초안, 제758호, 입법이유,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b0758_proposition-loi(2023. 6. 30. 인출).

- 한국일보(2023. 3. 6일자 기사). "자녀 사진 올리는 데 판사도 개입? ... 프랑스는 '셰어런팅 금지법' 논의 중", https://www.hankookilbo.com/News/R ead/A2023030611260001624(2023. 6. 14. 인출).
- EU GDPR 홈페이지, https://gdpr-info.eu/(2023. 6. 13. 인출).
- EUR-lex 홈페이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FR/TXT/?uri =uriserv%3AOJ.L_.2022.277.01.0001.01.FRA&toc=OJ%3AL%3A202 2%3A277%3ATOC(2023. 10. 14. 인출).
- Euronews(2023. 3. 10일자 기사). 'Sharenting': Why is France trying to st op parents from oversharing their children's images online?, htt ps://www.euronews.com/next/2023/03/10/sharenting-why-is-fra nce-trying-to-stop-parents-from-oversharing-their-childrens-im ages-on(2023. 6. 14. 인출).
- JTBC(2022. 7. 11일자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 7/0000305158?sid=102(2023. 6. 14. 인출).
- NSPCC Learning 홈페이지, https://learning.nspcc.org.uk/safeguarding-c hild-protection(2023. 10. 1. 인출).
- SBS뉴스(2019. 9. 1일자 기사). [스브스夜] '그것이알고싶다' 아이의 행복과 아동학대 사이…'키즈 유튜브' 속 문제의식들,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09636693&plink=COPYPASTE&cooper=SBSENTERNEWS(2023. 10. 1. 인출).
- Sharing images. https://learning.nspcc.org.uk/research-resources/briefings/photography-sharing-images-guidance(2023. 10. 1. 인출)
- Unicef(2018). Children's Online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https://issuu.com/unicefusa/docs/unicef_toolkit_privacy_expression?e=29613278/60947364(2023. 6. 14. 인출).
- You Tube 정책,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9229229?hl =ko-KRChoosing(2023. 10. 1. 인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미국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복지법 [법률 제19554호, 2023, 7, 18., 일부개정]

영국 Age Appropriate Design Code, 연령 적합 설계 규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 개정]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69호, 2024. 1. 2 3.,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일부개정]

유럽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The protection and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Ahreum Kim, Nam Hee Do, Hyemin Lee, Sungeun Yang

In today's digital age, children are growing increasingly accustomed to the online environment and displaying adaptability to its dynamics. However, their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of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emerging technologies and services tends to lag behind that of adults. Consequently, a pressing demand arises for tailored safeguards designed to protect children in the online realm. Globally, there is a discernible trend towards bolstering regulations that pertain to websites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catering to children, with an emphasis on requiring parental consent.

Moreover, recent deliberations have arisen concerning "sharenting", wherein parents share their children's photographs or personal information on social media platforms. In South Korea, although awareness of safeguarding adult personal information is on the ascent, there remains a deficit in recognizing and comprehending the utilization and preservation of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conducts an examination of international legislative developments and conducts surveys targeting both parents and children, laying the groundwork for policies aimed at safeguarding the online privacy of children.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mperative need to heighten awareness and proficiency in addressing privacy breaches involving parents and children, elevate social consciousness and practices that honor children's privacy, and propose legal amendments

and enactments that effectively ensure the protection of children's privacy.

Keyword: Children's online privacy, Sharenting, Privacy Protection, Children's Rights, Digital Environment



부록 1. 부모 대상 설문조사표

부모 대상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 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2023년 기본과제로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영아, 유아,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관련 실태 및 정책 지원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향후 관련 정책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윤리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 상 희

일반적 특성

선문1. 다음 중 귀하에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구분						
1. 성별	① 여자		② 남자				
2. 연령			년				
3. 결혼상태	① 배우자 있음	②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등)	③ 미혼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시청자동차 ⑧			
4. 거주지역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① 충청북도	⑩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 경상북도	⑩ 경상남도			
	⑪ 제주도						
5. 거주지역 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	크시 ③	③) 읍·면			
6. 자녀 동거 여부	① 동거함		② 동거하지 않음	<u></u>			

			구분			
7. 자녀 수			총	명		
8. 연령별 자녀 수	영아 (24개월 미만) 명	(24개월 (유아 이상~초등 입학 [:] 명	초등 지 전) (1~3호 	—	초등 고학년 (4~6학년) 명
9. 가구원 수	총명					
10. 교육 수준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2~3년제 대학	학 졸업 ④ 4년	크제 대학 졸업	d ⑤ 대학원 이상
11. 취업 상태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7직 중	⑤ 미취업	
12. 배우자 취업 상태	① 취업 (2)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7직 중	⑤ 미취업	⑥ 해당없음
13. 가구 소득		(*	월 평균 _ 네후(실수령)액		-	

온라인 환경 이용실태

[이용 실태]

문1. 귀하는 하루에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주중 하루와 주말 하루에 대해 각각 응답해주세요.

최근 평일(하루)	시간분
최근 주말(하루)	시간분

	최근 주말(하루	<u>-</u>)		시간	.분	
문2.	귀하는 인터넷을 합 선택해주세요.	ł 때 주로 무엇 을	을 하십니까?	다음 내용 중 🤊	자주 이용하는 2	2가지를
	□ ① 동영상 시청	□ ② 게임		3) 음악 감상	□ ④ 블로그	1, 카페
	□ ⑤ SNS(인스타)	1 램, 틱톡, 페이	스북, 카카오	·톡 등)		
	□ ⑥ 교육(인터넷	강의 수강 등)	□ ⑦ 쇼핑] □ 8 3	정보 검색	
	□ ⑨ 기타()			
문3.	귀하가 이용하는 사 주세요.	이트/앱은 무엇인]니까? 다음	중 이용하는 사	이트/앱 모두를	선택해
	□ ① 인스타그램	□ ② 페이스북	□ ③ 네ㅇ	이버 밴드 🗆 ④	네이버 카페	
	□ ⑤ 네이버 블로	그 🗆 ⑥ 카카오	톡(메신저)	□ ⑦ 카카오스	토리 🗆 🛭 🖺	위터
	□ 9 탁톡 □ ①) 다음카페 🗆	① 유튜브	□ ⑫ 유튜브	. 쇼츠	

□ ③ 아프리카 TV □ ④ 게임(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 ⑤ 사진 보정/영상 편집 앱 □ ⑥ 웹게시판(네이트판, 더쿠, 뽐뿌, 디시인사이드 등) □ ⑰ OTT(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 왓챠 등) □ ⑧ 인터넷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 □ ⑩ 기타 (
문3-1. 위의 보기 중 귀하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앱은 무엇입니까?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앱을 순서대로 3가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SNS 사용실태
※ SNS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이 정보, 콘텐츠, 관심사 등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위의 3번 질문 중 보기 ① ~ ②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NS 미이용 사유]
문4. (문 3에서 ①~⑫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만 질문) 귀하가 SNS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이 없어서
□ ② 모르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불편해서
□ ③ SNS 사용에 관심이 없어서
□ ④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어서 □ ⑤ 내 사진이나 일상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 ⑤ 이용할 자신이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
□ ⑦ 기타()

〈앞선 질문 3에서 '① 인스타그램 ~ ⑫ 유튜브 쇼츠'에 응답한 경우만 조사: 문5~7-1〉

문5.		구엇입니까? 다음 내용 중 2가지를 선택해주세
	□ ① 친교·교제를 위해서	
	□ ②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서	
	□ ③ 자녀 외의 가족과 소통하기 위하	
	□ ④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살펴보기	기 위해서
	□ ⑤ 일상생활을 기록하기 위해서	
	□ ⑥ 취미 등 개인적 관심사, 정보나	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 ⑦ 정보나 지식 등을 검색하기 위하	서
	□ ⑧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 ⑨ 팔로워수, 구독자 및 조회수 등을	을 올리기 위해서
	□ ⑩ 기타()
문6.	귀하는 SNS에 본인의 게시물을 작성하	거나 올린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7) □ ② 없다	□ ③ 해당사항 없음(메신저만 해당)
문7.	귀하가 작성하거나 올린 게시물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응답)
	□ ① 나의 일상생활에 관한 글	□ ② 나의 자녀에 관한 글
	□ ③ 나의 지인(자녀를 제외한 가족 포	함)에 관한 글
	□ ④ 나의 사진	□ ⑤ 자녀의 사진
	□ ⑥ 지인(자녀를 제외한 가족 포함)의	사진 🗆 🗇 나의 영상
	□ ⑧ 자녀의 영상	□ ⑨ 지인(자녀를 제외한 가족 포함)의 영상
	□ ⑩ 뉴스 소식	□ ⑪ 기탁 ()
ロ 7	1 기치노 기이/기너르 게이치 기주 표칭	r)의 사진 혹은 영상을 올릴 때 해당인의 동의
正/-	·1. 귀야는 시엔(사이글 세외안 가옥 포인 를 얻습니까?	1)서 시선 숙근 경경을 물을 때 예정한의 중의
		□ ② 동의를 구하지 않음

셰어런팅

문8	군8. 귀하는 자녀에 관한 정보(글, 사진, 영상 등)를 SNS(카톡 프로필, 배경 포함)에 올린적이 있습니까?									
	□ ① 과거에는 그랬다(☞ 문8-1) □ ② 현재 올리고 있다(☞ 문8-2)									
	□ ③ 전혀 올리지 않는다 (☞ 문9)									
문8	-1. 귀하가 과거에는	자녀의 게시물을 올리다가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가 원치 않아서 □ ② 자녀가 많이 성장해서										
	□ ③ 필요가 없어져	서	□ ④ 흥미를 잃어서							
	□ ⑤ 개인정보 침해	등 자녀 안전이 걱정되어서	□ ⑥ 기타()							
문8	-2. (문 8 ①, ② 응답지 물을 올렸습니까?) 귀하는 자녀가 몇 살일 때	부터 몇 살 때까지 자녀에 관한 게시							
	□ 신생아~돌 이전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 만 5세							
	□ 초등학교 1학년	□ 초등학교 2학년	□ 초등학교 3학년							
	□ 초등학교 4학년	□ 초등학교 5학년	□ 초등학교 6학년							
	게시물 올린 시기									
	게시물 중단 시기	(현재도 올리	고 있는 경우 공란)							
문9. 귀하는 귀하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기 전에 자녀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9-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1	0. 귀하는 귀하의 자녀 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언제든지 삭							
	□ ① 예		□ ② 아니오							
문1	0-1. 그 이유는 무엇입	니까? ()								

〈앞선 문13에서 '② 현재 올리고 있다'에 응답한 경우만 조사〉

귀하는 자녀에 관한 게시들	물을 얼마나 자주 올려	리고 있습니까	?
] ① 1일 1회 이상	□ ② 주 3회		③ 주 1회
] ④ 한달에 1~2회	□ ⑤ 6개월에 1~2	2회 🗆	⑥ 1년에 1~2회
귀하가 올린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공개범위는	누구입니까?	
] ① 누구나 볼 수 있음			
] ② 내가 공개하기로 선택	백한 사람(팔로워, 친	구 등)만 볼 수	수 있음
] ③ 아무도 볼 수 없고 니	1만 볼 수 있음		
] ④ 기타 ()			
			l까? 다음 중 귀하가 올
□ ① 자녀의 이름	□ ② 자녀의 나	이(개월 수)	
□ ③ 자녀가 이용하는 기	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
□ ④ 거주지역			
□ ⑤ 가족관계			
□ ⑥ 자녀의 얼굴 사진			
□ ⑦ 성기만 가린 자녀의	전신 사진(속옷만 역	일은 모습/ 혹	은 모자이크 처리)
□ ⑧ 성기를 포함한 자녀	의 전신 사진(완전 년	<u> </u>	
□ ⑨ 자녀의 얼굴을 제외한	<u>.</u> 사진(모자이크 처리	혹은 목 이하크	문 찍은 사진이나 뒷모습)
□ ⑩ 배변 훈련하는 사진			
□ ⑪ 훈육하는 사진			
□ ⑫ 훈육, 배변훈련 등	자녀의 특정 사생활여	게 관한 글	
□ ⒀ 자녀의 음성(사진이	나 영상 제외)		
□ ⑭ 자녀의 영상			
귀하의 자녀는 귀하가 SNS 니까?	에 자녀에 관한 게시	물을 올리고 있	J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르고	2 있다
	① 1일 1회 이상 ② 4 한달에 1~2회 과하가 올린 게시물을 볼 ③ 1 누구나 볼 수 있음 ③ 0 부두도 볼 수 없고 나 ③ 0 부두도 볼 수 없고 나 ③ 1 가타 () 과하가 자녀에 대해 작성하면 게시물에 해당하는 내용 ③ 1 자녀의 이름 ○ 3 자녀가 이용하는 기 ○ 4 거주지역 ○ 5 가족관계 ○ 6 자녀의 얼굴 사진 ○ 7 성기만 가린 자녀의 ○ 8 성기를 포함한 자녀 ○ 9 자녀의 얼굴을 제외한 ○ 10 반면 훈련하는 사진 ○ 10 훈육하는 사진 ○ 10 훈육하는 사진 ○ 10 훈육하는 사진 ○ 10 훈육하는 사진 ○ 10 환숙하는 사진 ○ 10 환숙하는 사진 ○ 10 환숙하는 기의 음성(사진이) ○ 10 자녀의 영상 과하의 자녀의 영상 과하의 자녀는 귀하가 SNS	① 1일 1회 이상 □ ② 주 3회 □ ④ 한달에 1~2회 □ ⑤ 6개월에 1~2 대하가 올린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공개범위는 □ ① 누구나 볼 수 있음 □ ② 내가 공개하기로 선택한 사람(팔로워, 친구 ③ 아무도 볼 수 없고 나만 볼 수 있음 □ ④ 기타 ()	□ ① 한달에 1~2회 □ ③ 6개월에 1~2회 □ ○ 대하가 올린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공개범위는 누구입니까? □ ① 누구나 볼 수 있음 □ ② 내가 공개하기로 선택한 사람(팔로워, 친구 등)만 볼 수 □ ③ 아무도 볼 수 없고 나만 볼 수 있음 □ ① 기타 () 의사물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자녀의 이름 □ ② 자녀의 나이(개월 수) □ ③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 3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 4 거주지역 □ ⑤ 가족관계 □ ⑥ 자녀의 얼굴 사진 □ ② 장녀의 얼굴을 제외한 사진(옥옷만 입은 모습/ 후 □ ③ 장녀의 얼굴을 제외한 사진(모자이크 처리 혹은 목 이하로 □ ⑪ 배변 훈련하는 사진 □ ① 훈육하는 사진 □ ② 훈육, 배변훈련 등 자녀의 특정 사생활에 관한 글 □ ③ 자녀의 영상 개화의 자녀는 귀하가 SNS에 자녀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고 있나까?

문15. 귀하는 자녀에 관한 게시물을 올 □ ① 예 □ ③ 과거에는 동의 받지 않았으	□ ② 아니오
문16. 귀하의 자녀는 귀하가 올린 자녀이 니까?	게 관한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
□ ① 예(☞ 문16-1)	□ ② 아니오(☞ 문17)
문16-1.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귀히 □ ① 예	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주었습니까? ② 아니오
[협찬 등 수익 경험]	
※ 수익은 <u>현금 및 기타 사례성 현물</u> 까	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문17. 귀하는 자녀 관련 정보 게시로 인 및 기타 사례성 물품 지급 포함)	l해 수익을 얻거나 얻은 적이 있습니까? (※ 현물
□ ① 예(☞ 문17-1)	□ ② 아니오(☞ 문18)
	시물을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까? 기적이지는 않으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림 림 □ ④ 한달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올림
문17-2. 수익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얻	
□ ① 영상물 내 광고□ ②□ ④ 상품 후기□ ⑤	공구 등 물품 판매 □ ③ 상품(기업) 협찬 ○ 개이 코테츠 구도
□ ⑥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문17-3. 1회 게시물에 대한 수익의 수준	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10만원 미만 □ ② 1	
□ ③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⑤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④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⑥ 300만원 이상

자녀의 사생활에 대한 인식과 보호 필요성

[자녀의 스마트 기기 보유 실태]

문18.	귀하의	자녀는	자녀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갖고	있습니까'	?

스마트폰	□ ① 있다 (☞ 문 18-1)	□ ② 없다 (☞ 문 19)				
태블릿 PC	□ ① 있다 (☞ 문 18-1)	□ ② 없다 (☞ 문 19)				
문18-1. 귀하의	자녀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	클릿 PC는 부모(보호자)의 통제(허락)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	□ ① 있다 (☞ 문 18-2)	□ ② 없다 (☞ 문 19)				
태블릿 PC	□ ① 있다 (☞ 문 18-2 또는 문1	9) 🗆 ② 없다 (🖙 문 19)				
문18-2. 통화 c	기외에 각종 앱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 있는 개인 스마트폰은 언제 사주었습				
니까?						
□ ① 초등	등학교 입학 전	□ ② 초등학교 1,2학년				
□ ③ 초등	등학교 3,4학년	□ ④ 초등학교 5,6학년				
문19. 귀하는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앱을 통해 자녀의 위치를 파악(공유)하고 있거나 과거						
에 파악(공	·유)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다 (☞ 문 19-1)	□ ② 없다				
문19-1. 자녀의	위치정보를 알려 주는 앱이 설치되o	어 있(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				

[자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경험]

하였습니까?

문20.	온라인 환경에서 자녀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0-1)	□ ② 아니오(☞ 문 21)

※ 응답기준(조사원 응답) ① 만 나이 ② 한국 나이

세~ 세

문20-1. 어떠한 침해를 당	당하였습니까?			
□ ① 굴욕사진	□ ② 악성댓글	□ ③ ਰੋ	취위사실 유포	
□ ④ 합성사진	□ ⑤ 개인신상정보 -	유출	□ ⑥ 기타 ()
문20-2. 누구에 의하여	침해당하였습니 <i>까? (보</i> ~	수응답)		
	등 보호자		자녀 치구의 부모	ı
□ ③ 자녀의 조부모			자녀의 부모(보호	
	ত অএপ	□ 4	ハリコ 十工(エ오)	시) 시킨
□ ⑤ 자녀의 친구		1.11-1		
- , , , , , ,	! 있는/다녔던) 초등학교			
□ ⑦ (자녀가 다니고	! 있는/다녔던) 유치원 <i>-</i>	선생님 등	등 유치원 관계자	
□ ⑧ (자녀가 다니고	있는/다녔던) 어린이집	실 선생님	등 어린이집 관계	계 자
□ ⑨ 전혀 모르는 시	람			
□ ⑩ 기타 ()			
문20-3. 어떠한 경로로	침해당하게 되었습니까!	?		
_ □ ① 자녀 본인이 을				
□ ② 자녀의 부모(보				
	, , =	-11 1 T		
니 ③ 세3시(구구.)가 올린	게시팔		
문20-4. 침해 당시 어떻게	게 대처하였습니까?			
□ ① 자녀가 직접 스	기) 가해자에게 삭제	Ⅱ 요구
□ ③ 부모(보호자)가	직접 삭제	□ (4)) 해당 매체에 삭	제 요구
□ 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 6) 기타 ()
= 3 = =	=		/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인식 및 요구]

문21. 다음을 읽고 귀하의 생각 및 행동과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기 전에는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2)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의 정보를 게시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부모가 올린 자녀 관련 게시물을 통해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4) 부모가 올린 자녀 관련 게시물로 인해 자녀가 범죄에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					
5) (자녀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정보를 SNS에 올리는 것은 자녀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6)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					
7)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부모의 활동은 규제되어야 한다.					
8)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의 접근권/삭제권/수 정권 등 구제 절치를 마련해야 한다.					
9) 정보의 접근권/삭제권/수정권 등 구제절차가 마련된다면 아동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온라인상 아동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아동이 이해가능한 수준의 언어로 쓰여야 한다.					
11)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 으로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2)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을 규제할 필요 가 있다.					
13)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유치원에 서 디지털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14)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디지털 교 육을 장려해야 한다.					

문22. 다음은 귀하의 SNS를 통해 자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귀하의 향후 행동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SNS에 아이의 정보나 사진·동영상을 최소한으로 게시할 것이다					
2) 나는 공공장소에서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WIFI를 이용하 여 나의 SNS를 접속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나의 SNS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이다.					
4) 나는 나의 SNS에 아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업로드 할 때 는 공개 범위를 최소한으로 할 것이다.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아동 대상 설문조사표

아동 대상 설문조사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2023년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인터넷에서 어린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와 비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허락을 대신 받고, 여러분이 온라인 환경에서 경험하는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므로 질문에 빠짐없이 잘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어 여러분의 부모님과 선생님에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연구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규정).

2023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 상 희

일반적 특성

선문1. 다음 중 여러분에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주세요.

		구분		
1. 성별	① 여자		② 남자	
2. 학년	① 초등학교 4학년	크 ② 초등학교	5학년 ③	초등학교 6학년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의 시추자종차 ⑧
3. 학교 소재지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①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⑩ 경상남도
	⑪ 제주도			
4. 현재 학교 외에 이용	① 학원		② 가정 내 개인/	'그룹 지도(과외)
하는 기관 또는 학습	③ 학습지(방문교/	사)	④ 인터넷/화상 경	강의
활동을 모두 선택해	⑤ 교내 방과후 혁	학교	⑥ 문화센터, 종교	1기관 등 사설기관
주세요.	⑦ 주민센터, 복지	l관 등 공공기관)
5. 아동 거주 지역규모 (※ 조사원 기입)	① 대도시	② 중소도 <i>/</i>	3	읍면

온라인 환경 이용실태

[기기 보유 실태]

문1.	여러분은 인터넷을 할 때 주로 어떤 기기(기 □ ① 스마트폰 □ ③ 태블릿 PC(아이패드, 갤럭시북 등) □ ⑤ 인터넷 사용하지 않음 (☞ 문 13)	□ ② 컴퓨터	키/노트북)
문2.	여러분은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가	있나요?		
	□ ① 있다 (☞ 문 2-1)	□ ② 없다 (☞	문 4)	
문2-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F 사용할 수 있나요? 	C는 부모님의	통제(허락) 없	이 언제든지
	□ ① 있다	□ ② 없	다	
	□ ③ 기타(기기나 앱에 따라 다름)			
문2-	 통화 이외에 각종 앱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요? 	- 있는 개인 스	마트폰은 언제	처음 가졌나
	□ ① 초등학교 입학 전	□ ② 초등	등학교 1,2학년	
	□ ③ 초등학교 3,4학년	□ ④ 초등	등학교 5,6학년	
문3.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앱 거나 과거에 공유한 적이 있나요?	을 통해 가족(부	부모님 포함)과	공유하고 있
	□ ① 있다 (☞ 문 3-1) □ ② 위	겂다	□ ③ 모르겠다	구
문3-	1.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앱이 설치되어 있다	면, 언제부터 '	언제까지 설치	하였나요?
	M~ M			
	※ 응답기준(조사원 응답) ① 만 나이 🤄	② 한국 나이		

[이용 실태]

문4. 여러분은 하루에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를 얼마나 사용하나요? 주중 하루와 주말 하루에 대해 각각 응답해주세요.

최근 평일(하루)	시간분
최근 주말(하루)	시간분

여러분은 인터넷을 할 때 주로 무엇을 하나요? 다음 내용 중 자주 이용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동영상 시청 □ ② 게임 □ ③ 음악 감상 □ ④ 블로그, 카페
□ ⑤ SNS(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 ⑥ 교육(인터넷 강의 수강 등) □ ⑦ 쇼핑 □ ⑧ 정보 검색
□ ⑨ 기타()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앱은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것 모두 응답)
□ ① 인스타그램 □ ② 페이스북 □ ③ 네이버 밴드 □ ④ 네이버 카페
□ ⑤ 네이버 블로그 □ ⑥ 카카오톡(메신저) □ ⑦ 카카오스토리 □ ⑧ 트위터
□ ⑨ 틱톡 □ ⑩ 다음카페 □ ⑪ 유튜브 □ ⑫ 유튜브 쇼츠
□ ③ 아프리카 TV □ ④ 게임(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 ⓑ 사진 보정/영상 편집 앱
□ ⑯ 웹게시판(네이트판, 더쿠, 뽐뿌, 디시인사이드 등)
□ ⑰ OTT(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 왓챠 등)
□ (18) 인터넷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 □ (19) 기타 ()
 위에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이트/앱 중 자주 이용하는 순서대로 3가지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SNS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이 정보, 콘텐츠, 관심사 등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위의 6번 질문 중 보기 ① ~ ⑫에 해당합니다.
 문7. (문 6에서 ①~⑫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만 질문) 여러분이 SNS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부모님이 스마트폰/태블릿 PC등의 사용을 동의하지 않아서 □ ② 부모님이 SNS 가입을 동의해주지 않아서 □ ③ SNS 사용에 관심이 없어서 □ ④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 ⑤ 내 사진이나 일상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 ⑥ 기타(
SNS 사용실태
〈앞선 질문 6에서 '① 인스타그램 ~ ⑫ 유튜브 쇼츠'에 응답한 경우만 조사: 문8~12〉
문8. 여러분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중 주된 이유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 ①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주세요. □ ①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 ② 부모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세요. □ ①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 ② 부모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 ③ 선생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 ④ 타인이 올린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 □ ⑤ 일상생활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세요. □ ①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 ② 부모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 ③ 선생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 ④ 타인이 올린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 □ ⑤ 일상생활을 기록하기 위해서 □ ⑥ 취미 등 개인적 관심사, 정보나 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주세요. □ ①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 ② 부모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 ③ 선생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 ④ 타인이 올린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 □ ⑤ 일상생활을 기록하기 위해서 □ ⑥ 취미 등 개인적 관심사, 정보나 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 ⑦ 정보나 지식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
주세요. □ ①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 ② 부모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 ③ 선생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 ④ 타인이 올린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 □ ⑤ 일상생활을 기록하기 위해서 □ ⑥ 취미 등 개인적 관심사, 정보나 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 ⑦ 정보나 지식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 □ ⑧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주세요. □ ①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 ② 부모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 ③ 선생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 ④ 타인이 올린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 □ ⑤ 일상생활을 기록하기 위해서 □ ⑥ 취미 등 개인적 관심사, 정보나 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 ⑦ 정보나 지식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 □ ⑧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 ⑨ 팔로워수, 구독자 및 조회수 등을 올리기 위해
주세요. □ ①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 ② 부모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 ③ 선생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 ④ 타인이 올린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 □ ⑤ 일상생활을 기록하기 위해서 □ ⑥ 취미 등 개인적 관심사, 정보나 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 ⑦ 정보나 지식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 □ ⑧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주세요. □ ①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 ② 부모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 ③ 선생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 ④ 타인이 올린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 □ ⑤ 일상생활을 기록하기 위해서 □ ⑥ 취미 등 개인적 관심사, 정보나 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 ⑦ 정보나 지식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 □ ⑧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 ⑨ 팔로워수, 구독자 및 조회수 등을 올리기 위해

문9-1. 여러분이 작성하거나 올린 게시물은 주로 어떤 U □ ① 나의 일상생활에 관한 글 □ ③ 나의 친구에 관한 글 □ ⑤ 가족의 사진 □ ⑦ 나의 영상 □ ⑨ 친구의 영상	내용인가요? (해당되는 것 모두 응답) ② 나의 가족에 관한 글 ③ 나의 사진 ⑤ 친구의 사진 ③ 가족의 영상 ③ ⑩ 기타 ()
문9-1-1. 여러분은 여러분의 <u>가족</u> 의 사진 혹은 영상을 요? □ ① 동의를 구함 □ ② 동의를 구하지	
문9-1-1-1.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문9-1-2. 여러분은 여러분의 <u>친구</u> 의 사진 혹은 영상을 요? □ ① 동의를 구함 □ ② 동의를 구하기	
문9-1-2-1.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문9-1-3. <u>나</u> 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 해당 내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올리나요? □ ① 예 □ ② □ ③ 내 사진 올리지 않음	
문9-2. 여러분이 작성하거나 올린 게시물은 누구나 볼 □ ① 누구나 볼 수 있음 □ ② 내가 공개하기로 선택한 사람(팔로워, 친구 □ ③ 아무도 볼 수 없고 나만 볼 수 있음 □ ④ 기타 ()	

문10. 여러분이 SNS 사용 시 이용하는 계정은 누구의 것인가요? (매체마다 다른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를 기준으로 응답) □ ① 부모님 계정 □ ② 나의 계정(☞문 10-1) □ ③ 다른 사람 계정(친구, 조부모 등) □ ④ 잘 모르겠음 □ ⑤ 계정이 없어도 됨(이용 앱:)
문10-1. 여러분은 여러분의 SNS 계정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 ① 계정을 만들 때 부모님이 동의를 해주었음 □ ② 계정을 부모님의 계정과 연동하여 만들었음 □ ③ 스스로 계정을 만들었음 □ ④ 잘 모르겠음 □ ⑤ 기타()
문11. 여러분은 원하면 언제라도 SNS를 이용할 수 있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12. 여러분이 SNS 사용 시 주로 이용하는 기기(기계)는 무엇인가요? □ ① 스마트폰 □ ② 컴퓨터/노트북 □ ③ 태블릿 PC(아이패드, 갤럭시북 등) □ ④ 기타()
부모님이 자녀의 사진 등 여러분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
문13. 여러분의 부모님(보호자)들은 <u>현재</u> 나에 관한 정보(글, 사진, 영상 등)를 SNS(카톡 프로필, 배경 포함)에 올리고 있나요? □ ① 예(☞ 문13-2) □ ② 아니오(☞ 문13-1) □ ③ 잘 모르겠다(☞ 문13-1)
문13-1. 여러분의 부모님(보호자)들은 <u>과거</u> 에 나에 관한 정보(글, 사진, 영상 등)를 SNS(카톡 프로필, 배경 포함)에 올린 적이 있나요? □ ① 예(☞ 문13-2) □ ② 아니오(☞ 문14) □ ③ 잘 모르겠다(☞ 문14)

문13-	2. 여러분의 사진 또는 영상이 부모님 땠나요?	의 SNS 계정에 올라간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어
	□ ① 좋았다(☞ 문13-2-1) □ ③ 기타 (□ ② 싫었다(☞ 문13-2-1))(☞ 문13-2-1)
	□ ④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문	-13-3)
문13-	2-1.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문13-	 여러분의 부모님은 과거 혹은 현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았나요? 	재 여러분의 사진 또는 영상을 SNS에 올릴 때
	่ (1) ଔ	□ ② 아니오
	□ ③ 과거에는 동의 받지 않았으나	
문14.	여러분은 부모님이 올린 여러분의 사 나요?	·진이나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
	□ ① 예 (☞ 문14-1)	□ ② 아니오 (☞ 문15)
문14-	1.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부모님	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주셨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문15.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의 사진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나 영상을 SNS에 올리기 전에 여러분의 동의를
	□ ① 예 (☞ 문15-1)	□ ② 아니오 (☞ 문16)
문15-	1.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문16.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할 경우 부모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님이 올린 여러분의 사진이나 영상을 언제든지 요?
	□ ① 예 (☞ 문16-1)	□ ② 아니오 (☞ 문17)
문16-	·1.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온라인 개인정보 및 아동권리 인식

[셰어런팅 문제점 및 피해구제절차 필요성 인식]

문17		명상을 나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을 뜻하는 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 ② 아니오			
		l 없이 올리는 사람에 대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게 요청을 할 의향이 있나요? □ ② 아니오			
	· 아인상 개인정보 관련 인식]				
문19). 여러분은 '개인정보'라는 말	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 ① 예(☞ 문19-1)	□ ② 아니오(☞ 문20)			
*	※ 개인정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 이름, 나이, 반, 휴대폰 번호, 집 주소, 이메일 주소, 모바일 메신저 ID, 게임 ID와 비밀번호, 실시간 나의 위치, 내가 나온 사진 속 장소 등)				
문19	□ ① 선생님(학교에서)	서 들어봤나요?(해당되는 것 모두 응답) □ ② 부모님으로부터 □ ③ 친구로부터 □ ⑤ TV 방송프로그램에서			
문20	 ○ 인터넷에서 나 혹은 부모님의 □ ① 부모님의 동의(허락)를 □ ② 그냥 입력한다 □ ③ 절대 입력하지 않는다 □ ④ 입력할 일이 없었다 	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어떻게 하나요? 받고서 입력한다			

문21.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이라는 것 □ ① 예(☞ 문21-1) □						
□ ① 예(☞ 문21-1) □ ② 아니오(☞ 문22) ※ "개인정보취급방침/이용약관"이란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침으로 마련한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앱이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앱을 제공하는 기업은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거나 각종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안내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국어 ▼ ② 전체 통의하기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가입,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선택), 이벤트 • 혜택 정보 수신(선택) 등의를 포함합니다. ② [광수] 네이버 이용약관 >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이버 서비스및 제품(이하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약관은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네이버 서비스 를 제공하는 네이버 주십회 사이하 '네이비'와 이를 이용하는 네이 플래스에 사이하는 네이버 가장 나이 하는 나이 나이 하는 생산이 나이 하는 사이 하는 생산이 하는 보이 가장 보고 보이지 않는 보이 가장 보고 보이지 되었다. 사이 하는 사이 하는 생산이 하는 분에 가장 보고 보이지 되었다. 시원 등 이용무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의 거부권 및 등의 거부 시 팀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 내 드리고나 지세히 읽은 후 통의하여 주시기 비합니다.	지인정보 수갑과 이용에 대한 안내 내이버에 희망 가입을 신앙하시는 볼색 개인경보의 수입과 이용 문적. 개 인정보 보급과 이용에 대한 안내는 물건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성으로 보기 수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자세히 있고 물의해구세요. 1. 수집하는 개인정보 대부분의 네이버 서비스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용, 경단다, 기계, 불교기를 이어 있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용, 경단다, 바에 보고를 가게 하는 경우가 위해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네이버는 서비스 이용은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면 수입됩니다.					
문21-1.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을 읽어 본 적 있나요? □ ① 예(☞ 문21-2) □ ② 아니오(☞ 문21-3)						
문21-2.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 응답 후 문22로 이동□ ① 예□ ②	을 대체로 이해하나요? 아니오					
문21-3.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을 읽지 □ ① 시간이 많이 들어서 □ ② 귀찮아 □ ④ 길어서 □ ⑤ 본 적이 없어서 □	ㅏ서 □③ 어려워서					

[온라인상 아동 권리 인식]

문22. 다음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 및 행동과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우리나라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의 보호를 가장 먼저 고 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1	2	3	4	9
2) 온라인 환경에서 성별, 외모, 나이 등의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나요?	1	2	3	4	9
3) 온라인 환경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나요?	1	2	3	4	9
4) 온라인 환경은 여러분이 사용하기에 편리한가요?	1	2	3	4	9
5) 온라인에서 모르는 어른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받거나 약 플, 인격모독 등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1	2	3	4)	9
6) 온라인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1	2	3	4)	9

문23. 최근 1년간 온라인 환경에서 여러분의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교육(예: 개인정보 보호
교육, 디지털/미디어 보호 관련 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받은 적 있다
□ ②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 ③ 받은 적 없다
□ ④ 교육을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문24. 여러분은 온라인 환경에서 여러분의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교육(예: 개인정보 보호교육, 디지털/미디어 보호 관련 교육 등)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필요없다
□ ② 필요없는 편이다
□ ③ 필요한 편이다
□ ④ 매우 필요하다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아동 대상 면담지

기본 질문						
1. 성별	① 여자	② 남자				
2. 학년	① 초등학교 4학년	② 초등학교 5학년	③ 초등학교 6학년			

※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먼저 할 거에요! 혼자 조용히 읽어보고 답변을 연필로 적어주세요(모르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조용히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문1.	여러분은 인터넷을 할 때 주로 어떤 기기(기계)를 사용하나요?				
	□ ① 스마트폰	□ ② 컴퓨터/노트북			
	□ ③ 태블릿 PC(아이패드, 갤럭시북 등)	□ ④ 기타()		
	□ ⑤ 인터넷 사용하지 않음				
문2.	여러분은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가 있	- 요?			
	□ ① 있다	□ ② 없다 (☞ 문 3)			
문2-	1.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할 수 있나요?	= 부모님의 통제(허락) 없이 (언제든지 사용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기타(기기나 앱에 따라 다름)				
문3.	여러분은 SNS를 이용하고 있나요?				
	□ ① 이용하고 있다 (☞ 문 5) □ (② 이용하지 않는다(☞ 종료.	기다려주세요)		
문4.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앱은 무엇인가요? 다음 내용 중 자주 이용하는 3가지를 선택해주세요.				
	□ ① 인스타그램 □ ② 페이스북 □ ③ 네이버 밴드 □ ④ 네이버 카페				
	□ ⑤ 네이버 블로그 □ ⑥ 카카오톡(메신저) □ ⑦ 카카오스토리 □ ⑧ 트위터				
	□ 9 틱톡 □ ⑩ 다음카페 □ ⑪ 유튜브	보 □ ⑫ 유튜브 쇼츠			
	□ ③ 아프리카 TV □ ④ 게임(로블록스, 마	인크래프트 등)			

□ ⑮ 사진 보정/영상 편집 앱	
□ ⑯ 웹게시판(네이트판, 더쿠, 뽐뿌, 디시인사이드 등)	
□ ⑰ OTT(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 왓챠 등)	
□ ⑱ 인터넷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 □ ⑲ 기타 ()

※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에요! 선생님이 순서대로 질문을 할테니 천천히 한 사람씩 이야기 해주세요. 단,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여러분과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에요(친구들끼리의 SNS 이용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을 거에요!)

1. SNS 사용 규칙과 부모님 허락

- 1-1. 평소 SNS를 사용할 때 부모님과 약속한 게 있나요?(예: 주말에만 하기, 숙제 다 해야 30분 하게 해주시기, XX앱은 들어가지 않기 등)
- 1-2. 평소 SNS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예: 쓰고 싶은 앱이 있는데 부모님께 허락받고 설치/가입해야 해요, 부모님이 관리하 시는 앱이 있어서 그걸 들어가려면 부모님 인증을 받아야 해요)

2. 소셜 미디어 사용 형태 및 개인정보 인식

※ 개인정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 이름, 나이, 반, 휴대폰 번호, 집 주소, 이메일 주소, 모바일 메신저 ID, 게임 ID와 비밀번호, 실시간 나의 위치, 내가 나온 사진 속 장소 등)

- 2-1.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내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올리고, 공유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모님이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함께 질문)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2. 나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한 적이 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부모님이나 가족 사진을 휴대폰으로 친구들에게 보낸 경험 도 포함돼요)

3. 셰어런팅 경험 및 셰어런팅에 대한 생각

- 3-1. 부모님 혹은 그 외 다른 사람이 나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한 적이 있나요? 그 당시 나의 동의를 받았나요?
- 3-2. 나의 동의 없이 내 정보가 온라인에 공유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했나요?
- 3-3. 부모님은 나의 동의 없이 내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동의 여부에 따라 온라인에 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내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올릴 수 있는 나의 정보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 요? (나의 의료 정보/부모님이 나를 키우며 느꼈던 생각, 내 성장 이야기, 나의 몸의 일부나 얼굴 사진/ 내가 쓴 글, 목소리, 내가 찍힌 동영상 등)
 - 내 나이에 따라 부모님이 내 정보를 공유하는 게 달라질까요? (예: 현재의 나인지 알아볼 수 없는 내 3살 때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건 괜찮지만, 지금 사진은 안돼요! or 내 사진은 어릴 때든 지금이든 올리는 건 싫어요)
- 3-4. 부모님이 내사진이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3-5. 사진 혹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 의견을 부모님에게 전달했나요? 부모님 반응은 어땠나요? 전달하지 않았다면 왜인가요?

4. 온라인상에서의 아동의 권리 보호 요구

- 4-1. 내가 원하지 않는 내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공유되었을 때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나요? (해당 소셜미디어 업체에서 삭제/ 정보를 올린 당사자가 삭제/ 올린 사람 처벌/위자료 등)
- 4-2. 온라인상에서 나의 정보 보호를 위해 국가나 학교, 선생님, 부모님 등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 4-3.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사생활,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된 적이 있나요? (학교명, 공부하는 내용, 놀이하거나 여행가있는 모습 등)
- 4-4. 노출 당시 기분이 어떠했나요?

부록 4. 부모 대상 면담지

1. 이용 실태

- 1-1. 귀하가 SNS를 이용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1-2. 귀하는 SNS에 어떠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나요? 타인에 대한 게시물과 본 인에 대한 게시물의 비율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되나요?
- 1-3. 귀하는 다른 사람의 SNS를 볼 때 주로 어떤 내용을 찾아보나요?
- 1-4.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따라하고 싶은지/어떠한 영향?)
- 1-5. 내가 게시물을 올리는 기준이 있나요? 특정 다수가 나의 게시물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1-6. 귀하는 SNS에 본인 외의 사진이나 영상 등 게시물을 올릴 때 상대방의 허락을 받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자녀 관련 게시물, 자녀 인터넷 사용 통제 등

- 2-1. 귀하가 자녀에 대한 게시물을 올린다면 주로 어떤 것을 올리나요? 어떤 해 시태그? ex) 18개월, 떼쟁이, 인천맘
- 2-2. 자녀 게시물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등생의 경우) 게시물에 대한 자녀의 반응은 어떤가요?
- 2-3. (초등생의 경우) 자녀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때 자녀에게 동의를 얻는 편인 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4. (자녀가 인터넷 사용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그에 대해 앱이나 시스템 등을 사용하고 있나요?
- 2-5. 자녀의 위치추적 앱 등을 설치한 경험이 있나요?

〈협찬 등 수익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 2-6. 자녀에 대한 게시물로 수익을 얻거나 한 적이 있나요? 어떠한 내용이었나요?
- 2-7. 계기가 무엇인가요? (구체적 과정)

2-8. (자녀가 초등생의 경우) 수익활동에 대해 자녀와 비용을 나누는지? 어떤 이 야기가 오고 가는지?

3. 자녀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 3-1. 온라인상에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공유된 적이 있나요? 기분이 어땠나요?
- 3-2. 그 외에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한 적이 있나요? 어떤 침해였나요?
- 3-3. 온라인상 자녀에 대한 게시물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나 요?

4.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 4-1. 현재 온라인상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어떠한 침해가 가장 우려되나요?
- 4-2. 어떠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가요? (맘카페 수준 or 더 넓은 범위?)
- 개인적 차원
- 사회적 차원(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정부, 기업 등)
- 4-3. 이러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법/제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기본 질문					
1. 본인 성별 및 연령					
2. 자녀 수	총 ()명			
	첫째(,) 둘째(,)	
3. 자녀 성별 및 연령	셋째(,) 넷째(,)	
	본인	① 고졸 이하 ② 대졸(전문대 포함) ③ 대학원 이상(석사·박사 학위)			
4. 교육수준	배우자	① 고졸 이하 ② 대졸(전문대 포함) ③ 대학원 이상(석사·박사 학위) ④	해당없음		
5. 취업상태 및 직업	본인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퇴직했음 ⑤ 미취업	직업:()	
5. 위합성대 및 역합	배우자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퇴직했음 ⑤ 미취업	직업: ()	
6. 자주 이용하는 SNS					
7. 자녀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유무	① 있음	(침해 내용:)	② 없음		
8. 자녀 게시물로 인한 수익 경험 (협찬, 이벤트 포함)	① 있음	(1회 약원 정도)	② 없음		
9. 자녀 인터넷 사용 통제 여부	① 있음	(통제 방법:)	② 없음		
10. 자녀 위치추적 앱 사용 여부	① 있음	(추적 방법:)	② 없음		
11. 월 평균 가구 소득	월 평균	약만원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